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 연쇄 강도 -

Research on Serial Felony(Ⅲ)

- Serial Robbery -

김지영 | 박혜석 | 박지선 | 김지연



발 간 사

강도범죄는 민생을 위협하고 인명을 위해하는 중대범죄이나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선행 연구들이 많지 않았고 특히 국내에서 연쇄강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제도가 강도범죄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강도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성폭력범죄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법시행입니다. 전자발찌의 시행에서도 드러나듯이 강도범죄는 일회에 그치는 경우가 드물고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초래하므로 강도범죄 특히 연쇄강도범죄의 사건특성과 범죄자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강도범죄를 예방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쇄강력범죄 3개년 연구의 마지막 3년차 보고서로 연쇄방화, 연쇄성범죄에 이어 연쇄강도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있는 수사·재판기록을 조사·분석하여 연쇄강도범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교정기관에 수용된 연쇄강도 범죄자를 심층면접하여 이면에 가리워진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수법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성년 범죄자가 연쇄강도 범죄자로 전이되는 과정, 연쇄강도범죄의 유형, 연쇄강도범죄의 환경적 특성 등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강도범죄의 실증연구를 촉진시키는 귀중한 토대가 되고,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현실에서 궁극적으로는 강도범죄의 예방과 민생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를 위해 애쓴 김지영 연구위원, 박혜석 연구원, 경찰대 박지선 교수, 김지연 위촉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무더위에 전국을 다니며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하느라 고생하신 인턴 연구원과 조사보조원, 조사를 위해 협

조해주신 검찰청 및 교정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목 차

국문요약	15
제1장 서론 (김지영)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방법	26
1. 기록조사의 절차	26
2. 기록조사표의 구성	29
3. 면접조사	35
제3절 문헌고찰	37
1. 선행연구	37
2. 공식통계	40
제2장 연쇄강도범죄자 및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 (김지영·김지연·박지선)	47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49
1. 조사대상자의 처분특성	49
2. 사회인구학적 특성	52
3.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53
4. 조사대상자의 전과	54
5. 첫 체포 연령	56
제2절 연쇄강도범죄 가해자의 특성	57
1. 사회인구학적 특성	57
2. 신체장애 및 장신장애	59
3. 범죄경력	60
제3절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65
1. 피해자수와 사건의 특성	65
2. 체포단서	67
3. 범행내용의 특성	68

4. 연쇄강도범죄의 지리적 특성	82
5. 연쇄강도범죄 피해자의 특성	89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92
7. 공범이 있는 연쇄강도범죄의 특성	96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98
제4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100
1. 교육정도	100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01
3. 범죄경력	101
제5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05
1.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105
2. 체포단서	107
3. 범행내용의 특성	107
4. 지리적 특성	116
5. 피해자의 특성	124
6.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127
7. 사법처리 결과	129
제6절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	131
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131
2. 체포단서	133
3. 범행내용의 특성	134
4. 지리적 특성	142
5. 피해자의 특성	150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153
7.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157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159
제7절 국내 연쇄강도범죄의 범죄행위에 따른 유형 분류	161
1.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 분류	161
2. 범죄행위 유형별 배경 특성 차이점	172
3.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의 연속성	183
4. 유형별 범죄자 배경 특성 차이점	189

제3장 결과요약 및 제언(김지영·김지연·박지선)	195
제1절 결과요약	197
1. 연쇄강도범죄의 전반적 특성	197
2.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	200
3. 연쇄강도범죄자의 범죄행위 유형에 따른 특성	203
제2절 정책적 함의	206
 참고문헌	 213
 Abstract	 217
 부록	 221

〈표 차례〉

〈표 1-1〉 강도범죄 사건의 죄명	26
〈표 1-2〉 각 검찰청별 수사기록 조사건수	28
〈표 1-3〉 가해자용	30
〈표 1-4〉 사건용	35
〈표 1-5〉 심층면접대상자	37
〈표 1-6〉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41
〈표 1-7〉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구속율	42
〈표 1-8〉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	43
〈표 1-9〉 강도범죄의 가해자 전과	44
〈표 1-10〉 강도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	46
〈표 2-1〉 강도범죄가해자의 조사기관	49
〈표 2-2〉 전체 죄명분류	51
〈표 2-3〉 이중경합된 범죄	51
〈표 2-4〉 국적	52
〈표 2-5〉 성별	52
〈표 2-6〉 연령	52
〈표 2-7〉 학력	53
〈표 2-8〉 강도범죄 가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53
〈표 2-9〉 조사대상자의 총 전과	54
〈표 2-10〉 조사대상자의 전과 죄명	54
〈표 2-11〉 조사대상자의 동종전과	55
〈표 2-12〉 조사대상자의 이종전과	55
〈표 2-13〉 조사대상자의 실행전과	55
〈표 2-14〉 조사대상자의 전과 처분결과	56
〈표 2-15〉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	56
〈표 2-16〉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56
〈표 2-17〉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유형	57
〈표 2-1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성별	57
〈표 2-1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국적	58
〈표 2-2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연령대	58
〈표 2-2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교육정도	59
〈표 2-2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60

〈표 2-2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첫 체포 연령대	60
〈표 2-2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총 전과	61
〈표 2-2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총 전과	62
〈표 2-2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전과	62
〈표 2-2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실행전과	63
〈표 2-2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전과처분결과	64
〈표 2-2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 체포횟수	64
〈표 2-3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수	65
〈표 2-3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66
〈표 2-3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67
〈표 2-3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경합	67
〈표 2-3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체포단서	68
〈표 2-3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체포단서	69
〈표 2-3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69
〈표 2-3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70
〈표 2-3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여부	71
〈표 2-3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71
〈표 2-4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여부	72
〈표 2-4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72
〈표 2-4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75
〈표 2-4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75
〈표 2-4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특성	79
〈표 2-4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80
〈표 2-4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81
〈표 2-4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81
〈표 2-4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82
〈표 2-4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83
〈표 2-5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84
〈표 2-5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85
〈표 2-5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85
〈표 2-5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86
〈표 2-5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 방법	87
〈표 2-5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87
〈표 2-5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88
〈표 2-5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89
〈표 2-5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	90
〈표 2-5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연령	90
〈표 2-6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국적	91
〈표 2-6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91
〈표 2-6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92
〈표 2-6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	93
〈표 2-6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	93
〈표 2-6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	94
〈표 2-6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직업	95
〈표 2-6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95
〈표 2-6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의 유무	96
〈표 2-6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수	96
〈표 2-7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97
〈표 2-7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 간 관계	97
〈표 2-7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98
〈표 2-7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판결종류	99
〈표 2-7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99
〈표 2-7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교육정도	100
〈표 2-7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101
〈표 2-7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총 전과	102
〈표 2-7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전과죄명	102
〈표 2-7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처분결과	103
〈표 2-8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동종전과	103
〈표 2-8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실행전과	104
〈표 2-8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전과	104
〈표 2-8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105
〈표 2-8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106
〈표 2-8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경합	106
〈표 2-8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	107
〈표 2-8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	108

〈표 2-8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108
〈표 2-8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109
〈표 2-9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109
〈표 2-9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110
〈표 2-9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110
〈표 2-9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	111
〈표 2-9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112
〈표 2-9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113
〈표 2-9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	114
〈표 2-9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114
〈표 2-9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115
〈표 2-9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116
〈표 2-10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117
〈표 2-1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117
〈표 2-10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118
〈표 2-10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19
〈표 2-10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120
〈표 2-10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120
〈표 2-10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121
〈표 2-10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122
〈표 2-10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123
〈표 2-10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123
〈표 2-11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	124
〈표 2-11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	125
〈표 2-11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	125
〈표 2-11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126
〈표 2-11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26
〈표 2-11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	127
〈표 2-11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	128
〈표 2-11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128
〈표 2-11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	129
〈표 2-11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	129

〈표 2-12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	130
〈표 2-12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	131
〈표 2-12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132
〈표 2-12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132
〈표 2-12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중경합	133
〈표 2-12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	134
〈표 2-12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	134
〈표 2-12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135
〈표 2-12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135
〈표 2-12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	136
〈표 2-13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136
〈표 2-13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	137
〈표 2-13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	137
〈표 2-13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138
〈표 2-13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139
〈표 2-13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 ..	140
〈표 2-13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140
〈표 2-13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141
〈표 2-13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142
〈표 2-13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143
〈표 2-14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143
〈표 2-14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144
〈표 2-14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45
〈표 2-14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46
〈표 2-14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146
〈표 2-14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147
〈표 2-14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147
〈표 2-14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148

〈표 2-14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149
〈표 2-14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	150
〈표 2-15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	151
〈표 2-15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	151
〈표 2-15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152
〈표 2-15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53
〈표 2-15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	153
〈표 2-15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 ..	154
〈표 2-15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	155
〈표 2-15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직업	156
〈표 2-15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156
〈표 2-15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	157
〈표 2-16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	158
〈표 2-16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158
〈표 2-16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	159
〈표 2-16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	160
〈표 2-16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	160
〈표 2-16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	161
〈표 2-166〉 연쇄 강도 유형 분류를 위한 SSA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164
〈표 2-167〉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 분류	167
〈표 2-168〉 연쇄 강도 범죄 사건 유형별 분포	171
〈표 2-169〉 범행 당시 연령	172
〈표 2-170〉 동종전과 소지여부	173
〈표 2-171〉 범행당시 혼인상태	173
〈표 2-172〉 범행 당시 동거인 여부	174
〈표 2-173〉 가해자-피해자 관계	174
〈표 2-174〉 피해자 성별 및 인원	175
〈표 2-175〉 피해자수	176
〈표 2-176〉 피해자 음주여부	176
〈표 2-177〉 신체적 피해 여부	176
〈표 2-178〉 성적 피해 여부	177

<표 2-179> 강도범죄의 수법	178
<표 2-180> 공범유무	178
<표 2-181> 강도범죄 유형	179
<표 2-182> 사건 발생 월	179
<표 2-183> 발생계절	180
<표 2-184> 사건 발생 시간	181
<표 2-185>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182
<표 2-186> 장소 유형	182
<표 2-187> 집안(옥내) 유형	183
<표 2-188> 각 연쇄 강도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 횟수 분포	184
<표 2-189> 연쇄 강도 범죄자 범행 연속성 분포	185
<표 2-190> 완벽한 범행 연속성(100%)을 보인 연쇄 강도 범죄자의 총 범행 수	186
<표 2-191> 비교적 높은 범행 연속성(75% 이상)을 보인 범죄자들의 범행 수	187
<표 2-192> 고 일관성 집단과 저 일관성 집단 간 차이	189
<표 2-193>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범죄자 총 전과 수	191
<표 2-194>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동종 전과 수	191
<표 2-195>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이종 전과 수	192
<표 2-196>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실행 전과 수	192
<표 2-197>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총 체포 횟수	193
<표 2-198>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강도 범죄 체포횟수	193
<표 2-199>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첫 체포 연령	194

그림 차례

[그림 1-1] 수사재판기록 조사목표건수의 추출절차	28
[그림 1-2]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발생추이	41
[그림 1-3]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구속율추이	42
[그림 1-4]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2003-2012 평균) ..	44
[그림 1-5] 강도범죄의 가해자 전과 변화 추이	45
[그림 2-1] 범행 특성 SSA 분석 결과	165
[그림 2-2] 범행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166
[그림 2-3] 범행 수법 유형 분류 - 계획형(1)과 기회형(2)	168
[그림 2-4] 연쇄 강도 범죄 사건 유형 분류	172
[그림 2-5] 연쇄 강도 범죄자 주된 유형별 비율 - 계획형, 기회형, 혼합형	190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실증조사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연쇄강도범죄의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수법,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정, 보호관찰, 수사실무 등 형사정책의 전영역에서 강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쇄강도란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2회 이상의 강도범죄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심층면접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의 사건기록 총 15,597건 중 각 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등의 의미없는 사건기록을 제외한 후 조사의 편의상 총 1,050건을 추출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였다. 재판으로 인해 열람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외되는 건수들이 다시 생겨나 최종으로 조사가 완성된 건수는 1,012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1일에서 2014년 9월 5일까지 총 25명의 조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기록조사표는 일차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 크게 가해자용과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심층면접조사는 먼저 교정본부에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각 기관에서 수용자의 동의를 얻었다. 최초 20명의 예비명단에서 13명의 대상자가 면접에 동의하였다. 면접은 일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인당 약 1시간 가량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연구진은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2. 연구결과

연쇄강도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1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많은 빈도를 보였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첫 체포 당시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가장 많아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쇄강도범죄자의 총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6-10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중전과를 가진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은 75.4%에 이르고 비연쇄강도범죄자에서는 5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강도범죄자는 2.7%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강도범죄자는 41.7%가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강도범죄자들은 강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강도범죄로는 초범이지만, 전과경력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강도범죄의 피해자 특성을 보면, 연쇄강도범죄의 주된 범행 대상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이었지만, 비연쇄강도범죄는 10세 이상-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연쇄강도범죄는 초면인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의 발생빈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에 나타난 미성년연쇄강도범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과를 보면 절도범죄의 비율이 5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분결과를 보면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징역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을 보면, 특수강도, 강도상해의 비율이 약 82%인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들의 범행이 내용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성년가해자들은 범행당시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협박, 유인 등의 방법으로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범들은 여성 1명을 주로 대상으로 삼은 반면, 소년범들은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과 성인범 출신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의 가

장 큰 차이는 공범관계에서 나타난다. 소년범 출신은 공범이 있는 비율이 77.5%에 이르지만, 성인범 출신은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수를 보더라도 소년범 출신의 경우 공범 수가 1명부터 5명 이상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성인범 출신의 경우 공범 수가 1명인 경우에 약 65%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역할을 보면 소년범 출신의 경우 주범이거나 공동정범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년범 출신들의 경우 일찍부터 범죄경력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범죄경험을 통해 범행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의 공범 간 관계도 조사하였는데, 친구나 선후배, 교도소 친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들이 성인범 출신보다 친구나 선후배 혹은 교도소 친구들과 공범관계를 많이 맺는 것은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면서 범죄지향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또래나 교도소 친구들과 공모하여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범 출신의 경우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공범관계를 맺는 경우가 친구 및 선후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인범 출신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까지 사회인으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맺고 있던 인간관계에서는 공범을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 26개의 범죄행위 유형 변인을 바탕으로 SSA를 사용하여 범죄행위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지리적 공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쇄 강도 범죄자 범죄행위 유형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계획형과 기회형의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계획형’은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범행 절차를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며,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 범행 개시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 덮치기도 한다. 범행을 저지를 때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결박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 번에 연속으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후에 체포될 때는 CCTV나 DNA 증거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두드러지는 ‘계획형’과는 달리, 사건 발생에 있어서의 우발성이나 범죄자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도 한다. 별다른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폭행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른 종류의 범죄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도중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의 인물이 신고하여 체포되기도 한다.

이상의 두 개의 유형을 기준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를 분류한 결과, 전체 1046건 가운데 계획형이 674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기회형은 전체의 35.6%(372건)로 나타났다. 즉,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강도 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데,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 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연쇄적인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행이 2가지 중 하나의 범죄 유형(계획형 혹은 기회형)으로 분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범죄행위 유형 유형별로 범죄자 특성 및 피해자 특성, 사건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획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기회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사건 전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던 낯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가 여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기회형의 범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강도 범죄 수법 가운데 침입 강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상 강도, 성매매 유인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명인 경우가 많았다. 사건 발생이 일 년 내내 고르게 분포하며, 그 중에서는 3-5월에 약 세 건 중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은 주로 01시에서 04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건 당시 처음 와 보거나 사전 답사를 했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

르고,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의 발생하며,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약 4분의 3에 달하는 가장 많은 범행이 발생한다.

반대로 기회형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미혼이고, 범행 당시 가족 등 동거자가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혹은 서로 잘 아는 사이거나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계획형보다 더 많았다. 피해자가 남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계획형 범죄보다는 피해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았으며, 피해자가 약간 취하거나 만취 상태였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피해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 가운데 노상 강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침입 강도, 성매매 유인 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었던 경우가 계획형 범행보다 더 많았으며, 공범의 수 또한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러 명이었던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범행이 2월, 5월, 12월의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겨울(12-2월)에 약 40%가 발생하였으며, 가을(9-11월)에는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 시간은 계획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간대, 즉 23시에서 01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 부근은 아니지만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상업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며, 약 반정도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 357명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을 주된 범죄행위 유형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계획형이 전체의 55.7%, 기회형은 33.1%, 그리고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혼합형이 11.2%였다. 즉, 연쇄 강도 범죄자를 주된 범죄행위 유형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을 보이고, 피해자를 여러 수단을 통해 제압하는 계획형의 범죄자들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 이 세가지 유형간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합형에 비해 계획형과 기회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총전과수 및 총이종 전과수, 총체포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특히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수,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첫체포 연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 범행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연쇄강도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 가운데 범행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그 수법에 있어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검거를 막기 위한 법적 인식력(forensic awareness)을 보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시 수사 및 범인 검거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비교적 높고,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특히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더 많다는 점은 이 유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높은 범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 범행을 통해 범죄행위 유형을 점차적으로 학습하고 발달시키며, 범행 당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전 계획 및 준비를 통해 검거를 피하는 능력이 그간의 범죄 전력을 통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로 향후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단,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 연속성이 많은 수의 연쇄 사건에 걸쳐서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행위 유형을 보이는 사건들을 연계 분석을 통해서 추려낸다면 효율적 수사 및 빠른 검거에 기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계획형의 범행 가운데 침입 강도가 가장 많고, 주거 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한 번에 여러 사건을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처럼 범죄행위 유형에서의 일관성을 가려내는 연계분석을 통해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인지를 판별하여 추가적인 범죄들의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기회형 범죄의 경우에는 주로 상업지역의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약간 취하거나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강도 범죄 빈발 지역에서 순찰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CCTV의 설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가해자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나 공동정범이었던 범죄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들을 통해 범죄행위 유형을 학습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중국에는 강도 범죄의 주범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범죄자라도, 향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향후 동종의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 처리와 지속적인 교화의 과정이 요구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김 지 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강도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강력 범죄이나 살인, 강간, 방화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가 드물고 특히 연쇄강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2013 범죄분석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4대 강력범죄전체의 재범에서 강도 범죄가 차지하는 재범율은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13). 2014년 6월부터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등을 저지른 사람에 한해 부착하던 전자발찌 제도가 강도범죄로 확대되는데¹⁾, 이는 강도범죄의 재범율이 높고, 성폭력범죄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법시행이다. 전자발찌의 시행에서도 드러나듯이 강도범죄는 일회여 그치는 경우가 드물고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초래하며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가장 심각하고 빈번한 범죄이므로 연쇄강도범죄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실증조사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강도범죄, 강도범죄안에서도 연쇄강도범죄의 실태조사를 통해 범죄수법 및 범죄발생의 상황적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분석하여 교정, 보호관찰, 수사 실무 등 형사정책의 전영역에서 강도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년차 연구인 연쇄강력범죄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차년도 연쇄방화, 이차년도인

1) 법률저널 2014년 6월 18일자 기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

연쇄성범죄에서 ‘연쇄’를 2회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본 고에서도 이전의 연쇄범죄 연구와 동일하게 서로 다른 장소와 서로 다른 피해자를 가지는 2회 이상의 강도범죄를 연쇄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1. 기록조사의 절차

수사재판기록의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강도범죄로 기소된 강도범죄자의 사건번호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아래 <표 1-1>은 대검찰청에 의뢰한 강도범죄 사건의 구체적 죄명이다.

<표 1-1> 강도범죄 사건의 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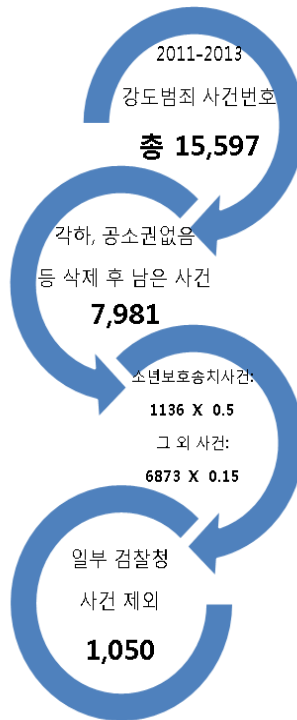
	조문	죄명
형법	제333조	강도
	제341조	(강도) 상습
	제342조	강도미수
	제343조	강도예비
	제334조	특수강도
	제341조	(특수강도) 상습
	제342조	특수강도미수
	제335조	준강도
	제342조	준강도미수
	제336조	인질강도
	제341조	(인질강도) 상습
	제342조	인질강도미수
	제337조	강도상해
	제341조	강도상해미수
	제337조	강도치상
	제342조	강도치상미수
	제338조	강도살인
	제342조	강도살인미수
	제338조	강도치사
	제342조	강도치사미수
	제339조	강도강간
	제342조	강도강간미수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해상강도)상습 *단, 제340조 1항에만 적용
	제342조	해상강도미수
	제343조	예비음모

	조문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인질강도)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해상강도)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미수)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미수)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인질강도미수)
	제5조의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해상강도미수)
	제5조의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등재범)
	제5조의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
	제5조의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강간)
	제5조의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미수)
	제5조의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강간미수)
방조(죄명 상관없이 처분을 방조로 받은 경우)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위의 죄명으로 발생한 강도범죄건수는 총 15,597건이다. 이 사건에서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법원송부, 죄가안됨, 참고인중지, 타관이송, 혐의없음을 제외한 사건기록은 모두 7981건이었다. 그런데 공식기록을 보면 강도범죄의 특성상 미성년 범죄의 비율이 높으나 소년부 송치 등으로 인해 사건기록이 검찰청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범죄사건기록의 비율을 높이고자, 소년보호송치사건 1,136건에서 spss를 이용 50%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 결과 568건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소년보호송치 이외의 사건 6,873건에서 spss를 이용 15%를 무작위로 추출했다. 그 결과 1,031건이 추출되었다.

소년보호송치사건에서 추출된 568건과 소년보호송치 이외의 사건에서 추출된 1,031건을 더한 1,599건의 수사재판기록 중 조사의 시간제약을 고려하고 편의를 위해 각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사건을 제외하여 총 1,050건을 신청하였다(그림 1-1)참조).

1050건은 전국 16개 지방검찰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표 1-2>참조), 각 검찰청에서 기록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재판으로 인해 열람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외되는 건수들이 다시 생겨나 최종으로 조사가 완성된 건수는 1,012건이었다. 수사재판기록 조사기간은 2014년 7월 21일에서 2014년 9월 5일까지 총 25명의 조사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림 1-1] 수사재판기록 조사목표건수의 추출절차

〈표 1-2〉 각 검찰청별 수사기록 조사건수

조사일자	기관명	조사건수
7월 21일 - 7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0
7월 21일 - 7월 23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70
7월 24일 - 7월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0
7월 24일 - 7월 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	52
7월 28일 - 7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86
7월 28일 -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3
7월 31일 - 8월 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3
7월 31일 - 8월 1일	청주지방검찰청	23
8월 4일 - 8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116
8월 7일 - 8월 8일	전주지방검찰청	23
8월 11일 - 8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82
8월 11일 - 8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	70
8월 25일 - 8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54
8월 25일 - 8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63
8월 28일 - 8월 29일	울산지방검찰청	30
9월 1일 - 9월 5일	부산지방검찰청	155

2. 기록조사표의 구성

기록조사표는 일차로 선행연구와 사전조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다시 전문가 회의와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되었다. 기록조사표는 크게 가해자용과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가. 가해자용 기록조사표

수사재판기록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용으로 만들어진 조사표는 크게 연쇄성 여부, 사법처리현황,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연쇄강도범죄의 여부란 본건에서 여러 건의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결과의 통계분석에서 강도범죄의 연쇄성 여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본건에서 여러 번의 강도범죄를 저지른 후에 잡힌 경우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생년월일, 국적, 장애여부, 교육정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가해자의 교육정도는 무학, 초등학교 재학,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중학교 재학, 중학교 중퇴 및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대학교 재학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정고시의 경우 검정고시로 취득한 학력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가해자의 장애여부는 장애없음과 신체장애, 정신장애로 구분하였고, 알콜중독의 경우 정신장애에 포함시켰다.

사법처리현황에는 전과와 체포기록이 포함된 범죄경력 등이 있다. 범죄경력도 전과와 체포경력으로 구분되어 조사되었다. 전과경력에서 죄명은 강도범죄관련, 성범죄관련, 폭력범죄관련, 절도범죄관련 범죄로 구분하였고, 처분결과와 확정일자를 기록하였으며, 도로교통법 위반과 향토예비군법 위반은 제외하였다. 체포경력도 강도범죄에 한해서만 기록하였다. 즉, 강도범죄로 체포되었으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된 것을 말한다. 체포경력도 전과만큼 조사대상자의 이전 경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전과가 아닌 체포경력도 수사기록이나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조사할 수는 없었다.

〈표 1-3〉 가해자용

항목	내용
기본적인 인적사항	생년월일, 국적,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교육정도
범죄경력	전과경력(죄명, 처분결과, 확정일자),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죄명, 처분결과, 체포년도)

나. 사건용 기록조사표

사건용 기록조사표는 본건과 전과 사건을 모두 포함시켰고, 전과 사건의 경우 수사재판자료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록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사건용 기록조사표는 일회강도범죄 사건용과 연쇄강도범죄 사건용으로 구분된다. 일회 강도범죄 사건용은 가해자가 한 번만 강도범죄를 한 경우를 기록하는 것이고, 연쇄 강도범죄 사건용은 다른 시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2번 이상 강도범죄를 한 경우를 기록한다. 연쇄강도범죄의 경우는 일회강도범죄와 달리 발생일시와 장소가 여러 개라는 점에서 일회 강도범죄 사건과 차이를 가진다. 일회강도범죄 사건용 기록조사표는 가해자 한 명당 하나의 기록조사표만 가지지만 가해자가 연쇄강도 범죄자인 경우, 사건이 여러 개가 되므로 가해자 한 명당 여러 개의 기록조사표가 만들어진다. 사건용에도 연쇄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본건에서 여러 건의 강도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지 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사건용은 크게 사법처리현황, 범행당시 가해자의 특성, 범죄특성, 피해자의 특성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사법처리현황 항목은 강도범죄 죄명, 경합여부, 기소여부, 판결종류, 형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상태는 범행당시 연령, 범행당시 직업, 범행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범행당시 동거여부와 혼인상태, 범행당시 약물복용여부와 가해자 음주여부, 범행당시 장애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특성은 수사재판기록에 나타난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강도범죄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자가 저질렀던 강도범죄가 여러 건인 경우, 피해자의 수, 연쇄강도범죄의 여부, 체포 단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공범관계,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 강도범죄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강도범죄 수법, 폭행특성, 사용된 범행도구와 피해내용, 범행 사전계획 여부, 사건발생일시와 장소, 사건당시 가해자의 주거부정 여부, 사건당시 가해자의 거주 지역, 사건발생 장소,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 장소까지 이동방법,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에 관한 항목은 피해자의 성별, 범행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국적, 피해자의 장애여부, 범행당시 피해자 음주 및 약물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죄명은 수사재판기록에 나온 기소된 죄명이다. 경합여부는 이종경합과 동종경합으로 구분된다. 동종경합의 경우는 죄명에 2가지 이상이 기입된 경우, 동종경합이 되며 이종경합도 이종경합 죄명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종경합 범죄는 살인, 방화, 재산범죄(사기, 횡령, 점유이탈 등),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폭행범죄, 성범죄, 풍속 및 도박범죄, 마약류 범죄, 위조범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판결종류는 무죄, 벌금, 집행유예, 징역, 소년보호사건송치, 보호관찰, 치료감호, 사회봉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징역 형량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관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무직, 학생, 운송 및 운수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범행당시 가해자가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의 수와 동거인의 유형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동거인의 유형에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동료 및 친구, 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혼인상태는 미혼, 동거, 기혼, 재혼 이상,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포단서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신고, 제3의 인물이 신고, CCTV, DNA 증거(정액, 혈흔 등), 지문 및 족문, 탐문·신문(여죄추궁) 및 검문(전과자 조사), 현행범 체포, 자수, 전자발찌 위치추적,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 등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친인척, 서로 잘 아는 사이,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사건 전 상호작용 있음), 모르는 사람(사건 전 상호작용 없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범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다. 공범유무와 공범관계는 강도범죄 실태 조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공범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역할을 주범, 종범, 공동정범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공범 간의

관계는 본건의 가해자 입장에서의 관계로 친구 및 선후배, 가족 및 친척, 교도소 친구, 동네사람, 직장동료 및 상사, 애인 및 부부, 모르는 사람(처음 본 사람),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록하였다.

희생자의 충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유형을 가해자와 피해자 각 각 일인, 가해자 다수와 피해자 일인, 가해자 일인과 피해자 다수, 가해자 다수와 피해자 다수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을 조사하였는데, 여기에는 만나자 마자 바로 폭행, 가택침입, 끌고 가서 범행, 위협, 기다렸다가 덮치기, 음주 등 놀이로 유인, 기만, 망보기 등의 선택지가 있다. 가택침입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 침입하는 것이다. 끌고 가서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기다렸다가 덮치기는 골목길이나 공원 등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강도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고, 음주 등 놀이로 유인하는 방법은 술을 마시거나 같이 노래방을 갔다가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등을 말한다. 기만은 피해자를 속여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서 강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혹은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승차 후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강도범죄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별다른 상호작용 없음, 함께 음주, 함께 식사, 함께 대화, 함께 놀이, 언어적으로 싸움, 물리적으로 싸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별다른 상호작용 없음에서 상호작용이라 하면 범죄행동은 제외가 되어, 예를 들면 성폭행과 같은 범죄는 상호작용이라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만나자 마자 폭행은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함께 놀이에는 영화관람, 놀이공원 등과 같은 행위들을 의미한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는 가해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조사자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강도범죄의 발생에서 사전 준비나 계획성 등을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음주 안함,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약간 취함, 만취로 구분했고, 조사자가 정말 유추하기 힘든 경우는 알 수 없음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범행당시 가해자의 약물 복용 여부도 알 수 없음 항목을 포함하여 약물복용 안함, 복용했으나 정신은 있음, 복용하여 약간 혼미, 복용하여 극도로 혼미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

여부도 피해자의 진술을 참고하여 조사자가 판단하도록 하였고, 가해자의 음주여부와 동일하게 항목을 구성하였다. 범행당시 피해자의 약물 복용여부 역시 가해자의 약물복용 여부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강도범죄의 수법은 침입강도, 노상강도, 인질강도, 성매매 유인,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연쇄강도범죄 가운데 소년범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강도범죄의 수법은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들과 달리 범죄 경험이 부족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따라 강도범죄의 수법에 있어서도 성인범과 소년범이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침입강도는 주거, 점포, 은행,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노상강도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행인을 흉기로 폭행, 협박하여 소지품을 강취하는 방법, 인질강도는 사람을 인질로 인치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성매매 유인은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숙박업소 등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것이고,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은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성매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 이동한 장소에서 물건을 강취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폭행 특성은 폭행 없음, 흉기로 위협하기, 손이나 주먹과 발 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기,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결박(테이프, 끈 등), 감금, 완력사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가해자의 행위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가해자가 폭행을 했는지 여부, 폭행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심각한 폭행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면 이는 범행의 의도성, 계획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된 혹은 사용 예정이었던 범행도구도 조사하였다. 도구를 사용 안함, 콘돔, 장갑 착용, 흉기,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 결박도구(끈, 테이프 등), 차량(오토바이 포함)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콘돔의 경우 성폭행과 같은 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차량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 준비된 범행으로 공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는 피해 없음, 신체적 피해,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 성적 피해 등의 항목이 있다.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도 조사하였다. 사전계획 등은 사건기록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 경우만 계획된 것으로 기록하였

고, 범행절차 사전 계획, 범행대상 사전 선정, 범행장소 사전 답사, 범행전 도주 계획, 범행전 도구준비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도범죄와 관련된 장소는 사건당시 가해자가 거주한 장소, 사건발생 장소,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사건 당시 가해자가 거주한 장소의 경우 특히 주거 부정 여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강도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이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혹은 발생 예정 장소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록하도록 하였고, 사건 당시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사건 당시 직장 혹은 직장 인근(학교 포함), 직장이나 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전에 한 두 번 와본 적 있음(사전 답한 경우 제외),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사전 답사한 경우 포함)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가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된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도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수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거리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동일지역(동일한 동 혹은 리), 3km 미만, 3km 이상-10km 미만, 10km 이상-50km 미만, 50km 이상-100km 미만, 100km 이상의 선택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야산 및 임야, 공장지역, 공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강도범죄에서 사건발생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형도 기록하도록 하였다. 집안, 집근처,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 사무실 및 직장, 차량 내, 유흥업소, 숙박업소, 비디오방(PC방), 길거리, 야산 등 한적한 곳, 공원 및 놀이터, 편의점 및 슈퍼마켓, 금은방, 음식점, 기타 상점(휴대폰 가게), 다방 등의 항목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발생장소가 집안인 경우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의 항목에 추가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강도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 장소까지 이동방법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차량이용, 대중교통, 도보, 이동안함(동일한 장소) 등이 있다.

그 외 피해자의 특성으로, 피해자 성별, 범행당시 피해자 연령과 국적, 피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여부 등을 기록하는 항목이 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다.

〈표 1-4〉 사건용

항목	내용
본건의 처리현황	죄명, 연쇄여부, 경합여부 및 죄명 등
범죄특성	가해자가 저질렀던 강도범죄가 여러 건인 경우, 피해자의 수, 연쇄강도범죄의 여부, 체포 단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공범관계,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 강도범죄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 강도범죄 수법, 폭행특성, 사용된 범행도구와 피해내용, 범행 사전계획 여부, 사건발생일 시와 장소, 사건당시 가해자의 주거부정 여부, 사건당시 가해자의 거주 지역, 사건발생 장소,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 장소까지 이동방법,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과 특성 등
사법처리 현황	강도범죄 죄명, 경합여부, 기소여부, 판결종류, 형량 등
범행당시 가해자 특성	범행당시 연령, 범행당시 직업, 범행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범행당시 동거여부와 혼인상태, 범행당시 약물복용여부와 가해자 음주여부, 범행당시 장애여부 등
범행당시 피해자 특성	피해자의 성별, 범행당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 국적, 피해자의 장애여부, 범행당시 피해자 음주 및 약물여부 등

3.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의 절차

면접 대상자들은 전과를 제외한 본 건에서 최소 2건 이상의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하였다. 먼저 20명의 연쇄강도범죄자의 대상을 작성하여 교정본부에 협조를 구하였다. 교정본부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를 검토한 후 면접대상자가 수용된 일선기관에 명단을 하달하였다. 일선 교정기관에서는 심층면접대상자에 있는 수용자 중 면접에 동의하는 수용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교정본부에 전달하였다. 교정본부에서는 각 교정기관에서 온 명단을 취합하여 연구진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총 13명의 면접대상자가 선정되었다.

면접은 일선 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접견실, 회의실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1인당 약 1시간 가량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연구진들은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해 면접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보조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여 입력하였다. 면접은 9월 한달간 연구진 3명과 연구보조원 3명이 한조를 이루어 진행하였다.

나. 면접내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하였으며, 면접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범행특성: 강도범죄 유형, 범행장소, 범행시간, 피해자 총수, 공범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선택기준, 접근 방법, 도구사용 여부, 피해내용, 범행 동기 등
- 범죄자 특성: 나이, 총 범행 횟수, 사건당시 직업, 거주지, 범행당시 상황(경제적 상황, 스트레스 요인) 등
- 범죄자의 배경적 특성: 전과, 음주습관, 학력, 어린 시절 가정형편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비행경험 등
- 범행 이후 상황: 검거경위, 교도소 생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행위에 대한 책임감, 출소 후 계획

특히 면접조사에서 첫 강도사건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연쇄강도범죄에서 첫 강도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면접조사 당시의 역동에 따라 다양한 내용들이 조사되었다.

다. 심층면접 대상자

심층면접대상자의 현재 연령은 21세에서 46세까지이다. 범행 당시의 연령을 보면 가장 어린 대상자가 15세, 범행 당시 가장 나이가 많은 대상자의 연령은 24세였다. 이들의 강도수법별로 보면 강도강간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조 건만남유인과 노상강도, 침입강도가 동일하게 각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수용기관을 보면 원주교도소 2명, 춘천교도소 3명, 소망교도소 1명, 화성직업훈련소 1명, 안양교도소 1명, 대구교도소 2명, 대전교도소 1명, 순천교도소 2명이다. 이들 중 사례 1과 사례12, 사례2와 사례 3, 사례 4와 사례 5는 공범관계였다. 사례 13의 경우는 면접결과 연쇄강도범죄 내용으로 기술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 본문에서 기술하지 않았다.

〈표 1-5〉 심층면접대상자

사례번호	현재연령	범행당시연령	강도수법	수 용 기 관
1	46	19	침입강도	원주교도소
2	21	20	조건만남유인	원주교도소
3	21	20	조건만남유인	춘천교도소
4	24	22	노상강도	춘천교도소
5	23	21	노상강도	춘천교도소
6	32	28	강도강간	소망교도소
7	39	21	침입강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8	22	17	노상강도	안양교도소
9	26	24	강도강간	대구교도소
10	46	21	강도강간	대구교도소
11	22	20	조건만남유인	대전교도소
12	28	22	침입강도	순천교도소
13	21	15	강도강간	순천교도소

제3절 문헌고찰

1. 선행연구

문헌고찰에서는 선행연구와 공식통계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연쇄강도자체에 관한 연구는 드물고 전반적인 강도범죄와 강·절도범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다수가 사회경제적 환경에 중심을 두는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강도범죄의 연쇄성에 중점을 두고,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관점에서 연쇄강도범죄자와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내용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택하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범죄의 원인을 고찰하고 있으므로 되짚어 볼 가치가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폭력 범죄, 특히 강도와 같은 폭력재산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불평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은 경제적 부가 일부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 범죄자가 양산될 가능성

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Neumayer, 2005). Sampson과 Wooldredge(1987)는 영국 238개의 행정구역에서 발생한 강절도 범죄의 분석을 통해 범죄가 결혼가정, 홀로 거주하는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는 캐나다 7개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실업률과 이혼율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낸 Kennedy와 Forde(199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Smith와 Jarjoura(1989)는 강절도 범죄의 발생률이 인종 차별, 주민의 심리적 불안정, 소득 등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Miethe와 Dowall의 연구(1993)는 폭력범죄와 강절도 범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의 거시적 변인과 미시적 변인을 통합하고 있다. 범죄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은 피해자의 개인적 위험이 어느 정도는 피해자가 속한 주변 환경과 피해자의 일상 활동, 타인의 통제 행동 등 거시적-미시적 변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전 연구들은 거시적 변인이 어느 정도로 미시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증한 바가 없다. 범죄피해이론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 거시적-미시적 변인을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으나(Felson, 1986; Hirschi&Travis; 1986; Sampson et al., 1987), 거시적 변인의 입장은 범죄 행동이 어떻게 행동의 기회를 결정하는지 고려하지 않았다. 반대로 미시적 수준의 범죄이론들은 성격 특성의 역할을 강조할 뿐 범죄 동기를 일으키는 사회적인 힘을 고려하지 않았다.

Miethe와 Dowall의 연구(1993)는 거시적-미시적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몇 가지 결과를 보여주는데 먼저, 일상 활동에 상관없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나쁜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들은 더 풍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보다 강절도와 폭력에 피해를 받을 위험이 더 컸으나 저소득과 독거가 가지는 범죄피해의 위험성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인이 강절도 범죄의 피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으며 나아가 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일수록 범죄예방을 위해 거주지의 환경개선이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후 Miethe는 Meier와의 연구(1994)를 통해 범죄피해화의 가능성은 사회구조적 측면과 지리적 측면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범죄자들은 주로 자신에게 친숙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사회적으로 해

체된 지역까지도 그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노상강도의 발생을 일상활동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을 통해 설명한 연구(Smith, Frazee & Davison, 2000) 결과에 따르면 노상강도는 범죄자가 친숙하게 느끼는 지역뿐 아니라 나아가 그들이 살고, 일상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중 사회가 해체된 지역에서 발생한다. 즉 노상강도의 발생은 일상활동과 사회해체 요소의 결합에 의한 것이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상강도의 발생율은 일상활동의 요소들보다 사회 해체적 요소들에 의해서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 중심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은 보다 노상 강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mith et al., 2000).

일상활동이론은 강도범죄의 발생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중 하나이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의 발생은 범행 기회에의 노출과 관련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기회는 동기화된 범죄자, 매력적인 대상, 감시자의 부재라는 범행을 유발하는 3가지 요소와 관련되고,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Cohen & Felson, 1979). 그리고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범죄의 실행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본다.

Miethe 등(1987)는 U.S. National Crime Survey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죄피해를 연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폭력범죄는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의견충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하루일과와 야간활동이 범죄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으나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야간활동이나 일상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Lynch(1987)는 직장의 특성이나 여가생활과 같이 일상 활동의 장소를 확장하였다. 즉 위험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Kennedy와 Forde(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젊고, 미혼인 남성이 산책이나 드라이브, 바의 방문이 빈번할수록 강도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술집출입과 노숙(on the street)이 빈번한 생활은 범죄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될 기회를 높이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낮은 소득과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 곳은 무단침입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과 단독주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았다. 일상활동이론의 중요 전제는 개인이 집에서 벗어나 활동하

는 시간이 많을수록 범죄피해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와 노상강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Groff, 2007).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 survey)를 분석한 자료는 강도범죄와 강도범죄자를 다룬 가장 미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도의 주요 동기는 절도이지만 항상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2%가 실패로 끝난다고 한다. 강도사건으로 피해자가 당한 경제적 손실은 평균 175불 정도이고 사건의 85%에서 빼앗긴 물건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강도범죄자의 83%가 남성이고 강도 범죄자의 대부분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중 22% 이상이 화기를 가지고 있었다(박종렬·노상욱, 2012).

2. 공식통계

강도범죄와 강력범죄 그리고 전체범죄의 최근 10년 동안 발생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또한 [그림 1-2]는 전반적인 변화추이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전체범죄가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강력범죄와 강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03년 2,004,329건에서 2008년 2,189,452건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2년 현재 1,944,906건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를 보면 2003년 4,187.96에서 2012년 현재 3,889.47건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강력범죄와 강도범죄의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크다. 강력범죄는 2003년 305,502건에서 2012년 현재 278,294건으로 감소하였고, 강도범죄는 2003년 7,327건에서 2012년 현재 2,643명으로 감소하였다. 발생비를 보면 강력범죄는 2003년 638.33에서 2012년 556.54로 감소하였고, 강도범죄는 2003년 15.31에서 2012년 5.29로 65.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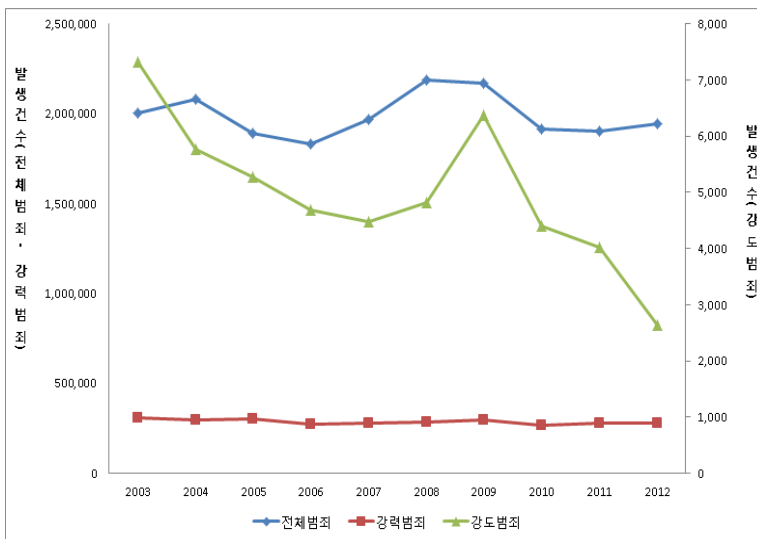
〈표 1-6〉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범죄	건 수 2,004,329	2,080,901	1,893,896	1,829,211	1,965,977	2,189,452	2,168,185	1,917,300	1,902,720	1,944,906
발생비	4,187.96	4,331.65	3,934.30	3,781.55	4,045.42	4,472.95	4,408.49	3,880.36	3,822.30	3,889.47
강력 범죄	건 수 305,502	296,246	299,615	272,196	276,381	284,839	295,525	266,490	277,495	278,294
발생비	638.33	616.68	622.42	562.71	568.7	581.92	600.89	539.34	557.44	556.54
강도 범죄	건 수 7,327	5,762	5,266	4,684	4,470	4,827	6,379	4,395	4,021	2,643
발생비	15.31	11.99	10.94	9.68	9.2	9.86	12.97	8.89	8.08	5.29

* 강력범죄 :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 강력범죄로 구분된 범죄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단체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그림 1-2]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발생추이

<표 1-7>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범죄와 강력범죄, 그리고 강도범죄 사건의 구속율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범죄의 구속율은 1-3%, 강력범죄의 구속율은 1-5%, 강도범죄의 구속율은 30-60%로 강도범죄의 구속율이 가장 높다. [그림 1-3]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구속율이 크게 변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세 범죄유형 모두에서 구속율은 상당 수준 낮아졌는데 전체범죄는 2003년 3.6%에서 2012년 1.2%로 낮아졌으며 강력범죄는 5.1%에서 1.8%로 떨어졌다. 이같은 경향은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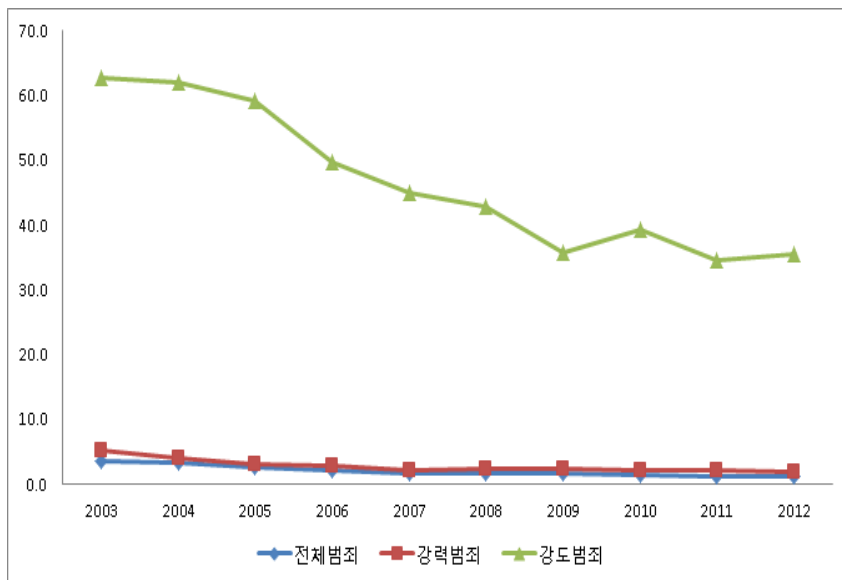
42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범죄 역시 마찬가지로여서 2003년 절반이상을 구속 수사하였던 반면(62.8%), 2012년에는 약 1/3가량만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35.5%).

〈표 1-7〉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구속율

단위 : %

구분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	
	건수	%	건수	%	건수	%
2003	82,443	3.6	23949	5.1	3,334	62.8
2004	73,113	3.2	15475	4.0	2,505	62.0
2005	50,953	2.6	11080	3.0	1,809	59.2
2006	39,648	2.1	8590	2.8	1,512	49.6
2007	35,202	1.8	7355	2.2	1,406	44.9
2008	39,987	1.6	10505	2.4	1,726	42.7
2009	41,180	1.6	10370	2.4	1,997	35.8
2010	27,676	1.4	8178	2.1	1,423	39.4
2011	24,431	1.3	7642	2.0	1,614	34.6
2012	24,410	1.2	7521	1.8	1,290	35.5



[그림 1-3]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구속율추이

<표 1-8>에는 강도범죄 가해자의 범행당시 연령을 20세 이하, 21-25세, 26-30세, 31세-35세, 36-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70세, 71세 이상, 미상의 10개

의 범주로 나누어 10년간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강도범죄의 가해자는 20세 이하가 10년 평균 3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0대, 40대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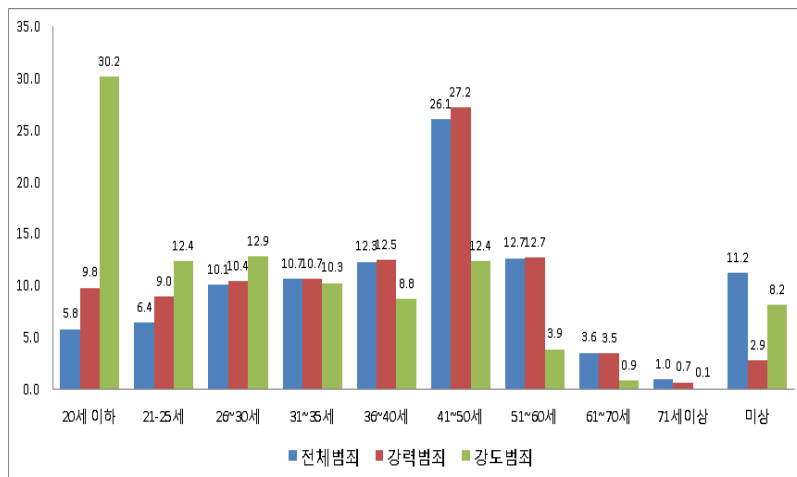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나타난 강도범죄의 연령변화는 바로 평균연령의 증가, 즉 범죄자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세 이하의 연령은 보합세를 유지하였지만 20대의 경우는 점차 감소하고, 40대 이후의 연령의 경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체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연령의 증가와 신체적 건강의 향상으로 40대 이후 강도범죄자들이 증가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그림 1-4]의 그래프에서 보다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체범죄와 강력범죄 그리고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을 각 연령대별로 평균을 구하여 보면 그래프에 나타났듯이 강도범죄가 전체범죄와 강력범죄에 비해 가해자 연령이 훨씬 낮다. 10년간 검거된 강도범죄자들의 30.2%가 '10대'였고, '20대'도 25.3%로 가해자 중 '10-20대'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수준이다. 반면, '40대'는 12.4%, '50대'는 3.9%로 전체범죄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30대'는 전체범죄, 강력범죄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8〉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

[illegible]

44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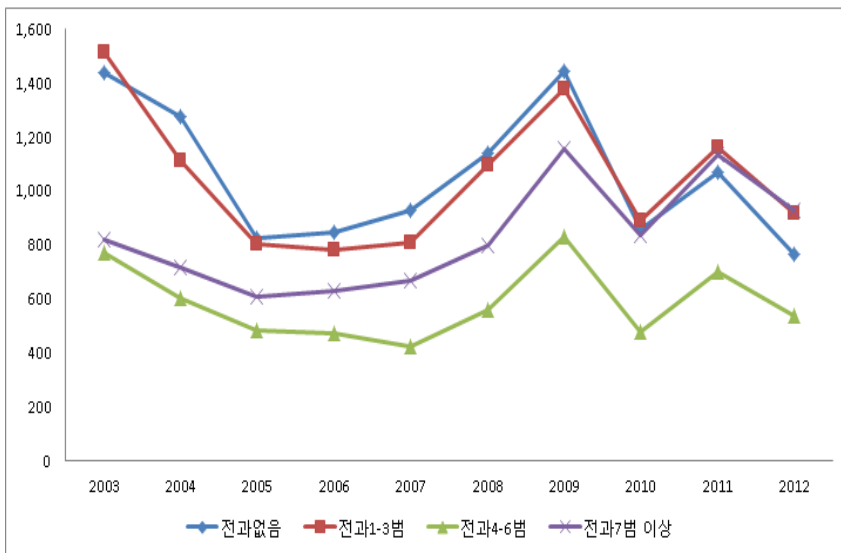


[그림 1-4] 전체범죄, 강력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 연령(2003-2012 평균)

이번에는 <표 1-11>을 통해 가해자들의 전과를 살펴보았다. 강도범죄의 가해자들은 전과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과9범 이상, 전과 1범의 순이다. 이는 강도범죄가 저연령층 범죄가 많은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다소 변화가 보이는데 강도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경우는 2003년 27.1%에서 2012년 현재 21.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과 9범 이상의 경우는 2003년 8.6%에서 2012년 현재 19.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9〉 강도범죄의 가해자 전과

[illegible]



[그림 1-5] 강도범죄의 가해자 전과 변화 추이

다음의 <표 1-12>는 강도 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를 살펴보았다. 동종 범죄는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27.6%, 2009년에는 28.6%, 최근에는 31.1%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201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종 범죄에서 6개월 이내에 재범 확률은 9.16%로 증가 하였으며 1개월 이내 재범 확률도 18.32%(138)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하였다. 1년 이내에 재범율은 전체적인 기간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지만 2008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재범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내에서 이종 재범 건수는 2009년까지 점차 증가 하였으며 최근에 2011년 5.62%에서 2012년 8.02%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개월 이내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건수는 2003년에는 7.75%에서 2007년에는 7.25% 그리고 2012년에는 9.22%로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이내에 재범율은 2011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경로 나타났으며 6개월 이후에 재범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이내에 재범을 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건수는 2004년도부터 증가 하였지만 2009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46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표 1-10〉 강도범죄의 재범가해자 재범기간 및 종류

단위 : 건

[illegibl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연쇄강도범죄자 및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

김지영 · 김지연 · 박지선

제2장

연쇄강도범죄자 및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처분특성

조사대상자의 명수는 1012명이나 경합된 사건이 있어 총수는 1712건이다. 조사대상자의 조사기관을 분석하였다. <표 2-1>을 보면 부산지검이 가장 많은 1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천지검 9.5%, 서울북부지검 8.8%, 수원지검 8.0%, 서울중앙지검 7.7%, 대구지검 6.7%, 대전지검 6.3%, 광주지검과 창원지검이 각각 5.8%, 서울서부지검 5.6%,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이 각각 4.6%, 울산지검 3.1%, 청주지검 2.9%, 서울동부지검 2.8%, 전주지검 0.8% 순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 강도범죄가해자의 조사기관

조사기관	빈도	백분율
광주지방	59	5.8
대구지방	68	6.7
대전지방	64	6.3
부산지방	171	16.9
서울남부지방	47	4.6
서울동부지방	28	2.8
서울북부지방	89	8.8
서울서부지방	57	5.6
서울중앙지방	78	7.7
수원지방	81	8.0

조사기관	빈도	백분율
울산지방	31	3.1
의정부지방	47	4.6
인천지방	96	9.5
전주지방	8	0.8
창원지방	59	5.8
청주지방	29	2.9
합계	1012	100.0

수사재판기록에 나타난 죄명을 분석하였다. 형법 조문에 나타난 죄명을 근거로, 제333조 강도, 제341조 강도상습, 제342조 강도미수, 제343조 강도예비, 제343조 예비음모를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13.3%), 제334조 특수강도, 제341조 특수강도상습, 제342조 특수강도미수를 특수강도관련(38.0%), 제335조 준강도, 제342조 준강도미수를 준강도관련(3.7%), 제336조 인질강도, 제341조 인질강도상습, 제342조 인질강도미수를 인질강도관련(0.2%), 제337조 강도상해, 제341조 강도상해미수, 제337조 강도치상, 제342조 강도치상미수를 강도상해관련(34.6%), 제338조 강도살인, 제342조 강도살인미수, 제338조 강도치사, 제342조 강도치사미수를 강도살인관련(1.9%), 제339조 강도강간, 제342조 강도강간미수를 강도강간관련(1.0%),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해상강도상습(단, 제340조 1항에만 적용), 제342조 해상강도미수를 해상강도관련(0.0%)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도강간) 제3조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제5조2항을 성폭력범죄 특례법 관련(5.5%)으로 분류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강도미수·특수강도미수·인질강도미수·해상강도미수, 제5조의5 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강도강간·강도상해미수·강도강간미수를 특가법관련(1.3%), 마지막으로 죄명에 상관없이 처분을 방조로 받은 경우를 방조(0.5%)로 분류하였다.

〈표 2-2〉 전체 죄명분류

본건의 죄명	빈도	백분율
강도 관련 및 예비음모	172	13.3
특수강도관련	493	38.0
준강도관련	48	3.7
인질강도관련	2	0.2
강도상해관련	449	34.6
강도살인관련	25	1.9
강도강간관련	13	1.0
해상강도관련	0.0	0.0
성폭력범죄특례법관련	71	5.5
특가법관련	17	1.3
방조	8	0.5
합계	1298	100.0

강도범죄와 더불어 기소된 이종범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가 3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폭행범죄 관련 26.4%, 재산범죄(사기, 횡령, 점유이탈 등) 11.1%로 나타났다. 기타범죄를 제외하고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범죄 이외에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성범죄 관련 7.5%, 위조범죄 1.9%, 마약류 관련 1.2%, 풍속 및 도박범죄 0.7%, 살인 0.4%, 방화 0.2%의 순으로 결과 되었다.

〈표 2-3〉 이종경합된 범죄

이종경합	빈도	백분율
살인	3	0.4
방화	2	0.2
재산범죄 (사기, 횡령, 점유이탈 등)	95	11.1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290	34.0
폭행범죄 관련	225	26.4
성범죄 관련	64	7.5
풍속 및 도박 범죄	6	0.7
마약류 관련 범죄	10	1.2
위조범죄	16	1.9
기타범죄	142	16.6
합계	853	100.0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가 된 강도범죄자들의 국적을 보면 내국인이 960명(94.9%), 외국인 및 귀화인 52명(5.1%)으로 나타났다.

〈표 2-4〉 국적

국적	빈도	백분율
내국인	960	94.9
외국인 및 귀화인	52	5.1
합계	1012	100.0

성별을 보면 남성이 92.2%로 대다수였고, 여성은 7.8%로 나타났다.

〈표 2-5〉 성별

성별	빈도	백분율
남성	933	92.2
여성	79	7.8
합계	1012	100.0

강도범죄자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은 10대(467명, 46.1%)였으며, 다음으로 20대 250명(24.7%), 30대 147명(14.5%), 40대 107명(10.6%), 50대 35명(3.5%), 60대와 70대가 각 각 3명, 0.3%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강도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연령

연령	빈도	백분율
10대	467	46.1
20대	250	24.7
30대	147	14.5
40대	107	10.6
50대	35	3.5
60대	3	0.3
70대	3	0.3
합계	1012	100.0

조사대상자의 학력을 살펴보았다. 무학자는 0.2%에 불과했고,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자가 4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중퇴 및 졸업자 18.3%, 고등학교 재학 14.0%, 대학교 재학 이상이 10.7%, 중학교 재학 4.5%,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3.9%로 나타났다.

〈표 2-7〉 학력

학력	빈도	백분율
무학	2	0.2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39	3.9
중학교 재학	46	4.5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85	18.3
고등학교 재학	142	14.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444	43.9
대학교 재학 이상	108	10.7
알수없음	46	4.5
합계	1012	100.0

3.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조사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장애 여부를 조사하였다. 중복응답으로 알 수 없음을 제외하고 총 1020건이 집계되었다. 대부분인 89.9%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장애(알콜중독 등) 7.1%, 신체장애 2.8%로 나타나,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강도범죄 가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신체적·정신적 장애	빈도	백분율
장애없음	918	89.9
신체장애	29	2.8
정신장애(알콜중독 등)	73	7.1
알 수 없음	1	0.1
합계	1021	100.0

4. 조사대상자의 전과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전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총 전과를 보면, 전과 없음이 36.5%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이 3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범 이상 12.0%, 2범 이상 7.9%, 3범 이상 7.3%, 4범 이상 4.3%로 결과 되었다.

〈표 2-9〉 조사대상자의 총 전과

전과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369	36.5
1범 이상	121	12.0
2범 이상	80	7.9
3범 이상	74	7.3
4범 이상	44	4.3
5범 이상	324	32.0
합계	1012	100.0

조사대상자의 전과 죄명을 살펴보았다. 절도범죄가 과반수인 51.7%를 차지하였고, 기타범죄가 24.3%, 강도와 절도 경합범죄가 18.7%, 강도범죄 5.3%로 결과 되었다.

〈표 2-10〉 조사대상자의 전과 죄명

죄명	빈도	백분율
강도범죄	32	5.3
절도범죄	312	51.7
강도+절도범죄	113	18.7
기타범죄	146	24.3
합계	603	100.0

조사대상자의 동종전과를 살펴보았다. 전과 없음이 85.5%, 1범 9.6%, 2범 2.5%, 3범 1.9%, 4범 0.6%로 나타났다.

〈표 2-11〉 조사대상자의 동종전과

전과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865	85.5
1범	97	9.6
2범	25	2.5
3범	19	1.9
4범	6	0.6
5범 이상	0.0	0.0
합계	1012	100.0

조사대상자의 이종전과를 분석하였다. 전과 없음 38.3%, 6범~10범 16.2%, 2범~3범 15.4%, 1범 12.1%, 4범~5범 10.7%, 11범 이상 7.3%로 나타났다.

〈표 2-12〉 조사대상자의 이종전과

전과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388	38.3
1범	122	12.1
2범~3범	156	15.4
4범~5범	108	10.7
6범~10범	164	16.2
11범 이상	74	7.3
합계	1,012	100.0

조사대상자의 실행전과를 살펴보았다. 전과 없음이 79.5%, 1범 6.2%, 2범~3범 5.9%, 6범~10범 3.9%, 4범~5범 3.4%, 11범 이상 1.1%로 결과 되었다.

〈표 2-13〉 조사대상자의 실행전과

전과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805	79.5
1범	63	6.2
2범~3범	59	5.9
4범~5범	34	3.4
6범~10범	39	3.9
11범 이상	12	1.1
합계	1012	100.0

조사대상자의 전과 처분결과를 분석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이 50.1%로 가장 많았다. 기타처분 19.1%, 징역 16.7%, 징역과 소년보호처분을 함께 받은 경우가 14.1%로 나타났다.

〈표 2-14〉 조사대상자의 전과 처분결과

처분결과	빈도	백분율
징역	101	16.7
소년보호처분	302	50.1
징역+소년보호처분	85	14.1
기타	115	19.1
합계	603	100.0

조사대상자인 전체 강도범죄자의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를 살펴보았다. 0회 83.5%, 1회 10.1%, 2회 3.6%, 3회 이상 2.8%로 결과 되었다.

〈표 2-15〉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

체포횟수	빈도	백분율
0	845	83.5
1	102	10.1
2	36	3.6
3회 이상	29	2.8
합계	1012	100.0

5. 첫 체포 연령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대를 분석하였다. 10대가 73.6%로 가장 많았고, 20대 20.4%, 30대 4.1%, 40대 1.3%, 50대 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6〉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연령	빈도	백분율
10대	580	73.6
20대	161	20.4
30대	32	4.1
40대	10	1.3
50대	5	0.6
합계	788	100.0

조사대상자인 강도범죄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유형을 알아보았다. 다수가 미성년(70.4%)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성년이었던 경우는 29.6%로 결과 되었다.

〈표 2-17〉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 유형

연령유형	빈도	백분율
미성년	555	70.4
성년	233	29.6
합계	188	100.0

제2절 연쇄강도범죄 가해자의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성별 및 국적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쇄 강도범죄자에는 남성이 94.1%, 여성 5.9%로 나타났고, 비연쇄강도범죄자는 남성 91.1%, 여성 8.9%로 결과 되었다.

〈표 2-1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성별

성별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336	94.1	597	91.1	933	92.2
여성	21	5.9	58	8.9	79	7.8
전체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1) $\chi^2 = 2.837$ n.s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국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쇄 강도범죄자에는 5명의 귀화인 및 외국인이 있었고, 비연쇄강도범죄자에는 47명의 귀화인 및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58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표 2-1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국적

국적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내국인	352	98.6	608	92.8	960	94.9
귀화인 및 외국인	5	1.4	47	7.2	52	5.1
전체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1) $\chi^2 = 15.810^{***}$ ***p<.001

나. 연령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연령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쇄강도범죄는 10대(39.5%), 20대(29.7%), 30대(13.2%), 40대(12.0%), 50대(5.0%), 60대와 70세 이상이 각 각 0.3%의 순으로 결과 되었다. 비연쇄강도범죄는 10대(49.8%), 20대(22.0%), 30대(15.3%), 40대(9.8%), 50대(2.5%), 60대와 70세 이상이 각 각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연령대

연령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대	141	39.5	326	49.8	467	46.1
20대	106	29.7	144	22.0	250	24.7
30대	47	13.2	100	15.3	147	14.5
40대	43	12.0	64	9.8	107	10.6
50대	18	5.0	17	2.5	35	3.5
60대	1	0.3	2	0.3	3	0.3
70세 이상	1	0.3	2	0.3	3	0.3
전체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6) $\chi^2 = 16.684^*$ *p<.05

다. 교육정도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강도범죄자의 학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무학자의 비율은 연쇄강도범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비연쇄 0.3%로 나타났다. 중학교 재학의 경우 연쇄가 1.4%, 비연쇄 6.3%, 고등학교 재학이 연쇄 8.7%, 비연쇄 16.9%인 것으로 나타나,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은 연쇄 5.9%, 비연쇄 2.7%, 중학교 중퇴 및 졸업이 연쇄 21.3%, 비연쇄 16.7%,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의 경우 연쇄 47.3%, 비연쇄 42.0%,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 연쇄 12.0%, 비연쇄 9.9%로 나타나,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교육정도

교육정도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무학	0.0	0.0	2	0.3	2	0.2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21	5.9	18	2.7	39	3.9
중학교 재학	5	1.4	41	6.3	46	4.5
중학교 중퇴 및 졸업	76	21.3	109	16.7	185	18.3
고등학교 재학	31	8.7	111	16.9	142	14.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69	47.3	275	42.0	444	43.9
대학교 재학 이상	43	12.0	65	9.9	108	10.7
알수없음	12	3.4	34	5.2	46	4.5
전체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7) $\chi^2 = 37.141^{***}$ ***p<.001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가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여부가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체장애가 있는 연쇄강도범죄자들은 3.3%, 비연쇄 2.6%, 정신장애의 경우 연쇄 9.2%, 비연쇄 6.1%로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2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장애유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없음	317	87.5	601	91.2	918	89.9
신체장애	12	3.3	17	2.6	29	2.8
정신장애(알콜 중독 등)	33	9.2	40	6.1	73	7.2
알수없음(해당없음)	0.0	0.0	1	0.1	1	0.1
합계	362	100.0	659	100.0	1,021	100.0

3. 범죄경력

가. 첫 체포 연령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첫 체포 연령대를 비교하였다. 20대 연쇄 16.9%, 비연쇄 22.8%, 30대 2.2%, 비연쇄 5.4%, 40대 연쇄 0.3%, 비연쇄 1.9%, 50대 이상 연쇄 0.3%, 비연쇄 0.9%로 나타나,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0대에 체포된 비율은 연쇄 80.3%, 비연쇄 69.0%로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연쇄강도범죄자의 대부분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범죄경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 단 한명을 제외한 12명의 면접자들이 10대에 이미 경찰에 체포된 경험을 1회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첫 체포 연령대

첫 체포 연령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대	257	80.3	323	69.0	580	73.6
20대	54	16.9	107	22.8	161	20.4
30대	7	2.2	25	5.4	32	4.1
40대	1	0.3	9	1.9	10	1.3
50대 이상	1	0.3	4	0.9	5	0.6
전체	320	100.0	468	100.0	788	100.0

(df=4) $\chi^2 = 16.052^*$ *p<.05

나. 총 전과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총 전과 횟수를 비교하였다. 전과 없음은 연쇄 21.0%, 비연쇄 44.9%로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전과 없음을 제외하고는 1범의 경우 연쇄 13.2%, 비연쇄 11.3%, 2~3범 연쇄 15.7%, 비연쇄 15.0%, 4~5범의 경우 연쇄 10.4%, 비연쇄 7.9%, 6~10범 연쇄 27.1%, 비연쇄 14.3%, 11범 이상 연쇄 12.6%, 비연쇄 6.6%로 나타나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2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총 전과

전과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75	21.0	294	44.9	369	36.5
1범	47	13.2	74	11.3	121	12.0
2~3범	56	15.7	98	15.0	154	15.2
4~5범	37	10.4	52	7.9	89	8.8
6~10범	97	27.1	94	14.3	191	18.9
11범 이상	45	12.6	43	6.6	88	8.6
합계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29) $\chi^2 = 95.904^{***}$ ***p<.001

다. 전과의 종류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전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절도범죄의 경우 연쇄 33.6%, 비연쇄 66.6%로 비연쇄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강도와 절도의 경합범죄의 경우 연쇄 40.2%, 비연쇄 1.2%로 연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범죄만의 경우 연쇄 11.1%, 비연쇄 0.6%로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기타범죄의 경우에는 연쇄 15.1%, 비연쇄 31.6%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2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총 전과

전과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도범죄	30	11.1	2	0.6	32	5.3
절도범죄	91	33.6	221	66.6	312	51.7
강도+절도범죄	109	40.2	4	1.2	113	18.7
기타범죄	41	15.1	105	31.6	146	24.3
합계	271	100.0	332	100.0	603	100.0

(df=3) $\chi^2 = 200.165^{***}$ ***p<.001

라. 이종전과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전과 횡수를 분석하였다. 이종전과 없음의 경우 연쇄 24.6%, 비연쇄 45.8%로 나타나 비연쇄의 비율이 높았으나, 1범의 경우 연쇄는 12.9%, 비연쇄 11.6%, 2~3범의 경우 연쇄 16.5%, 비연쇄 14.8%, 4~5범 연쇄 15.7%, 비연쇄 7.9%, 6~10범은 연쇄 20.2%, 비연쇄 14.0%, 11범 이상인 경우 연쇄 10.1%, 비연쇄 5.9%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2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전과

이종전과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종전과없음	88	24.6	300	45.8	388	38.3
1범	46	12.9	76	11.6	122	12.1
2~3범	59	16.5	97	14.8	156	15.4
4~5범	56	15.7	52	7.9	108	10.7
6~10범	72	20.2	92	14.0	164	16.2
11범 이상	36	10.1	38	5.9	74	7.3
합계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28) $\chi^2 = 75.522^{***}$ ***p<.001

마. 실행전과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실행전과 횟수를 살펴보았다. 실행전과 없음의 경우 연쇄가 65.5%, 비연쇄 87.2%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1범의 경우 연쇄 9.0%, 비연쇄 4.7%, 2~3범 연쇄 9.8%, 비연쇄 3.7%, 4~5범 연쇄 6.4%, 비연쇄 1.7%, 6~10범 연쇄 7.0%, 비연쇄 2.1%, 11범 이상인 경우에는 연쇄 2.3%, 비연쇄 0.6%로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실행전과

실행 전과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실행전과없음	234	65.5	571	87.2	805	79.5
1범	32	9.0	31	4.7	63	6.2
2~3범	35	9.8	24	3.7	59	5.8
4~5범	23	6.4	11	1.7	34	3.4
6~10범	25	7.0	14	2.1	39	3.9
11범 이상	8	2.3	4	0.6	12	1.2
합계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16) $\chi^2 = 83.235^{***}$ ***p<.001

바. 전과처분결과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전과처분결과를 분석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연쇄가 45.8%, 비연쇄 53.7%, 기타처분의 경우 연쇄 11.8%, 비연쇄 25.0%로 비연쇄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징역의 경우 연쇄 21.4%, 비연쇄 12.9%, 징역과 소년보호처분을 함께 받은 경우 연쇄 21.0%, 비연쇄 8.4%로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4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표 2-2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전과처분결과

처분결과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58	21.4	43	12.9	101	16.7
소년보호처분	124	45.8	178	53.7	302	50.1
징역+소년보호처분	57	21.0	28	8.4	85	14.1
기타	32	11.8	83	25.0	115	19.1
합계	271	100.0	332	100.0	603	100.0

(df=3) $\chi^2 = 38.619^{***}$ ***p<.001

사. 강도범죄 체포횟수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 체포횟수의 경우 1회에서는 연쇄 24.9%, 비연쇄 2.0%, 2회의 경우 연쇄 9.0%, 비연쇄 0.5%, 3회 연쇄 4.5%, 비연쇄 0.2%, 5회 연쇄 0.6%, 비연쇄 0.0%, 6회 이상 연쇄 0.2%, 비연쇄 0.0%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체포횟수가 0인 경우 연쇄 58.3%, 비연쇄 97.3%로 나타나 비연쇄가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2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 체포횟수

강도범죄 체포횟수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208	58.3	637	97.3	845	83.5
1	89	24.9	13	2.0	102	10.0
2	32	9.0	4	0.5	36	3.6
3	16	4.5	1	0.2	17	1.7
4	9	2.5	0.0	0.0	9	0.9
5	2	0.6	0.0	0.0	2	0.2
6회 이상	1	0.2	0.0	0.0	1	0.1
합계	357	100.0	655	100.0	1012	100.0

(df=6) $\chi^2 = 255.877^{***}$ ***p<.001

제3절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 피해자수와 사건의 특성

가. 피해자수

연쇄강도범죄자들이 저지른 강도범죄의 피해자수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한 명인 연쇄강도범죄가 52.6%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한 명씩인 연쇄강도범죄가 28.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다수인 연쇄강도범죄가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연쇄에서도 가해자 다수, 피해자 일인인 경우가 52.3%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일인인 경우가 24.0%, 가해자 다수에 피해자 다수인 경우가 19.1%로 뒤를 이었다.

〈표 2-3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수

피해자수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가해자 피해자 일인	302	28.9	160	24.0	462	27.0
가해자 다수, 피해자 일인	550	52.6	348	52.3	898	52.5
가해자 일인, 피해자 다수	30	2.9	22	3.3	52	3.0
가해자 다수, 피해자 다수	153	14.5	127	19.1	280	16.4
기타	1	0.1	0.0	0.0	1	0.1
알 수 없음(해당없음)	10	1.0	9	1.3	19	1.0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5) $\chi^2 = 9.925$ n.s.

나. 사건특성

사건의 특성이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강도상해 관련인 경우 연쇄강도범죄자 26.7%, 비연쇄강도범죄자 41.7%로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준강도관련인 경우도 연쇄 1.5%, 비연쇄 5.7%로 비연쇄가 높았고, 인질강도관련도 연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비연쇄 0.3%로 비연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의 경우 연쇄가 17.3%, 비연쇄 9.6%로 연쇄가 훨씬 높았고, 특수강도관련의 경우 연쇄 40.2%, 비연쇄 36%, 강도살인의 경우 연쇄 3.4%, 비연쇄 0.6%, 강도강간의 경우 연쇄 1.3%, 비연쇄 0.7%, 성폭력범죄특례법관련의 경우 연쇄 6.7%, 비연쇄 4.4%, 특가법관련의 경우 연쇄 2.3%, 비연쇄 0.4%, 방조의 경우 연쇄 0.7%, 비연쇄 0.6%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죄명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	106	17.3	66	9.6	172	13.3
특수강도관련	247	40.2	246	36.0	493	38.0
준강도관련	9	1.5	39	5.7	48	3.7
인질강도관련	0.0	0.0	2	0.3	2	0.2
강도상해관련	164	26.7	285	41.7	449	34.6
강도살인관련	21	3.4	4	0.6	25	1.9
강도강간관련	8	1.3	5	0.7	13	1.0
성폭력범죄특례법관련	41	6.7	30	4.4	71	5.5
특가법관련	14	2.3	3	0.4	17	1.3
방조	4	0.7	4	0.6	8	0.6
합계	614	100.0	684	100.0	1298	100.0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를 살펴보았다. 경합이 아닌 경우 연쇄 17.1%, 비연쇄 50.5%로 비연쇄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이중경합 또한 연쇄 26.8%, 비연쇄 42.8%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종경합의 경우 연쇄 19.9%, 비연쇄 3.6%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고, 동종과 이중이 경합된 사건의 경우 연쇄 36.2%, 비연쇄 3.1%로 연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3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경합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합아님	69	17.1	322	50.5	391	37.6
동종경합	80	19.9	23	3.6	103	9.9
이종경합	108	26.8	273	42.8	381	36.6
동종+이종경합	146	36.2	20	3.1	166	15.9
합계	403	100.0	638	100.0	1041	100.0

(df=3) $\chi^2 = 325.903^{***}$ ***p<.001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경합 죄명을 살펴보았다. 재산범죄의 경우 연쇄 13.8%, 비연쇄 8.6%,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연쇄 35.75, 비연쇄 32.3%, 성범죄 관련의 경우 연쇄 8.4%, 비연쇄 6.7%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행범죄 관련의 경우 연쇄 21.2%, 비연쇄 31.4%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고, 기타범죄 역시 연쇄 20.9%, 비연쇄 21.0%로 나타나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3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이종경합

이종경합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산범죄(사기, 횡령, 점유이탈등)	58	13.8	37	8.6	95	11.1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150	35.7	140	32.3	290	34.0
폭행범죄 관련	89	21.2	136	31.4	225	26.4
성범죄 관련	35	8.4	29	6.7	64	7.5
기타범죄	88	20.9	91	21.0	179	21.0
합계	420	100.0	433	100.0	853	100.0

2. 체포단서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체포단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CCTV(연쇄 16.0%, 비연쇄 15.4%), DNA 증거(연쇄 6.75%, 3.0%), 지문과 족문

68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연쇄 4.2%, 비연쇄 1.9%), 탐문과 신문 및 검문(연쇄 27.1%, 비연쇄 21.9%),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연쇄 1.0%, 비연쇄 0.8%), 기타(연쇄 2.4%, 비연쇄 2.0%)의 경우에는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비연쇄강도범죄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의 인물이 신고(연쇄 7.5%, 비연쇄 12.3%), 현행범 체포(연쇄 4.2%, 비연쇄 8.6%), 자수(연쇄 0.7%, 비연쇄 1.6%), 전자발찌 위치추적(연쇄 0%, 비연쇄 0.1%) 역시 비연쇄의 비율이 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체포단서

체포단서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자가 신고	639	28.9	448	32.4	1087	30.2
제3의 인물이 신고	166	7.5	170	12.3	336	9.3
CCTV	355	16.0	214	15.4	569	15.8
DNA증거(정액, 혈흔 등)	148	6.7	42	3.0	190	5.3
지문, 족문	93	4.2	26	1.9	119	3.3
탐문, 신문(여죄추궁), 검문(전과자 조사 등)	600	27.1	303	21.9	903	25.1
현행범체포	92	4.2	119	8.6	211	5.9
자수	16	0.7	22	1.6	38	1.1
전자발찌 위치추적	0.0	0.0	1	0.1	1	0.1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	23	1.0	11	0.8	34	0.9
기타	54	2.4	28	2.0	82	2.3
알수없음	28	1.3	0.0	0.0	28	0.7
합계	2214	100.0	1384	100.0	3598	100.0

3. 범행내용의 특성

가. 연쇄강도범죄사건의 발생시간과 계절

강도범죄가 발생한 시간을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라 분석하였다. 오전(연쇄 13.4%, 비연쇄 12.3%), 밤(연쇄 28.4%, 비연쇄 23.4%)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새벽(연쇄 43.9%, 비연쇄 48.0%), 오후(연쇄

14.3%, 비연쇄 16.3%)의 경우는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2-3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체포단서

사건발생 시간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새벽(00시 이상 6시 미만)	450	43.9	316	48.0	766	45.5
오전(6시 이상 12시 미만)	137	13.4	81	12.3	218	13.0
오후(12시 이상 18시 미만)	147	14.3	107	16.3	254	15.1
밤(18시 이상 24시 미만)	291	28.4	154	23.4	445	26.4
합계	1025	100.0	658	100.0	1683	100.0

(df=3) $\chi^2 = 6.587$ n.s.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라 사건발생의 계절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여름(연쇄 23.5%, 비연쇄 20.3%), 겨울(연쇄 29.4%, 비연쇄 26.9%)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봄(연쇄 28.6%, 비연쇄 29.4%), 가을(연쇄 18.5%, 비연쇄 23.4%)은 연쇄보다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사건발생 시간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봄(3월~5월)	298	28.6	196	29.4	494	28.9
여름(6월~8월)	245	23.5	135	20.3	380	22.2
가을(9월~11월)	193	18.5	156	23.4	349	20.4
겨울(12월~2월)	307	29.4	179	26.9	486	28.5
합계	1043	100.0	666	100.0	1709	100.0

(df=3) $\chi^2 = 7.750$ n.s.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

강도범죄연쇄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음주상태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음주를 안 한 경우가 연쇄 80.7%, 비연쇄 70.1%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연쇄 7.0%, 비연쇄 7.8%), 약간 취함(연쇄 5.0%, 비연쇄 14.1%), 만취(연쇄 2.1%, 비연쇄 7.1%)로 나타나 비연쇄의 비율이 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전혀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음주를 해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가장 많이 저지르긴 했지만, 약간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고, 연쇄보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많은 것에 비해 비연쇄의 경우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들이 다소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표 2-3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가해자 음주상태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주안함	845	80.7	467	70.1	1312	76.6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73	7.0	52	7.8	125	7.3
약간취함	52	5.0	94	14.1	146	8.5
만취	22	2.1	47	7.1	69	4.1
알 수 없음	54	5.2	6	0.9	60	3.5
전체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4) $\chi^2 = 92.169^{***}$ ***p<.001

강도범죄를 저지를 당시 약물을 복용한 경우는 연쇄에서는 10건, 비연쇄에서는 4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여부

가해자 약물복용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용함	10	1.0	4	0.6	14	0.8
복용안함	1001	99.0	658	99.4	1659	99.2
전체	1011	100.0	662	100.0	1673	100.0

(df=1) $\chi^2 = 0.714$ n.s.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분석하였다. 음주안함(연쇄 84.0%, 비연쇄 80.8%),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연쇄 4.9%, 비연쇄 3.7%)은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높았다. 반면에 약간취함(연쇄 2.2%, 비연쇄 5.9%), 만취(연쇄 3.2%, 비연쇄 8.7%)에서는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3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피해자 음주상태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음주안함	879	84.0	538	80.8	1417	82.8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51	4.9	25	3.7	76	4.4
약간취함	23	2.2	39	5.9	62	3.6
만취	33	3.2	58	8.7	91	5.3
알 수 없음	60	5.7	6	0.9	66	3.9
전체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4) $\chi^2 = 64.991^{***}$ ***p<.001

강도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한 경우는 연쇄에서는 2건, 비연쇄에서는 5건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여부

피해자 약물복용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용함	2	0.2	5	0.8	7	0.4
복용안함	1000	99.8	655	99.2	1655	99.6
전체	1002	100.0	660	100.0	1662	100.0

(df=1) $\chi^2 = 2.954$ n.s.

다.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

강도범죄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이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택침입(연쇄 13.2%, 비연쇄 11.5%), 기다렸다가 덮치기(연쇄 8.5%, 비연쇄 6.1%), 음주 등 놀이로 유인(연쇄 6.1%, 비연쇄 3.1%), 기만(연쇄 25.7%, 비연쇄 19.4%), 망보기(연쇄 1.4%, 비연쇄 0.9%)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연쇄 12.4%, 비연쇄 16.9%), 끌고 가서 범행(연쇄 7.3%, 비연쇄 12.4%), 위협(연쇄 20.5%, 비연쇄 22.8%), 기타(연쇄 2.0%, 비연쇄 4.7%)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를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

강도범죄 접근방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204	12.4	162	16.9	366	14.0
가택침입	218	13.2	110	11.5	328	12.6
끌고 가서 범행	120	7.3	119	12.4	239	9.2
위협	339	20.5	218	22.8	557	21.4
기다렸다가 덮치기	140	8.5	58	6.1	198	7.6
음주 등 놀이로 유인	100	6.1	30	3.1	130	5.0
기만	424	25.7	186	19.4	610	23.4
망보기	23	1.4	9	0.9	32	1.2
기타	33	2.0	45	4.7	78	3.0
알 수 없음(해당없음)	50	3.0	20	2.1	70	2.7
합계	1651	100.0	957	100.0	2608	100.0

‘기만’은 피해자를 속여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연쇄강도 범행에서는 기만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높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속여서 접근하거나 손님으로 가장하여 상점에 침입하여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 등이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에서도 3명의 대상자들이 피해자를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중 사례 2와 사례 3은 공범관계였다. 이들 이외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공범이 더 있었는데, 총 3건의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남성들을 미리 물색하고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기만하여 모텔로 끌어들인다.

Q) 피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험박 쉽게 하려고 직업은 미리 알아보고, 대부분 회사원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은 보도방 일을 하며, 몇 번 왔던 손님 중 1명이 피해자였고, 그러다가 꼬리가 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등록번호 도용해서 휴대전화 개통을 했죠, 인터넷 같은거 통해서 정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후 무작위로 채팅 어플 같은거 해서 뭐, 편톡, 질톡 그런거 깔아요. 그래서 피해 대상 물색을 했죠. 그게 2번째였고, 3번째가 대출 피해자였죠. (사례2)

사례 11의 경우는 공범인 여성이 남성의 사진을 미리 찍어서 공범 남성들의 휴대폰으로 보내면 상대방 남성이 제압하기 쉬운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제압하기 쉬운 경우만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저희는 마르고 체구 작은 사람만 골라서 했어요. 약속장소를 강남역에서 만나자 해서 나오잖아요. 여자애가 가서 얘기를 해보고 체구를 보고 모텔에 들어가면 여자애가 남자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몰래 사진을 보내줘요. 그럼 판단을 해요. 적당하지 않으면 남자가 샤워할 때 여자애가 그냥 나와버려요. (사례 11)

사례 4와 사례 5의 경우도 범행이 노상에서 이루어져 노상강도로 분류되어 있으나 범행을 위한 접근방법은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핸드폰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보시면 대포폰 같은 핸드폰을 싸게 사서 다시 파는 것 있잖아요. 택시기사 아저씨들한테 손흔들어서 주운 핸드폰 있으면 팔아라... 이런일을 원래 알던 동네 동생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강남구 개포동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그게 끝물이었어요. 끝물이니깐 굳이 사람들에게 돈주고 살 필요가 있겠냐 이래서 중고나라에 저희가 글을 게재했어요. 스마트폰 분실폰 매입한다고.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가 와서 판매하러 오면 차에 타서 거래하자고 그래서 차에 타면 저희는 추궁을 하죠. 추궁하면 그 사람들이 흠뻑다 주웠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희가 때리고 하니깐 강도가 되더라고요. 집 들어가서 돈 뺏고 때리고 그런 강도가 아니었는데.

(중략)

핸드폰 산다고 하면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전화 오는 시간대가 저희가 활동하는 시간대니까 편하죠. 또 이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쉽고, 신고도 안들어오고, 제일 쉽고 적합했어요. (사례 4)

라.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가해자와 피해자간 상호작용이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과 같은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강도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연쇄 58.3%, 비연쇄 49.1%로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고, 함께 대화중이었던 경우도 연쇄 24.9%, 비연쇄 21.9%로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함께 음주(연쇄 1.0%, 비연쇄 3.5%), 함께 식사(0.4%, 비연쇄 1.2%), 함께 놀이(연쇄 0.9%, 비연쇄 3.1%), 언어적으로 싸움(연쇄 2.9%, 비연쇄 12.0%), 물리적으로 싸움(연쇄 1.0%, 비연쇄 5.4%)은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작용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4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사건직전 상호작용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별다른 상호작용 없음(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633	58.3	379	49.1	1012	65.0
함께 음주	11	1.0	27	3.5	38	2.4
함께 식사	4	0.4	9	1.2	13	0.8
함께 대화	270	24.9	169	21.9	139	8.9
함께 놀이(영화관람, 놀이공원 등)	10	0.9	24	3.1	34	2.2
언어적으로 싸움	31	2.9	93	12.0	124	8.0
물리적으로 싸움	11	1.0	42	5.4	53	3.4
알 수 없음	115	10.6	29	3.8	144	9.3
합계	1085	100.0	772	100.0	1557	100.0

마. 강도범죄의 수법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을 보면 침입강도(연쇄 48.0%, 비연쇄 35.4%), 성매매 유인(연쇄 10.5%, 비연쇄 1.2%),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연쇄 4.4%, 비연쇄 4.0%)의 경우 연쇄가 비연쇄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노상강도(연쇄 31.2%, 비연쇄 42.2%), 인질강도(연쇄 1.0%, 비연쇄 3.3%), 기타강도(연쇄 4.3%, 비연쇄 11.9%)는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침입강도나 유인해서 강도를 저지르는 것처럼 주로 계획적인 범행을 선호하는 반면, 노상강도와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행의 경우 비연쇄범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법임을 알 수 있다.

〈표 2-4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강도범죄 수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침입강도	502	48.0	236	35.4	738	43.1
노상강도	326	31.2	281	42.2	607	35.5
인질강도	10	1.0	22	3.3	32	1.9
성매매 유인	110	10.5	8	1.2	118	6.9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	46	4.4	27	4.0	73	4.3
기타강도	45	4.3	79	11.9	124	7.2
알수없음	7	0.7	13	2.0	20	1.2
합계	1,046	100.0	666	100	1712	100.0

(df=6) $\chi^2 = 130.008^{***}$ ***p<.001

성매매로 유인하는 경우, 공범들도 많고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이므로 성공률도 높다. 사례 2와 사례 3이 함께 저지른 범행의 경우, 유부남인 남성들을 협박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연쇄범들에 비해 높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하고 피해자가 만난 후에 모텔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모텔의 다른 방을 잡아 공범들하고 대기를 하죠. 제일 좋은 건 한 층에 방을 잡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층에 잡기도 하죠.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 연락을 하면 카운터인척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요. 보통 성매매 여성이 문을 열어두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문 두드리면 잘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자랑 투숙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면서 들어가요. (사례2)

Q) 아, 조사하는 것처럼 들어 가나보죠?

(웃으면서) 일종의 역할극 같은걸 해요. 우리가 오빠인 것처럼 하고, 처음에는 말로만 해서도 돈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매매 여성의 형제인 척 연기를 하죠. 근데 돈 이야기를 꺼내면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돈을 안주려고 해요. 그러면 뭐 폭력을 사용하게 되죠.(피식 웃으며) 아, 근데 처음 피해자는 진짜 믿더라고요. (사례 2)

Q)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사건은, 13년도예요. 하남시예요. 강릉에서 계속 지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 친구들이 소년원 갔다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이 고1때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알고 와서 그때 처음 여자애들을 데리고 (성매매를) 했었어요. 아는 여자애들을 데리고 오거나 가출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렇게 돈을 벌다가, 좀 오래 했었어요 그거를. 알고 지내고 있던 애들도 있고, 건너 건너 알던 애들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첫 번째 사건은 친구가 큰돈이 필요했는데, 개는 대학도 붙고 자기할건 다 했거든요. 등록금도 필요하고, 낙태비용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여자애들을 이용해 먹으면 큰돈을 벌수 있겠다 싶어서. 얘기를 듣다가 처음 해버린 거예요. 처음 했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다보니까 걸렸어요.

(중략)

대기하다가 문따고 들어가서 연기하는 거죠. 내가 이 여자애 오빠데 왜이러냐고.

가출한애라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하니깐 웬만한 피해남자를 고를때도 유부남으로 골랐거든요(협박하기 쉬워서). 채팅으로 물어서. 그게 딱 조건이 맞으면 만나서 모텔 들어가고 거기서 성관계가 끝나면 남자애들이 들어가서 협박하는 거죠. (사례 3)

침입강도의 경우도 성공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강도의 경우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며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인 경우, 피해자를 제압하기도 쉬워 많은 연쇄강도범죄자들이 선호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사례 1과 사례12는 침입강도 공범이었다. 이들은 모두 2건의 강도를 저지른 후 체포되었는데, 사전에 돈이 많아 보이는 피해자를 물색후 그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돈을 뺏거나 끌고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티브이에 ****에 나왔던 출연자인데, 역대 자산가로 나왔었어요. 티브이에 무슨 아파트 몇 호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다음 로드뷰로 치니까 아파트 나오고, 어차피 제가 차장사를 해가지고 다 대포차 아닙니까? 차를 싹 다 갈았죠. 그래서 심심풀이로 맞나 안 맞나 보러 가봤죠. 여자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주차장 가보니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해서 방송에 나온 게 맞구나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새벽에 거기 앞에서 기다렸죠. 맨 처음에는 세 명이서 기다리다가..보니까 혼자 생활하는 것 같더라구요.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이걸 해야 하나 싶더라구요. 집에서도 연락오고 회사에서도 연락오고....심리적 압박감이 드니까 나중에는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가자 이런 식으로 무대포식으로 되더라구요. 그런데 새벽2시쯤 차타고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파트 구조가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3층에 먼저 가 있었죠. 그래서 칼로 협박(제가)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돈 뭐 이런거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뒤졌는데, 금..뭐 이런건 안 나오고 이상한 해골 약세서리 같은 거만 나오고....방송에는 그 여자가 까페랑 고기집 등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술집마담인데 방송국 피디가 그 여자 술집에 자주 가는데 조작을 한거죠. 통장을 찾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 남은게 있어서 강원랜드로 태워서 갔죠. 강원랜드에서는 돈을 계속 뽑아도 의심 안 받을거 아닙니까? 아침에 도착했는데 근데 마침 휴식시간이라서, 그냥 일반 은행 가자고 했죠.

(중략)

그래서 은행가니까 은행직원들이 그 피해자를 다 알더라구요. 2,500 찾아서 저희가 나눠 가지고 그 여자는 주차장에 데려다 주고 저희는 왔죠. (사례 12)

노상강도의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 취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사례 8의 경우도 강도범행으로 도주 중에 만난 사람들과 같이 여러 차례 쫓치기를 하다가 붙잡혔다.

도망다니다가 친구 아는 형네서 살게 됐는데, 그 형이 애들을 소개해줬어요. 너처럼 가출한 애들이라고...그래서 가출한 그 친구들이 쫓치기 많이 해왔다고 그래서 같이 하게 어요.

Q) 주로 언제 했었나요?

새벽이었죠.

Q) 술 마시고 했었나요?

술은 안 마셨고, 술 취한 사람들을 목표로 했어요...

Q) 뭐, 술집 주변에서 주로 했었나요?

아니오. 주로 인적이 드문 골목길 같은 곳에서 범행을 했어요.

Q) 어떤 지역이었어요? 동네가...

범행 장소는 ○○동, ○○역 부근이었어요.

Q) 그럼 본인은 가담만 한거네요...

사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돈을 잘 번다고 해서...

Q) 범행도구 같은 거 미리 준비했나요? 피해자들 많이 때리거나 뭐 그랬나요?

범행도구는 준비 안했어요. 그냥 뒤에서 달려들어서 지갑 같은거 뺏고 그랬어요.

저는 때리지는 않고 주로 망을 보는 역할만 했어요.

Q) 특별히 대상을 정해서 접근했나요? 사전에 물색을 했다던가...

그런건 아니고 그냥 술 좀 많이 먹은 사람 따라가서 지갑 뺏고 그랬죠. (사례 8)

바. 강도행위의 폭행특성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특성을 살펴보면, 폭행 없음(연쇄 11.8%, 비연쇄 9.2%), 흉기로 위협하기(연쇄 16.5%, 비연쇄 10.7%), 흉기로 찌르기
와 때리기(연쇄 4.1%, 비연쇄 4.0%), 언어적 폭력(연쇄 23.6%, 비연쇄 22.9%), 결박(연쇄 6.7%, 비연쇄 3.9%)의 경우 연쇄가 비연쇄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연쇄 17.2%, 비연쇄 26.9%), 감금(연쇄 3.7%, 비연쇄 5.6%), 완력사용(연쇄 14.7%, 비연쇄 15.4%)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즉, 신체를 이용한 구타나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연쇄강도범죄보다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낮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체를 이용한 폭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표 2-4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특성

폭행 특성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폭행 없음	248	11.8	116	9.2	364	10.8
흉기로 위협하기	346	16.5	135	10.7	481	14.3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	361	17.2	339	26.9	700	20.9
흉기로 찌르기, 때리기	86	4.1	50	4.0	136	4.1
언어적 폭력(욕설, 협방 등)	494	23.6	289	22.9	783	23.3
결박(테이프, 끈 등)	140	6.7	49	3.9	189	5.6
감금	78	3.7	71	5.6	149	4.4
완력사용	308	14.7	194	15.4	502	15.0
기타	21	1.0	14	1.1	35	1.0
알 수 없음	11	0.5	5	0.4	16	0.5
합계	2093	100.0	1262	100.0	3355	100.0

사. 피해내용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알아보았다. 피해 없음(연쇄 8.15, 비연쇄 3.1%), 금전적 피해(연쇄 54.6%, 비연쇄 49.6%), 성적 피해(연쇄

6.4%, 비연쇄 3.1%)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신체적 피해(연쇄 29.1%, 비연쇄 42.0%), 정신적 피해(연쇄 1.0%, 비연쇄 1.9%)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피해내용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없음	126	8.1	35	3.1	161	6.0
신체적 피해	450	29.1	471	42.0	921	34.5
금전적 피해	844	54.6	556	49.6	1400	52.5
정신적 피해	16	1.0	21	1.9	37	1.4
성적 피해	99	6.4	35	3.1	134	5.0
기타	5	0.3	0.0	0.0	5	0.2
알 수 없음	7	0.5	4	0.4	11	0.4
합계	1547	100.0	1122	100.0	2669	100.0

아. 강도범죄를 위한 도구사용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연쇄강도범죄 30.2%, 비연쇄 44.5%로 비연쇄강도범죄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차량사용의 경우 연쇄 11.1%, 비연쇄 11.4%로 비연쇄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콘돔(연쇄 0.3%, 비연쇄 0.1%), 장갑 착용(6.6%, 비연쇄 4.7%), 흉기소지(연쇄 25.3%, 비연쇄 20.1%),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사용(연쇄 11.9%, 비연쇄 6.7%), 결박도구(연쇄 11.0%, 비연쇄 7.8%)에서는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쇄강도범죄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4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범행도구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도구를 사용 안함	470	30.2	381	44.5	851	35.3
콘돔	4	0.3	1	0.1	5	0.2
장갑 착용	103	6.6	40	4.7	143	5.9
흉기소지	394	25.3	172	20.1	566	23.5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사용	186	11.9	57	6.7	243	10.1
결박도구(끈, 테이프 등)	172	11.0	67	7.8	239	9.9
차량 사용	173	11.1	98	11.4	271	11.2
기타	51	3.3	35	4.1	86	3.6
알 수 없음(해당없음)	4	0.3	5	0.6	9	0.4
합계	1557	100.0	856	100.0	2413	100.0

자.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범행대상 사전 선정의 경우(연쇄 15.3%, 비연쇄 20.75)를 제외하고, 범행절차 사전계획(연쇄 35.2%, 비연쇄 27.2%), 범행장소 사전답사(연쇄 9.6%, 비연쇄 6.8%), 범행 전 도주계획(연쇄 6.2%, 비연쇄 3.1%), 범행 전 도구준비(연쇄 21.4%, 비연쇄 17.1%) 모두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서 저지르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2-4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범행 사전 계획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절차 사전 계획	671	35.2	304	27.2	975	32.2
범행대상 사전 선정	291	15.3	232	20.7	523	17.3
범행장소 사전 답사	184	9.6	76	6.8	260	8.6
범행 전 도주 계획	119	6.2	35	3.1	154	5.1
범행 전 도구 준비	409	21.4	191	17.1	600	19.8
알 수 없음(해당없음)	234	12.3	281	25.1	515	17.0
합계	1908	100.0	1119	100.0	3027	100.0

4. 연쇄강도범죄의 지리적 특성

가. 사건발생당시 연쇄강도범죄자의 거주지역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라 강도범죄를 저지를 당시 가해자의 거주지역을 분석하였다. 서울(연쇄 30.7%, 비연쇄 19.0%), 광주(연쇄 5.4%, 비연쇄 3.2%), 대전(연쇄 6.1%, 비연쇄 4.8%), 인천(연쇄 8.1%, 비연쇄 7.8%), 경기(연쇄 16.2%, 비연쇄 16.1%), 충남(연쇄 3.1%, 비연쇄 1.1%), 경북(연쇄 2.7%, 비연쇄 1.4%), 전남(연쇄 2.6%, 비연쇄 1.4%), 제주(연쇄 0.1%, 비연쇄 0%), 알 수 없음(연쇄 9.8%, 비연쇄 6.3%)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부산(연쇄 5.8%, 비연쇄 19.1%), 대구(연쇄 3.6%, 비연쇄 4.3%), 울산(연쇄 1.6%, 비연쇄 3.2%), 충북(연쇄 0.4%, 비연쇄 2.4%), 경남(연쇄 1.9%, 비연쇄 8.0%), 전북(연쇄 1.1%, 비연쇄 1.4%), 강원(연쇄 0%, 비연쇄 0.2%)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4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가해자 거주지역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321	30.7	127	19.0	448	26.2
부산	61	5.8	128	19.1	189	11.0
대구	38	3.6	29	4.3	67	3.9
광주	56	5.4	22	3.2	78	4.6
대전	64	6.1	32	4.8	96	5.6
인천	85	8.1	52	7.8	137	8.0
울산	17	1.6	21	3.2	38	2.2
경기	169	16.2	107	16.1	276	16.1
충남	32	3.1	7	1.1	39	2.3
충북	4	0.4	16	2.4	20	1.2
경남	20	1.9	53	8.0	73	4.3
경북	28	2.7	9	1.4	37	2.2
전남	27	2.6	9	1.4	36	2.1
전북	11	1.1	9	1.4	20	1.2
강원	0.0	0.0	1	0.2	1	0.1
제주	1	0.1	0.0	0.0	1	0.1
해외	8	0.8	2	0.3	10	0.5
알 수 없음	104	9.8	42	6.3	146	8.4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17) $\chi^2 = 169.803^{***}$ ***p<.00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거부정인 경우 연쇄 17.0%, 비연쇄 11.3%로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높았고, 주거가 일정하게 있는 경우 연쇄 83.0%, 비연쇄 88.7%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었다.

〈표 2-4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주거부정 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178	17.0	75	11.3	253	14.8
아니다	868	83.0	591	88.7	1459	85.2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나.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의 특성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를 알아보았다. 서울(연쇄 38.3%, 비연쇄 23.9%), 광주(연쇄 5.0%, 비연쇄 4.7%), 대전(연쇄 7.6%, 비연쇄 5.3%), 경기(연쇄 16.8%, 비연쇄 13.2%), 경북(연쇄 2.5%, 비연쇄 0.8%), 전남(연쇄 1.2%, 비연쇄 1.0%), 전북(연쇄 0.9%, 비연쇄 0.8%), 해외(연쇄 1.1%, 비연쇄 1.0%)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부산(연쇄 7.7%, 비연쇄 20.4%), 대구(연쇄 4.6%, 비연쇄 5.9%), 인천(연쇄 8.7%, 비연쇄 9.9%), 울산(연쇄 1.4%, 비연쇄 2.7%), 충남(연쇄 0.2%, 비연쇄 1.2%), 충북(연쇄 1.0%, 비연쇄 2.7%), 경남(연쇄 2.4%, 비연쇄 6.5%), 강원(연쇄 0.2%, 비연쇄 0%)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가해자 거주지역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401	38.3	159	23.9	560	32.7
부산	81	7.7	136	20.4	217	12.7
대구	48	4.6	39	5.9	87	5.1
광주	52	5.0	31	4.7	83	4.8
대전	80	7.6	35	5.3	115	6.7
인천	91	8.7	66	9.9	157	9.2
울산	15	1.4	18	2.7	33	1.9
경기	176	16.8	88	13.2	264	15.4
충남	2	0.2	8	1.2	10	0.6
충북	10	1.0	18	2.7	28	1.6
경남	25	2.4	43	6.5	68	4.0
경북	26	2.5	5	0.8	31	1.8
전남	13	1.2	7	1.0	20	1.2
전북	9	0.9	6	0.8	15	0.9
강원	2	0.2	0.0	0.0	2	0.1
제주	0.0	0.0	0.0	0.0	0.0	0.0
해외	11	1.1	7	1.0	18	1.1
알 수 없음	4	0.4	0.0	0.0	4	0.2
합계	1,046	100.0	666	100	1,712	100

(df=16) $\chi^2 = 132.296^{***}$ ***p<.001

다.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았다. 직장이나 거주지 부근은 아니지만 친숙한 장소(연쇄 30.1%, 비연쇄 27.0%),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는 경우(연쇄 10.0%, 비연쇄 9.2%),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연쇄 32.6%, 비연쇄 22.4%)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연쇄 19.3%, 비연쇄 33.6%), 직장 혹은 직장인근(0.4%, 비연쇄 3.0%)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5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202	19.3	224	33.6	426	24.9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인근	4	0.4	20	3.0	24	1.4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315	30.1	180	27.0	495	28.9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사전답사 제외)	105	10.0	61	9.2	166	9.7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사전답사 포함)	341	32.6	149	22.4	490	28.6
알 수 없음	79	7.6	32	4.8	111	6.5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5) $\chi^2 = 74.754^{***}$ ***p<.001

라.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건당시 처음 와 본 장소(연쇄 15.1%, 비연쇄 8.1%)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연쇄 35.0%, 비연쇄 36.4%), 직장 혹은 직장인근(연쇄 27.4%, 비연쇄 28.4%), 직장이나 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근한 장소(연쇄 10.7%, 비연쇄 17.2%),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연쇄 1.1%, 비연쇄 7.2%)의 경우 모두 비연쇄의 비율이 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368	35.0	244	36.4	612	35.6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인근	288	27.4	190	28.4	478	27.8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112	10.7	115	17.2	227	13.2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12	1.1	48	7.2	60	3.5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159	15.1	54	8.1	213	12.4
알 수 없음	111	10.6	19	2.8	130	7.6
합계	1050	100.0	670	100.0	1720	100.0

다. 가해자-피해자가 만난 장소와 사건발생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를 알아보았다. 10km 이상 - 50km 미만(연쇄 27.6%, 비연쇄 21.2%), 50km 이상 - 100km 미만(연쇄 3.6%, 비연쇄 2.3%), 100km 이상(연쇄 7.3%, 비연쇄 5.3%)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동일지역(연쇄 14.9%, 비연쇄 26.0%), 3km 미만(연쇄 8.8%, 비연쇄 15.5%), 3km 이상 - 10km 미만(연쇄 21.6%, 비연쇄 22.2%)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과 사건발생 장소가 비교적 근거리일수록 연쇄강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5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일지역(동일한 동 or 리)	156	14.9	173	26.0	329	19.2
3km 미만	92	8.8	103	15.5	195	11.4
3km 이상 - 10km 미만	226	21.6	148	22.2	374	21.8
10km 이상 - 50km 미만	289	27.6	141	21.2	430	25.1
50km 이상 - 100km 미만	38	3.6	15	2.3	53	3.1
100km 이상	76	7.3	35	5.3	111	6.5
알 수 없음	169	16.2	51	7.7	220	12.9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6) $\chi^2 = 76.548^{***}$ ***p<.00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동안함(연쇄 62.0%, 비연쇄 55.4%), 기타(연쇄 0.2%, 비연쇄 0.1%)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차량이용(연쇄 9.9%, 비연쇄 14.0%), 대중교통(0.4%, 비연쇄 1.9%), 도보(22.1%, 비연쇄 27.4%)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동안함(동일장소)	651	62.0	377	55.4	1028	59.4
차량이용	104	9.9	95	14.0	199	11.5
대중교통(버스,지하철)	4	0.4	13	1.9	17	1.0
도보	232	22.1	186	27.4	418	24.2
기타	2	0.2	1	0.1	3	0.2
알 수 없음	57	5.4	8	1.2	65	3.8
합계	1050	100.0	680	100.0	1730	100.0

바. 사건발생장소 유형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상업지역(연쇄 52.1%, 비연쇄 44.4%)의 경우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비연쇄강도범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인 주거지역(연쇄 44.4%, 비연쇄 47.3%), 야산 및 임야(연쇄 1.0%, 비연쇄 2.1%), 공장지역(연쇄 0.7%, 비연쇄 3.6%), 공원(연쇄 0.2%, 비연쇄 1.4%)에서는 비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사건발생장소 유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업지역	545	52.1	296	44.4	841	49.1
주거지역	464	44.4	315	47.3	779	45.5
야산 및 임야	10	1.0	14	2.1	24	1.4
공장지역	7	0.7	24	3.6	31	1.8
공원	2	0.2	9	1.4	11	0.6
기타	15	1.4	7	1.1	22	1.3
알 수 없음	3	0.3	1	0.2	4	0.2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집안(연쇄 21.5%, 비연쇄 16.1%),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연쇄 0.7%, 비연쇄 0.2%), 숙박업소(연쇄 18.9%, 비연쇄 3.8%), 편의점 및 슈퍼마켓(연쇄 10.9%, 비연쇄 7.5%), 금은방(연쇄 1.7%, 비연쇄 0.3%), 다방(연쇄 1.1%, 비연쇄 0.6%)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집근처(연쇄 3.5%, 비연쇄 4.7%), 사무실과 직장(연쇄 1.4%, 비연쇄 6.2%), 차량 내(연쇄 6.3%, 비연쇄 6.8%), 유흥업소(연쇄 3.0%, 비연쇄 5.9%), 비디오방(연쇄 0.4%, 비연쇄 0.8%), 길거리(연쇄 21.7%, 비연쇄 33.9%), 야산 등 한적한 곳(연쇄 2.2%, 비연쇄 4.2%), 공원 및 놀이터(연쇄 1.8%, 비연쇄 3.6%), 음식점(연쇄 0.8%, 비연쇄 1.4%), 기타상점(연쇄 0.5%, 비연쇄 1.5%)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때 기타상점의 경우 휴대폰 가게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를 볼 때, 집안이나 숙박업소, 편의점, 금은방과 같은 경우는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행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앞서 강도연쇄여부 분석 결과에서 침입강도나 성매매 유인 등이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도 상통하는 결과임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5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집안	225	21.5	107	16.1	332	19.4
집근처(계단, 엘리베이터 등)	37	3.5	31	4.7	68	4.0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	7	0.7	1	0.2	8	0.5
사무실, 직장	15	1.4	41	6.2	56	3.3
차량 내	66	6.3	45	6.8	111	6.5
유흥업소	31	3.0	39	5.9	70	4.1
숙박업소	198	18.9	25	3.8	223	13.0
비디오방(DVD방, PC방)	4	0.4	5	0.8	9	0.5
길거리	227	21.7	226	33.9	453	26.5
야산 등 한적한 곳	23	2.2	28	4.2	51	3.0
공원 및 놀이터	19	1.8	24	3.6	43	2.5
편의점 및 슈퍼마켓	114	10.9	50	7.5	164	9.6
금은방	18	1.7	2	0.3	20	1.2
음식점	8	0.8	9	1.4	17	1.0
기타상점	5	0.5	10	1.5	15	0.9
다방	11	1.1	4	0.6	15	0.9
기타	40	3.8	37	5.6	77	4.5
알 수 없음	3	0.3	2	0.3	5	0.3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의 집안 유형을 살펴보았다. 아파트(연쇄 14.2%, 비연쇄 14.0%), 다세대주택(연쇄 69.8%, 비연쇄 59.8%)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단독주택(연쇄 13.3%, 비연쇄 15.0%), 기타(연쇄 0.9%, 비연쇄 9.3%)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5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집안 유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파트	32	14.2	15	14.0	47	14.2
다세대주택	157	69.8	64	59.8	221	66.6
단독주택	30	13.3	16	15.0	46	13.9
기타	2	0.9	10	9.3	12	3.6
알 수 없음	4	1.8	2	1.9	6	1.8
합계	225	100.0	107	100.0	332	100.0

(df=4) $\chi^2 = 15.573^*$ *p<.05

5. 연쇄강도범죄 피해자의 특성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를 알아보았다. 여성 1명(연쇄 39.6%, 비연쇄 31.5%), 남성 1명 + 여성 1명(연쇄 3.0%, 비연쇄 2.4%), 여성 다수(연쇄 3.0%, 비연쇄 1.5%), 남녀 모두 다수(연쇄 0.5%, 비연쇄 0%)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1명(연쇄 41.3%, 비연쇄 45.5%), 남성 다수(연쇄 9.2%, 비연쇄 15.5%), 남성다수 + 여성 1명(연쇄 1.3%, 비연쇄 2.1%)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 1명 + 여성 다수의 경우 연쇄 0.5%, 비연쇄 0.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신체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주로 계획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이는 강도범죄의 연쇄여부에서도 보았듯이 침입강도나 성매매 유인과 같은 범죄가 연쇄강도범죄자들에 의해 더 많이 저질러지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

피해자 성별과 수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명	432	41.3	303	45.5	735	42.9
여성 1명	414	39.6	210	31.5	624	36.4
남성 1명 + 여성 1명	31	3.0	16	2.4	47	2.7
남성 다수	96	9.2	103	15.5	199	11.6
여성 다수	31	3.0	10	1.5	41	2.4
남성다수 + 여성 1명	14	1.3	14	2.1	28	1.6
남성 1명 + 여성 다수	5	0.5	3	0.5	8	0.5
남녀 모두 다수	5	0.5	0.0	0.0	5	0.3
알 수 없음	18	1.6	7	1.0	25	1.6
합계	1046	100	666	100.0	1712	100.0

(df=8) $\chi^2 = 32.729^{***}$ ***p<.00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연령을 알아보았다. 10세 미만(연쇄 0.5%, 비연쇄 0.4%), 20세 이상 30세 미만(연쇄 25.1%, 비연쇄 20.2%), 30세 이상 40세 미만(연쇄 20.6%, 비연쇄 12.4%)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세 이상 20세 미만(연쇄 17.9%, 비연쇄 24.8%), 40세 이상 50세 미만(연쇄 10.3%, 비연쇄 18.9%), 50세 이상 60세 미만(연쇄 12.3%, 비연쇄 14.3%), 60세 이상(연쇄 7.4%, 비연쇄 7.6%)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연령

피해자 연령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세 미만	6	0.5	3	0.4	9	0.5
10세 이상 20세 미만	197	17.9	178	24.8	375	20.6
20세 이상 30세 미만	276	25.1	145	20.2	421	23.1
30세 이상 40세 미만	227	20.6	89	12.4	316	17.4
40세 이상 50세 미만	113	10.3	136	18.9	249	13.7
50세 이상 60세 미만	135	12.3	103	14.3	238	13.1
60세 이상	81	7.4	55	7.6	136	7.5
알 수 없음	65	5.9	10	1.4	75	4.1
합계	1100	100.0	719	100.0	1819	100.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국적을 알아보았다. 내국인의 경우 연쇄 95.6%, 비연쇄 93.0%로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고, 귀화인 및 외국인의 경우 연쇄 1.3%, 비연쇄 6.1%로 비연쇄강도범죄의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6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 국적

피해자 국적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내국인	1000	95.6	620	93.0	1620	94.6
귀화인 및 외국인	14	1.3	41	6.1	55	3.2
알 수 없음	32	3.1	6	0.9	38	2.2
합계	1046	100.0	667	100.0	1713	100.0

나. 피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여부를 살펴보았다. 장애 없음(연쇄 93.6%, 비연쇄 96.3%), 신체장애(연쇄 0.6%, 비연쇄 1.0%), 정신장애(연쇄 0.7%, 비연쇄 1.3%), 기타(연쇄 0.1%, 비연쇄 0%)의 경우 모두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피해자 국적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없음	983	93.6	645	96.3	1628	94.7
신체장애	6	0.6	7	1.0	13	0.8
정신장애	7	0.7	9	1.3	16	0.9
기타	1	0.1	0.0	0.0	1	0.1
알 수 없음	53	5.0	9	1.3	62	3.6
합계	1050	100.0	670	100.0	1720	100.0

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연쇄 2.7%, 비연쇄 2.6%), 모르는 사람(연쇄 71.0%, 비연쇄 55.7%)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친인척(연쇄 0.1%, 비연쇄 0.3%), 서로 잘 아는 사이(연쇄 1.7%, 비연쇄 11.4%),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연쇄 1.9%, 비연쇄 8.1%)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연쇄 21.3%, 비연쇄 21.3%), 기타(연쇄 0.5%, 비연쇄 0.5%)로 연쇄와 비연쇄 모두 동일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면이 있는 관계일수록 연쇄강도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6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인척	1	0.1	2	0.3	3	0.2
서로 잘 아는 사이	18	1.7	76	11.4	94	5.5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	20	1.9	54	8.1	74	4.3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	28	2.7	17	2.6	45	2.6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223	21.3	142	21.3	365	21.3
모르는 사람	743	71.0	371	55.7	1114	65.1
기타	5	0.5	3	0.5	8	0.5
알 수 없음	8	0.8	1	0.2	9	0.5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7) $\chi^2 = 124.354^{***}$ ***p<.001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가.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의 혼인 및 자녀 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를 알아보았다. 동거자 있음의 경우 연쇄 61.6%, 비연쇄 75.2%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동거자가 없는 경우

연쇄 29.8%, 비연쇄 18.5%로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

가해자 동거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거자 있음	644	61.6	501	75.2	1145	66.9
동거자 없음	312	29.8	123	18.5	435	25.4
알 수 없음	90	8.6	42	6.3	132	7.7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2) $\chi^2 = 34.800^{***}$ ***p<.00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부모(연쇄 3.7%, 비연쇄 3.3%), 동료 및 친구(연쇄 11.2%, 비연쇄 6.3%), 애인(연쇄 6.1%, 비연쇄 4.8%)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자녀(연쇄 6.1%, 비연쇄 7.6%), 배우자(연쇄 3.6%, 비연쇄 7.7%)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연쇄와 비연쇄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2-6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

동거인 유형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	419	39.0	320	39.2	739	39.1
조부모	40	3.7	27	3.3	67	3.5
형제자매	299	27.8	228	27.9	527	27.9
자녀	66	6.1	62	7.6	128	6.8
배우자	39	3.6	63	7.7	102	5.4
동료 및 친구	120	11.2	51	6.3	171	9.0
애인	65	6.1	39	4.8	104	5.5
기타	25	2.3	24	2.9	49	2.6
알 수 없음	1	0.1	2	0.2	3	0.2
합계	1074	100.0	816	100.0	1890	100.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혼(연쇄 77.5%, 비연쇄 76.6%), 동거(연쇄 5.1%, 비연쇄 5.0%), 별거(연쇄 1.6%, 비연쇄 1.4%), 이혼(연쇄 5.9%, 비연쇄 3.8%)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았다. 반면 기혼(연쇄 5.3%, 비연쇄 9.0%), 사별(연쇄 0%, 비연쇄 0.2%)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5〉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

혼인상태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혼	811	77.5	510	76.6	1321	77.2
동거	53	5.1	33	5.0	86	5.0
기혼(초혼)	55	5.3	60	9.0	115	6.7
재혼이상	3	0.3	8	1.2	11	0.6
별거	17	1.6	9	1.4	26	1.5
이혼	62	5.9	25	3.8	87	5.1
사별	0.0	0.0	2	0.2	2	0.1
알 수 없음	45	4.3	19	2.8	64	3.8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7) $\chi^2 = 23.288^{**}$ ***p<.01

나.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의 직업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직업을 조사하였다. 기능관련종사자(연쇄 1.7%, 비연쇄 1.6%), 무직(연쇄 69.9%, 비연쇄 47.8%), 기타(연쇄 1.0%, 비연쇄 0.7%)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모두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자(연쇄 0.1%, 비연쇄 0.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연쇄 0.3%, 비연쇄 0.4%), 사무종사자(연쇄 1.0%, 비연쇄 1.6%), 서비스종사자(연쇄 1.8%, 비연쇄 7.0%), 판매종사자(연쇄 1.4%, 비연쇄 2.8%), 농림 및 어업종사자(연쇄 0.2%, 비연쇄 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연쇄 0.9%, 비연쇄 1.8%), 단순노무(연쇄 7.3%, 비연쇄 8.5%), 학생(연쇄 14.0%, 비연쇄 24.4%), 운송 및 운수업(연쇄 0.2%, 비연쇄 1.0%)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6〉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관리자	1	0.1	6	0.9	7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0.3	3	0.4	6	0.4
사무종사자	10	1.0	11	1.6	21	1.2
서비스 종사자	19	1.8	47	7.0	66	3.9
판매 종사자	15	1.4	19	2.8	34	2.0
농림, 어업 종사자	2	0.2	6	0.9	8	0.5
기능관련종사자	18	1.7	11	1.6	29	1.7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9	0.9	12	1.8	21	1.2
단순노무	76	7.3	57	8.5	133	7.8
무직	727	69.9	320	47.8	1047	61.3
학생	146	14.0	163	24.4	309	18.1
기타	10	1.0	5	0.7	15	0.9
미상	2	0.2	2	0.3	4	0.2
운송 및 운수업	2	0.2	7	1.0	9	0.5
합계	1040	100.0	669	100.0	1709	100.0

(df=7) $\chi^2 = 23.288^{**}$ **p<.01

다. 사건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알아보았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경우 연쇄가 3.5%, 비연쇄 1.5%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연쇄 95.3%, 비연쇄 98.2%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7〉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37	3.5	10	1.5	47	2.7
아니다	997	95.3	654	98.2	1651	96.4
알 수 없음	12	1.1	2	0.3	14	0.8
합계	1046	100.0	666	100.0	1712	100.0

(df=2) $\chi^2 = 10.063$ n.s.

7. 공범이 있는 연쇄강도범죄의 특성

가. 공범의 수와 가해자의 역할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유무를 살펴본 결과, 공범이 없는 경우 연쇄 31.0%, 비연쇄 27.8%로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공범이 있는 경우 연쇄 69.0%, 비연쇄 72.2%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8〉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의 유무

공범의 유무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음	324	31.0	185	27.8	509	29.7
있음	721	69.0	481	72.2	1202	70.3
합계	1045	100.0	666	100.0	1711	100.0

(df=1) $\chi^2 = 2.027$ n.s.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수를 보면, 1명인 경우 연쇄 26.2%, 비연쇄 21.2%, 4명인 경우 연쇄 18.7%, 비연쇄 13.6%, 5명-6명인 경우 연쇄 10.4%, 비연쇄 10.3%로 나타나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명인 경우 연쇄 21.7%, 비연쇄 26.4%, 3명인 경우 연쇄 19.8%, 비연쇄 22.4%, 7명 이상인 경우 연쇄 3.2%, 비연쇄 6.1%로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69〉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수

공범수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명	188	26.2	101	21.2	289	24.2
2명	156	21.7	126	26.4	282	23.6
3명	142	19.8	107	22.4	249	20.8
4명	134	18.7	65	13.6	199	16.7
5명 - 6명	75	10.4	49	10.3	124	10.4
7명 이상	23	3.2	29	6.1	52	4.6
합계	718	100.0	477	100.0	1195	100.0

(df=10) $\chi^2 = 56.412^{***}$ ***p<.00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주범인 경우 연쇄 18.4%, 비연쇄 17.3%, 공동정범인 경우 연쇄 67.0%, 비연쇄 66.1%로 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범인 경우는 연쇄 13.9%, 비연쇄 16.0%인 것으로 나타나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7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가해자 역할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범	133	18.4	83	17.3	216	18.0
중범	100	13.9	77	16.0	177	14.7
공동정범	483	67.0	318	66.1	801	66.6
알 수 없음	5	0.7	3	0.6	8	0.7
합계	721	100.0	481	100.0	1202	100.0

(df=3) $\chi^2 = 1.178$ n.s.

나. 공범 간의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교도소 친구(연쇄 13.2%, 비연쇄 0.4%), 애인 및 부부(연쇄 6.5%, 비연쇄 5.0%), 온라인으로 만남(연쇄 5.7%, 비연쇄 2.3%), 기타(연쇄 3.2%, 비연쇄 1.5%)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친구 및 선후배(연쇄 75.6%, 비연쇄 88.4%), 가족 및 친척(연쇄 2.1%, 비연쇄 5.6%), 동네사람(연쇄 0.1%, 비연쇄 1.0%), 직장동료 및 상사(연쇄 1.0%, 비연쇄 3.5%), 모르는 사람(연쇄 2.6%, 비연쇄 4.8%)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7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공범 간 관계

공범 간 관계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구, 선후배	545	75.6	425	88.4	970	80.7
가족, 친척	15	2.1	27	5.6	42	3.5
교도소 친구	95	13.2	2	0.4	97	8.1
동네사람	1	0.1	5	1.0	6	0.5
직장동료, 상사	7	1.0	17	3.5	24	2.0
애인, 부부	47	6.5	24	5.0	71	5.9
모르는 사람(처음 본 사람)	19	2.6	23	4.8	42	3.5
온라인으로 만남	41	5.7	11	2.3	52	4.3
기타	23	3.2	7	1.5	30	2.5
알 수 없음	27	3.7	3	0.6	30	2.5
합계	721	100.0	481	100.0	1202	100.0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기소여부를 살펴보았다. 조사를 할 때 불기소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제외하고는 조사하지 않았다. 기소(연쇄 96.1%, 비연쇄 85.6%),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연쇄 2.7%, 비연쇄 2.3%)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기소유예의 경우 연쇄 1.2%인 반면에 비연쇄 12.1%로 비연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2〉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기소여부

피해내용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소	390	96.1	557	85.6	947	89.6
기소유예	5	1.2	79	12.1	84	7.9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기소유예	11	2.7	15	2.3	26	2.5
합계	406	100.0	651	100.0	1057	100.0

(df=2) $\chi^2 = 40.652^{***}$ ***p<.001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판결종류를 조사하였다. 징역(연쇄 57.9%, 비연쇄 29.9%), 치료감호(연쇄 0.9%, 비연쇄 0.2%), 기타(연쇄 4.3%, 비연쇄 2.3%)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비연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벌금(연쇄 0.2%, 비연쇄 1.5%), 집행유예(연쇄 6.5%, 비연쇄 14.4%), 소년보호사건송치(연쇄 17.1%, 비연쇄 33.5%), 보호관찰(연쇄 4.1%, 비연쇄 7.4%), 사회봉사(연쇄 2.7%, 비연쇄 4.9%)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시설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사회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73〉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판결종류

판결종류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벌금	1	0.2	10	1.5	11	1.0
집행유예	29	6.5	94	14.4	123	11.2
징역	257	57.9	195	29.9	452	41.2
소년보호사건송치	76	17.1	219	33.5	295	26.9
보호관찰	18	4.1	48	7.4	66	6.0
치료감호	4	0.9	1	0.2	5	0.5
사회봉사	12	2.7	32	4.9	44	4.0
기타	19	4.3	15	2.3	34	3.1
알 수 없음	28	6.3	39	6.0	67	6.1
합계	444	100.0	653	100.0	1097	100.0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징역형량을 조사하였다. 1년 미만(연쇄 1.2%, 비연쇄 1.0%), 10년 이상(연쇄 21.8%, 비연쇄 6.2%), 무기징역(연쇄 0.8%, 비연쇄 0%)의 경우 연쇄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1년이상 3년 미만(연쇄 17.5%, 비연쇄 24.6%), 3년 이상(연쇄 58.4%, 비연쇄 67.7%)의 경우 비연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연쇄 강도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74〉 강도범죄 연쇄여부에 따른 징역형량

징역형량	강도범죄 연쇄여부				전체	
	연쇄		비연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3	1.2	2	1.0	5	1.1
1년 이상-3년 미만	45	17.5	48	24.6	93	20.6
3년 이상	150	58.4	132	67.7	282	62.4
10년 이상	56	21.8	12	6.2	68	15.1
무기징역	2	0.8	0.0	0.0	2	0.4
알 수 없음	1	0.3	1	0.5	2	0.4
합계	257	100.0	195	100.0	452	100.0

제4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자의 특성

1. 교육정도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라 가해자의 교육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령유형은 미성년과 성년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소년법 제1장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에 의거하여 미성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보았다. 중학교 재학(미성년 4.1%, 성년 0%), 중학교 중퇴 및 졸업(미성년 24.4%, 성년 19.7%), 고등학교 재학(미성년 24.4%, 성년 0.4%)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았다. 반면에 무학(미성년 0%, 성년 0.3%),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미성년 2.4%, 성년 7.7%),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미성년 39.8%, 성년 51.3%), 대학교 재학 이상(미성년 4.1%, 성년 16.2%)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7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교육정도

교육정도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무학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3	2.4	18	7.7	21	5.9
중학교 재학	5	4.1	0.0	0.0	5	1.4
중학교 중퇴 및 졸업	30	24.4	46	19.7	76	21.3
고등학교 재학	30	24.4	1	0.4	31	8.7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49	39.8	120	51.3	169	47.3
대학교 재학 이상	5	4.1	38	16.2	43	12.0
알 수 없음	1	0.8	11	4.7	12	3.4
합계	123	100.0	234	100.0	357	100.0

(df=6) $\chi^2 = 83.233^{***}$ *** $p < .001$

2.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라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미성년에서는 신체장애를 가진 자가 0%, 성년에서는 5.0%로 분석되었고, 정신장애의 경우 미성년 2.4%, 성년 12.6%로 결과 되었다.

〈표 2-7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없음	120	97.6	197	82.4	317	87.6
신체장애	0.0	0.0	12	5.0	12	3.3
정신장애(알콜 중독 등)	3	2.4	30	12.6	33	9.1
알 수 없음	0.0	0.0	0.0	0.0	0.0	0.0
합계	123	100.0	239	100.0	362	100.0

3. 범죄경력

가. 전과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총 전과를 살펴보았다. 전과없음(미성년 35.8%, 성년 13.2%), 1범(미성년 17.1%, 성년 11.1%), 2~3범(미성년 18.7%, 성년 14.1%)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4~5범(미성년 8.9%, 성년 11.1%), 6~10범(미성년 17.1%, 성년 32.5%), 11범 이상(미성년 2.4%, 성년 17.9%)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범죄경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표 2-7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총 전과

총 전과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44	35.8	31	13.2	75	21.0
1범	21	17.1	26	11.1	47	13.2
2~3범	23	18.7	33	14.1	56	15.7
4~5범	11	8.9	26	11.1	37	10.4
6~10범	21	17.1	76	32.5	97	27.2
11범 이상	3	2.4	42	17.9	45	12.6
합계	123	100.0	234	100.0	357	100.0

(df=26) $\chi^2 = 51.287^*$ *p<.05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전과죄명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강도범죄(미성년 5.5%, 성년 13.1%), 강도와 절도범죄(미성년 24.7%, 성년 46.0%)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도범죄(미성년 50.7%, 성년 27.3%), 기타범죄(미성년 19.2%, 성년 13.6%)의 경우는 미성년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어릴수록 강도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보다는 절도범죄를 더 많이 저지름을 알 수 있다.

〈표 2-7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전과죄명

전과죄명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도범죄	4	5.5	26	13.1	30	11.1
절도범죄	37	50.7	54	27.3	91	33.6
강도+절도범죄	18	24.7	91	46.0	109	40.2
기타범죄	14	19.2	27	13.6	41	15.1
합계	73	100.0	198	100.0	271	100.0

(df=3) $\chi^2 = 18.627^{***}$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처분결과를 알아보았다. 미성년 대부분(95.9%)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음을 알 수 있고, 미성년중 단지 1.4%가 징역+소년보호처분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성년의 경우 징역 29.3%, 소년보호처분 27.3%, 징역+소년

보호처분 28.3%로 나타났다. 성년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2-7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처분결과

처분결과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징역	0.0	0.0	58	29.3	58	21.4
소년보호처분	70	95.9	54	27.3	124	45.8
징역+소년보호처분	1	1.4	56	28.3	57	21.0
기타	2	2.7	30	15.2	32	11.8
합계	73	100.0	198	100.0	271	100.0

(df=3) $\chi^2 = 101.592^{***}$ ***p<.001

나. 동종전과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동종전과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과없음의 경우 미성년 82.1%, 성년 49.6%로 미성년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1범의 경우 미성년 15.4%에 비해 성년 31.2%로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고, 2~3범의 경우도 미성년 2.5%, 성년 16.7%로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4범 이상의 경우 미성년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성년의 경우 2.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전과 죄명에서 미성년의 경우 강도전과의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8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동종전과

동종전과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101	82.1	116	49.6	217	60.8
1범	19	15.4	73	31.2	92	25.8
2~3범	3	2.5	37	16.7	42	11.8
4범 이상	0.0	0.0	6	2.5	6	1.6
합계	123	100.0	234	100.0	357	100.0

(df=4) $\chi^2 = 39.476^{***}$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실행전과를 살펴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전과없음 96.7%, 성년의 경우 49.1%로 미성년의 경우 실행전과를 받은 경우가 희박함을 알 수 있었다. 1범(미성년 0.8%, 성년 13.2%), 2~3범(미성년 0.8%, 성년 14.5%), 4~5범(미성년 0%, 성년 9.8%), 6~10범(미성년 0.8%, 성년 10.3%), 11범 이상(미성년 0.8%, 성년 3.0%)의 경우 모두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8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실행전과

총 전과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119	96.7	115	49.1	234	65.5
1범	1	0.8	31	13.2	32	9.0
2~3범	1	0.8	34	14.5	35	9.8
4~5범	0.0	0.0	23	9.8	23	6.4
6~10범	1	0.8	24	10.3	25	7.0
11범 이상	1	0.8	7	3.0	8	2.2
합계	123	100.0	234	100.0	357	100.0

(df=14) $\chi^2 = 83.411^{***}$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중전과를 살펴보았다. 전과없음(미성년 37.4%, 성년 17.9%)과 1범(미성년 17.9%, 성년 10.3%), 2~3범(미성년 17.1%, 성년 16.2%)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4~5범(미성년 12.2%, 성년 17.5%) 6~10범(미성년 13.0%, 성년 23.9%), 11범 이상(미성년 2.4%, 성년 14.1%)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4범 이상 중누범자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8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중전과

총 전과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과없음	46	37.4	42	17.9	88	24.6
1범	22	17.9	24	10.3	46	12.9
2~3범	21	17.1	38	16.2	59	16.5
4~5범	15	12.2	41	17.5	56	15.7
6~10범	16	13.0	56	23.9	72	20.2
11범 이상	3	2.4	33	14.1	36	10.1
합계	123	100.0	234	100.0	357	100.0

(df=25) $\chi^2 = 37.237$ n.s.

제5절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에 따른 강도범죄의 사건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수강도관련(미성년 48.9%, 성년 36.4%), 강도상해관련(미성년 33.5%, 성년 23.7%), 방조(미성년 2.1%, 성년 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았다. 반면,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미성년 12.2%, 성년 19.5%), 준강도관련(미성년 0.5%, 성년 1.9%), 강도살인관련(미성년 2.7%, 성년 3.8%), 강도강간관련(미성년 0%, 성년 1.9%), 성폭력범죄특별법관련(미성년 0%, 성년 9.6%), 특가법관련(미성년 0%, 성년 3.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죄명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	23	12.2	83	19.5	106	17.3
특수강도관련	92	48.9	155	36.4	247	40.2
준강도관련	1	0.5	8	1.9	9	1.5
강도상해관련	63	33.5	101	23.7	164	26.7
강도살인관련	5	2.7	16	3.8	21	3.4
강도강간관련	0.0	0.0	8	1.9	8	1.3
성폭력범죄특별법관련	0.0	0.0	41	9.6	41	6.7
특가법관련	0.0	0.0	14	3.3	14	2.3
방조	4	2.1	0	0.0	4	0.7
합계	188	100.0	426	100.0	614	100.0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를 살펴보았다. 경합아님(미성년 9.9%, 성년 20.6%)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종경합(미성년 22.9%, 성년 18.4%), 이종경합(미성년 29.0%, 성년 25.7%), 동종+이종경합(미성년 38.2%, 성년 35.3%)의 경우 모두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경합여부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합아님	13	9.9	56	20.6	69	17.1
동종경합	30	22.9	50	18.4	80	19.9
이종경합	38	29.0	70	25.7	108	26.8
동종+이종경합	50	38.2	96	35.3	146	36.2
합계	131	100.0	272	100.0	403	100.0

(df=3) $\chi^2 = 7.337$ n.s.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경합 죄명을 살펴보았다. 폭행범죄 관련의 경우 미성년 33.1%, 성년 15.3%로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재산범죄(미성년 12.9%, 성년 14.2%),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미성년 31.7%, 성년 37.7%), 성범죄 관련(미성년 2.2%, 성년 11.4%), 기타범죄(미성년 20.1%, 성년 21.4%)의 경우 모두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미성년이 폭행관련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의 경우 성인범과 달리 범인성이 고착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소년범의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미성년의 경우 범행경험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폭력적인 수단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표 2-8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경합

이종경합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산범죄(사기, 횡령, 점유이탈등)	18	12.9	40	14.2	58	13.8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44	31.7	106	37.7	150	35.7
폭행범죄 관련	46	33.1	43	15.3	89	21.2
성범죄 관련	3	2.2	32	11.4	35	8.3
기타 범죄	28	20.1	60	21.4	88	21.0
합계	139	100.0	281	100.0	420	100.0

2. 체포단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를 조사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미성년 30.6%, 성년 28.1%), 제3의 인물이 신고(미성년 12.5%, 성년 5.2%), 탐문·신문·검문(미성년 28.1%, 성년 26.6%), 현행범체포(미성년 4.7%, 성년 3.9%), 기타(미성년 3.4%, 성년 2.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CCTV(미성년 14.6%, 성년 16.7%), DNA증거(미성년 3.6%, 성년 8.0%), 지문 및 족문(미성년 1.5%, 성년 5.4%), 자수(미성년 0.6%, 성년 0.8%),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미성년 0.4%, 성년 1.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8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

체포단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자가 신고	210	30.6	429	28.1	639	28.9
제3의 인물이 신고	86	12.5	80	5.2	166	7.5
CCTV	100	14.6	255	16.7	355	16.0
DNA증거(정액, 혈흔 등)	25	3.6	123	8.0	148	6.7
지문, 족문	10	1.5	83	5.4	93	4.2
탐문, 신문(여죄추궁), 검문(전과자 조사 등)	193	28.1	407	26.6	600	27.1
현행범체포	32	4.7	60	3.9	92	4.2
자수	4	0.6	12	0.8	16	0.7
기타	23	3.4	31	2.0	54	2.4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	3	0.4	20	1.3	23	1.0
알 수 없음	0.0	0.0	28	1.8	28	1.3
합계	686	100.0	1528	100.0	2214	100.0

3. 범행내용의 특성

가. 연쇄강도범죄사건의 발생시간과 계절

연쇄강도범죄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오전 15.6%, 밤 30.1%로 성년 오전 12.1%, 밤 27.5% 보다 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년의 경우 새벽 45.2%, 오후 15.2%로 같은 시간대 미성년이 각각 41.5%, 12.8%인 것에 비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

사건발생 시간대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새벽(00시 이상 6시 미만)	152	41.5	298	45.2	450	43.9
오전(6시 이상 12시 미만)	57	15.6	80	12.1	137	13.4
오후(12시 이상 18시 미만)	47	12.8	100	15.2	147	14.3
밤(18시 이상 24시 미만)	110	30.1	181	27.5	291	28.4
합계	366	100.0	659	100.0	1025	100.0

(df=3) $\chi^2 = 4.255$ n.s.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봄과 여름의 경우 미성년 35.5%, 26.5%로 같은 계절에 성년이 각각 24.6%, 21.8%인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을(미성년 13.3%, 성년 21.5%), 겨울(미성년 24.7%, 성년 32.1%)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사건발생 계절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봄	134	35.5	164	24.6	298	28.6
여름	100	26.5	145	21.8	245	23.5
가을	50	13.3	143	21.5	193	18.5
겨울	93	24.7	214	32.1	307	29.4
합계	377	100.0	666	100.0	1043	100.0

(df=3) $\chi^2 = 25.684$ n.s.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실태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를 알아보았다. 음주안함(미성년 91.2%, 성년 74.9%)의 경우만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높았고,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미성년 5.3%, 성년 7.9%), 약간 취함(미성년 1.1%, 성년 7.2%), 만취(미성년 0%, 성년 3.3%)의 경우 모두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연쇄강도소년범의 경우 대부분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름을 알 수 있고, 연쇄강도성인범의 경우 약 20%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강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8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가해자 음주상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 수 없음	9	2.4	45	6.7	54	5.2
음주안함	344	91.2	501	74.9	845	80.8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20	5.3	53	7.9	73	7.0
약간 취함	4	1.1	48	7.2	52	5.0
만취	0.0	0.0	22	3.3	22	2.0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4) $\chi^2 = 49.676^{***}$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복용을 한 경우가 0.8%로 성년 1.1%보다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9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가해자 약물복용여부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용안함	365	99.2	636	98.9	1001	99.0
복용함	3	0.8	7	1.1	10	1.0
합계	368	100.0	643	100.0	1011	100.0

(df=1) $\chi^2 = 0.179$ n.s.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조사하였다. 음주안함(미성년 85.4%, 성년 83.3%),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미성년 5.0%, 성년 4.8%), 만취(미성년 3.2%, 성년 3.1%)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약간 취함(미성년 0.5%, 성년 3.1%)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피해자 음주상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 수 없음	22	5.8	38	5.7	60	5.7
음주안함	322	85.4	557	83.3	879	84.0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19	5.0	32	4.8	51	4.9
약간 취함	2	0.5	21	3.1	23	2.2
만취	12	3.2	21	3.1	33	3.2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4) $\chi^2 = 7.639$ n.s.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0.3%이지만, 성년은 0.2%로 나타나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피해자 약물복용여부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용안함	367	99.7	633	99.8	1000	99.8
복용함	1	0.3	1	0.2	2	0.2
합계	368	100.0	634	100.0	1002	100.0

(df=1) $\chi^2 = 0.152$ n.s.

다.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을 알아보았다. 끌고 가서 범행(미성년 9.1%, 성년 6.2%), 음주 등 놀이로 유인(미성년 11.7%, 성년 2.9%), 기만(미성년 32.8%, 성년 21.7%), 망보기(미성년 1.7%, 성년 1.2%), 기타(미성년 2.2%, 성년 1.9%)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미성년 10.8%, 성년 13.2%), 가택침입(미성년 3.9%, 성년 18.4%), 위협(미성년 14.6%, 성년 23.9%), 기다렸다가 덮치기(미성년 7.8%, 성년 8.9%)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가택침입과 같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많은 범죄경험이 필요한 범행수법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성년의 경우 음주 등 놀이로 유인이나 기만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9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

강도범죄 접근방법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64	10.8	140	13.2	204	12.4
가택침입	23	3.9	195	18.4	218	13.2
끌고 가서 범행	54	9.1	66	6.2	120	7.3
위협	86	14.6	253	23.9	339	20.5
기다렸다가 덮치기	46	7.8	94	8.9	140	8.5
음주 등 놀이로 유인	69	11.7	31	2.9	100	6.1
기만	194	32.8	230	21.7	424	25.7
망보기	10	1.7	13	1.2	23	1.4
알 수 없음(해당없음)	32	5.4	18	1.7	50	3.0
기타	13	2.2	20	1.9	33	2.0
합계	591	100.0	1060	100.0	1651	100.0

라.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함께 대화(미성년 26.8%, 성년 23.8%), 함께 놀이(미성년 2.1%, 성년 0.3%), 언어적으로 싸움(미성년 4.4%, 성년 2.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을 하는 경우(미성년 44.8%, 성년 65.9%), 함께 음주(미성년 0.5%, 성년 1.3%), 함께 식사(미성년 0%, 성년 0.6%), 물리적으로 싸움(미성년 0%, 성년 1.6%)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9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별다른 상호작용 없음(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174	44.8	459	65.9	633	58.3
함께 음주	2	0.5	9	1.3	11	1.0
함께 식사	0.0	0.0	4	0.6	4	0.4
함께 대화	104	26.8	166	23.8	270	24.9
함께 놀이(영화관람, 놀이공원 등)	8	2.1	2	0.3	10	0.9
언어적으로 싸움	17	4.4	14	2.0	31	2.9
물리적으로 싸움	0.0	0.0	11	1.6	11	1.0
알 수 없음	83	21.4	32	4.6	115	10.6
합계	388	100.0	697	100.0	1085	100.0

마. 강도범죄 수법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상강도(미성년 41.1%, 성년 25.6%), 인질강도(미성년 2.1%, 성년 0.3%), 기타강도(미성년 21.8%, 성년 4.2%)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침입강도(미성년 26.3%, 성년 60.2%), 성매매유인(미성년 0.8%, 성년 6.3%),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미성년 0.5%, 성년 0.7%)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범죄경험이 많이 필요한 침입강도의 경우 성인범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소년범의 경우 노상강도와 같은 수법

을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9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강도범죄의 수법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침입강도	99	26.3	403	60.2	502	48.0
노상강도	155	41.1	171	25.6	326	31.2
인질강도	8	2.1	2	0.3	10	1.0
성매매유인	3	0.8	42	6.3	45	4.3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	2	0.5	5	0.7	7	0.7
기타강도	82	21.8	28	4.2	110	10.5
알 수 없음	28	7.4	18	2.7	46	4.4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6) $\chi^2 = 291.075^{***}$ ***p<.001

바. 강도행위의 특성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을 알아보았다. 폭행 없음(미성년 21.7%, 성년 7.6%),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미성년 21.4%, 성년 15.4%), 언어적 폭력(미성년 24.0%, 성년 23.4%), 기타(미성년 1.1%, 성년 1.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흉기로 위협하기(미성년 8.4%, 성년 20.0%), 흉기로 찌르기 및 때리기(미성년 4.0%, 성년 4.2%), 결박(미성년 1.4%, 성년 9.0%), 감금(미성년 3.5%, 성년 3.8%), 완력사용(미성년 13.3%, 성년 15.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미성년의 경우 물리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성년의 경우 사전에 준비를 통해 범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적 다툼이나 언어적 폭행은 줄이고, 흉기를 준비해 협박하거나 완력사용 등을 통해 상대를 제압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9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

폭행 특성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폭행 없음	137	21.7	111	7.6	248	11.8
흥기로 위협하기	53	8.4	293	20.0	346	16.5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	135	21.4	226	15.4	361	17.2
흥기로 찌르기, 때리기	25	4.0	61	4.2	86	4.1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151	24.0	343	23.4	494	23.6
결박(테이프, 끈 등)	9	1.4	131	9.0	140	6.7
감금	22	3.5	56	3.8	78	3.7
완력사용	84	13.3	224	15.3	308	14.7
기타	7	1.1	14	1.0	21	1.0
알 수 없음(해당없음)	7	1.1	4	0.3	11	0.5
합계	630	100.0	1463	100.0	2093	100.0

사. 피해내용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알아보았다. 피해없음(미성년 9.2%, 성년 7.6%), 신체적 피해(미성년 33.5%, 성년 26.7%), 금전적 피해(미성년 55.5%, 성년 54.1%)의 경우 소년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적 피해(미성년 0%, 성년 1.6%), 성적피해(미성년 0.9%, 성년 9.3%)의 경우 성인범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9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피해내용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없음	50	9.2	76	7.6	126	8.1
신체적 피해	181	33.5	269	26.7	450	29.1
금전적 피해	300	55.5	544	54.1	844	54.6
정신적 피해	0.0	0.0	16	1.6	16	1.0
성적 피해	5	0.9	94	9.3	99	6.4
기타	0.0	0.0	5	0.5	5	0.3
알 수 없음	5	0.9	2	0.2	7	0.5
합계	541	100.0	1006	100.0	1547	100.0

아. 강도범죄를 위한 도구 사용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66.1%로 성년 17.5%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기타(미성년 5.4%, 성년 2.5%)의 경우 역시 미성년이 성년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콘돔(미성년 0%, 성년 0.3%), 장갑 착용(미성년 0.5%, 성년 8.8%), 흉기(미성년 14.7%, 성년 29.0%),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미성년 0.5%, 성년 16.0%), 결박도구(미성년 2.2%, 성년 14.2%), 차량이용의 경우(미성년 9.8%, 성년 11.6%) 성년의 비율이 높았다. 즉, 성년의 경우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처럼 성인이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고 신중하게 범행에 착수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표 2-9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범행도구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도구를 사용 안함	269	66.1	201	17.5	470	30.2
콘돔	0.0	0.0	4	0.3	4	0.3
장갑 착용	2	0.5	101	8.8	103	6.6
흉기	60	14.7	334	29.0	394	25.3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사용	2	0.5	184	16.0	186	11.9
결박도구(끈, 테이프 등)	9	2.2	163	14.2	172	11.0
차량(오토바이 포함)	40	9.8	133	11.6	173	11.1
기타	22	5.4	29	2.5	51	3.3
알 수 없음	3	0.7	1	0.1	4	0.3
합계	407	100.0	1150	100.0	1557	100.0

자.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를 알아보았다. 범행절차 사전계획(미성년 48.8%, 성년 28.2%), 범행대상 사전 선정(미성년 19.3%, 성년 13.2%), 범행 장소 사전 답사(미성년 10.7%, 성년 9.1%)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행 전 도주계획(미성년 2.8%, 성년 8.0%), 범행 전 도구준비(미성년 11.9%, 성년 26.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성인범들이 범행 전 도구준비를 많이 한다는 결과는 성인범들이 물리적 폭행을 덜 선호한다는 이전 분석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범행 사전 계획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절차 사전 계획	315	48.8	356	28.2	671	35.2
범행대상 사전 선정	125	19.3	166	13.2	291	15.3
범행장소 사전 답사	69	10.7	115	9.1	184	9.6
범행 전 도주 계획	18	2.8	101	8.0	119	6.2
범행 전 도구 준비	77	11.9	332	26.3	409	21.4
알 수 없음(해당없음)	42	6.5	192	15.2	234	12.3
합계	646	100.0	1262	100.0	1908	100.0

4. 지리적 특성

가. 사건발생당시 연쇄강도범죄자의 거주지역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을 알아보았다. 대전(미성년 10.1%, 성년 3.9%), 경기(미성년 17.2%, 성년 15.5%), 충남(미성년 8.0%, 성년 0.3%), 전남(미성년 6.1%, 성년 0.6%), 해외(미성년 2.1%, 성년 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서울(미성년 25.5%, 성년 33.6%), 부산(미성년 4.2%, 성년 6.7%), 대구(미성년 1.6%, 성년 4.8%), 광주(미성년 5.3%, 성년 5.4%), 인천(미성년 8.0%, 성년 8.2%), 울산(미성년 0.3%, 성년 2.4%), 충북(미성년 0%, 성년 0.6%), 경남(미성년 1.3%, 성년 2.2%), 경북(미성년 0%, 성년 4.2%), 전북(미성년 0.8%, 성년 1.2%), 제주(미성년 0%, 성년 0.1%)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0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가해자 거주지역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96	25.5	225	33.6	321	30.7
부산	16	4.2	45	6.7	61	5.8
대구	6	1.6	32	4.8	38	3.6
광주	20	5.3	36	5.4	56	5.4
대전	38	10.1	26	3.9	64	6.1
인천	30	8.0	55	8.2	85	8.1
울산	1	0.3	16	2.4	17	1.6
경기	65	17.2	104	15.5	169	16.2
충남	30	8.0	2	0.3	32	3.1
충북	0.0	0.0	4	0.6	4	0.4
경남	5	1.3	15	2.2	20	1.9
경북	0.0	0.0	28	4.2	28	2.7
전남	23	6.1	4	0.6	27	2.6
전북	3	0.8	8	1.2	11	1.1
제주	0.0	0.0	1	0.1	1	0.1
해외	8	2.1	0.0	0.0	8	0.8
알 수 없음	36	9.5	68	10.2	104	9.9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16) $\chi^2 = 145.653^{***}$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부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미성년의 경우 주거가 부정인 경우가 14.3%인 것에 비해, 성년의 경우 18.5%로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주거부정 여부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54	14.3	124	18.5	178	17.02
아니다	323	85.7	545	81.5	868	82.98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나.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의 특성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를 알아보았다. 서울(미성년 39.8%, 성년 37.5%), 부산(미성년 8.0%, 성년 7.6%), 광주(미성년 5.3%, 성년 4.8%), 대전(미성년 15.4%, 성년 3.3%), 경기(미성년 17.8%, 성년 16.3%), 충남(미성년 0.3%, 성년 0.1%), 해외(미성년 2.1%, 성년 0.4%)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대구(미성년 2.4%, 성년 5.8%), 인천(미성년 8.0%, 성년 9.1%), 울산(미성년 0.3%, 성년 2.1%), 충북(미성년 0%, 성년 1.5%), 경남(미성년 0.5%, 성년 3.4%), 경북(미성년 0.3%, 성년 3.7%), 전남(미성년 0%, 성년 1.9%), 전북(미성년 0%, 성년 1.3%), 강원(미성년 0%, 성년 0.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0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가해자 거주지역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150	39.8	251	37.5	401	38.3
부산	30	8.0	51	7.6	81	7.7
대구	9	2.4	39	5.8	48	4.6
광주	20	5.3	32	4.8	52	5.0
대전	58	15.4	22	3.3	80	7.6
인천	30	8.0	61	9.1	91	8.7
울산	1	0.3	14	2.1	15	1.4
경기	67	17.8	109	16.3	176	16.8
충남	1	0.3	1	0.1	2	0.2
충북	0.0	0.0	10	1.5	10	1.0
경남	2	0.5	23	3.4	25	2.4
경북	1	0.3	25	3.7	26	2.5
전남	0.0	0.0	13	1.9	13	1.2
전북	0.0	0.0	9	1.3	9	0.9
강원	0.0	0.0	2	0.3	2	0.2
해외	8	2.1	3	0.4	11	1.1
알 수 없음	0.0	0.0	4	0.6	4	0.4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16) $\chi^2 = 107.372^{***}$ ***p<.001

다.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미성년 20.4%, 성년 18.7%), 친숙한 장소(미성년 43.0%, 성년 22.9%),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미성년 14.6%, 성년 7.5%)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직장 혹은 직장 인근(미성년 0%, 성년 0.6%),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미성년 15.4%, 성년 42.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소년범들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나 혹은 다소 익숙하거나 알고 있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범들의 경우 낯선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10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77	20.4	125	18.7	202	19.3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인근	0.0	0.0	4	0.6	4	0.4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162	43.0	153	22.9	315	30.1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55	14.6	50	7.5	105	10.0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58	15.4	283	42.3	341	32.6
알 수 없음	25	6.6	54	8.1	79	7.6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5) $\chi^2 = 101.394^{***}$ ***p<.001

라.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친숙한 장소(미성년 21.2%, 성년 4.8%),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미성년 1.6%, 성년 0.9%),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미성년 25.7%, 성년 9.2%)의 경우 가해자가 소년범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미성년 22.5%, 성년 42.1%), 직장 혹은 직장인근(미성년 14.3%, 성년 34.8%)인 경우 가해자가 성인범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85	22.5	283	42.1	368	35.0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인근	54	14.3	234	34.8	288	27.4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80	21.2	32	4.8	112	10.7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6	1.6	6	0.9	12	1.1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97	25.7	62	9.2	159	15.1
알 수 없음	56	14.8	55	8.2	111	10.6
합계	378	100.0	672	100.0	1050	100.0

마. 가해자-피해자가 만난 장소와 사건발생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동일지역(미성년 16.7%, 성년 13.9%), 3km 이상 - 10km 미만(미성년 26.3%, 성년 19.0%), 10km 이상 - 50km 미만(미성년 31.0%, 성년 25.7%)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3km 미만(미성년 5.0%, 성년 10.9%), 50km 이상 - 100km 미만(미성년 2.4%, 성년 4.3%), 100km 이상(미성년 6.6%, 성년 7.6%)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0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일지역(동일한 동 or 리)	63	16.7	93	13.9	156	14.9
3km 미만	19	5.0	73	10.9	92	8.8
3km 이상 - 10km 미만	99	26.3	127	19.0	226	21.6
10km 이상 - 50km 미만	117	31.0	172	25.7	289	27.6
50km 이상 - 100km 미만	9	2.4	29	4.3	38	3.6
100km 이상	25	6.6	51	7.6	76	7.3
알 수 없음	45	11.9	124	18.5	169	16.2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6) $\chi^2 = 28.454^{***}$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을 알아보았다. 도보(미성년 38.5%, 성년 12.9%), 기타(미성년 0.3%, 성년 0.1%)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이동안함(미성년 46.7%, 성년 70.6%), 차량이용(미성년 6.4%, 성년 11.9%), 대중교통(미성년 0%, 성년 0.6%)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특정 장소로 끌고 가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미성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미성년이 유인이나 끌고 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더 높다는 이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이용의 경우 성인범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구사용에서 성인범들이 소년범들보다 차량을 준비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와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표 2-10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동안함(동일장소)	176	46.7	475	70.6	651	62.0
차량이용	24	6.4	80	11.9	104	9.9
대중교통(버스,지하철)	0.0	0.0	4	0.6	4	0.4
도보	145	38.5	87	12.9	232	22.1
기타	1	0.3	1	0.1	2	0.2
알 수 없음	31	8.2	26	3.9	57	5.4
합계	377	100.0	673	100.0	1050	100.0

바. 사건발생장소 유형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상업지역(미성년 69.5%, 성년 42.3%), 공장지역(미성년 0.8%, 성년 0.6%), 공원(미성년 0.5%, 성년 0%), 기타(미성년 1.3%, 성년 1.5%)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주거지역(미성년 27.3%, 성년 54.0%), 야산 및 임야(미성년 0.3%, 성년 1.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10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사건발생장소 유형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업지역	262	69.5	283	42.3	545	52.1
주거지역	103	27.3	361	54.0	464	44.4
야산 및 임야	1	0.3	9	1.3	10	1.0
공장지역	3	0.8	4	0.6	7	0.7
공원	2	0.5	0.0	0.0	2	0.2
기타	5	1.3	10	1.5	15	1.4
알 수 없음	1	0.3	2	0.3	3	0.3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6) $\chi^2 = 79.489^{***}$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숙박업소(미성년 36.1%, 성년 9.0%), 비디오방(미성년 0.8%, 성년 0.1%), 길거리(미성년 31.7%, 성년 15.8%), 공원 및 놀이터(미성년 3.1%, 성년 1.0%), 음식점(미성년 1.0%, 성년 0.6%), 기타(미성년 7.6%, 성년 1.6%)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집안(미성년 8.9%, 성년 28.6%), 집근처(미성년 1.8%, 성년 4.5%),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미성년 0.3%, 성년 0.9%), 사무실·직장(미성년 0%, 성년 2.2%), 차량 내(미성년 2.1%, 성년 8.7%), 유흥업소(미성년 0%, 성년 4.6%), 야산 등 한적한 곳(미성년 1.8%, 성년 2.4%), 편의점 및 슈퍼마켓(미성년 4.2%, 성년 14.6%), 금은방(미성년 0%, 성년 2.7%), 다방(미성년 0%, 성년 1.6%), 기타상점(미성년 0%, 성년 0.7%)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소년범들의 경우 길거리 등에서 범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에 비해, 성인범들의 경우 집안이나 점포 내에서 범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범행수법에서 소년범들이 노상강도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성인범들의 경우 침입강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의 범행 비율이 높다는 결과는 소년범들이 성매매 등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기만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표 2-10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집안	34	8.9	191	28.6	225	21.4
집근처(계단, 엘리베이터 등)	7	1.8	30	4.5	37	3.5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	1	0.3	6	0.9	7	0.7
사무실·직장	0.0	0.0	15	2.2	15	1.4
차량 내	8	2.1	58	8.7	66	6.3
유흥업소	0.0	0.0	31	4.6	31	2.9
숙박업소	138	36.1	60	9.0	198	18.8
비디오방(DVD방, PC방)	3	0.8	1	0.1	4	0.4
길거리	121	31.7	106	15.8	227	21.6
야산 등 한적한 곳	7	1.8	16	2.4	23	2.2
공원 및 놀이터	12	3.1	7	1.0	19	1.8
편의점 및 슈퍼마켓	16	4.2	98	14.6	114	10.8
금은방	0.0	0.0	18	2.7	18	1.7
음식점	4	1.0	4	0.6	8	0.8
다방	0.0	0.0	11	1.6	11	1.0
기타상점	0.0	0.0	5	0.7	5	0.5
기타	29	7.6	11	1.6	40	3.8
알 수 없음	2	0.5	1	0.1	3	0.3
합계	382	100.0	669	100.0	1051	100.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세대주택(미성년 79.4%, 성년 68.1%)의 경우만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아파트(미성년 8.8%, 성년 15.2%), 단독주택(미성년 8.8%, 성년 14.1%), 기타(미성년 0%, 성년 1.0%)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0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집안 유형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파트	3	8.8	29	15.2	32	14.2
다세대주택	27	79.4	130	68.1	157	69.8
단독주택	3	8.8	27	14.1	30	13.3
기타	0.0	0.0	2	1.0	2	0.9
알 수 없음	1	3.0	3	1.6	4	1.8
합계	34	100.0	191	100.0	225	100.0

(df=4) $\chi^2 = 2.625$ n.s.

5. 피해자의 특성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남성 1명(미성년 64.2%, 성년 28.4%), 남성 다수(미성년 13.3%, 성년 6.9%), 남성다수 + 여성 1명(미성년 2.7%, 성년 0.6%)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여성 1명(미성년 15.4%, 성년 53.2%), 남성 1명 + 여성 1명(미성년 0.5%, 성년 4.3%), 여성 다수(미성년 2.4%, 성년 3.3%), 남성 1명 + 여성 다수(미성년 0%, 성년 0.7%), 남녀 모두 다수(미성년 0%, 성년 0.7%)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1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성별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명	242	64.2	190	28.4	432	41.3
여성 1명	58	15.4	356	53.2	414	39.6
남성 1명 + 여성 1명	2	0.5	29	4.3	31	3.0
남성 다수	50	13.3	46	6.9	96	9.2
여성 다수	9	2.4	22	3.3	31	3.0
남성다수 + 여성 1명	10	2.7	4	0.6	14	1.3
남성 1명 + 여성 다수	0.0	0.0	5	0.7	5	0.5
남녀 모두 다수	0.0	0.0	5	0.7	5	0.5
알 수 없음	6	1.6	12	1.8	18	1.7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8) $\chi^2 = 198.416^{***}$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20세 이상 30세 미만(미성년 25.7%, 성년 24.8%), 30세 이상 40세 미만(미성년 28.7%, 성년 16.1%)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10세 미만(미성년 0.3%, 성년 0.7%), 40세 이상 50세 미만(미성년 5.5%, 성년 12.9%), 50세 이상 60세 미만(미성년 9.3%, 성년 13.9%), 60세 이상(미성년 5.3%, 성년 8.5%)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 각 각 17.9%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표 2-11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세 미만	1	0.3	5	0.7	6	0.5
10세 이상 20세 미만	71	17.9	126	17.9	197	17.9
20세 이상 30세 미만	102	25.7	174	24.8	276	25.1
30세 이상 40세 미만	114	28.7	113	16.1	227	20.6
40세 이상 50세 미만	22	5.5	91	12.9	113	10.3
50세 이상 60세 미만	37	9.3	98	13.9	135	12.3
60세 이상	21	5.3	60	8.5	81	7.4
알 수 없음	29	7.3	36	5.1	65	5.9
합계	397	100.0	703	100.0	1100	100.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을 알아보았다. 내국인(미성년 98.1%, 성년 94.2%)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고, 귀화인 및 외국인(미성년 0%, 성년 2.1%)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2〉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

피해자 국적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내국인	370	98.1	630	94.2	1000	95.6
귀화인 및 외국인	0.0	0.0	14	2.1	14	1.3
알 수 없음	7	1.9	25	3.7	32	3.1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나. 피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를 알아보았다. 장애없음은 미성년 91.3%, 성년 94.9%, 신체장애는 미성년 0.5%, 성년 0.6%, 기타는 미

성년 0%, 성년 0.1%로 나타나 성인범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미성년 1.3%, 성년 0.3%로 소년범의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113〉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피해자 국적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없음	345	91.3	638	94.9	983	93.6
신체장애	2	0.5	4	0.6	6	0.6
정신장애	5	1.3	2	0.3	7	0.7
기타	0.0	0.0	1	0.1	1	0.1
알 수 없음	26	6.9	27	4.0	53	5.0
합계	378	100.0	672	100.0	1050	100.0

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로 잘 아는 사이(미성년 2.7%, 성년 1.2%),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미성년 5.3%, 성년 1.2%),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이(미성년 27.3%, 성년 17.9%), 기타(미성년 0.8%, 성년 0.3%)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인척(미성년 0%, 성년 0.1%),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미성년 0.5%, 성년 2.7%), 모르는 사람(미성년 62.3%, 성년 75.9%)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14〉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인척	0.0	0.0	1	0.1	1	0.1
서로 잘 아는 사이	10	2.7	8	1.2	18	1.7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	2	0.5	18	2.7	20	1.9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	20	5.3	8	1.2	28	2.7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이	103	27.3	120	17.9	223	21.3
모르는 사람	235	62.3	508	75.9	743	71.0
기타	3	0.8	2	0.3	5	0.5
알 수 없음	4	1.1	4	0.6	8	0.8
합계	377	100.0	669	100.0	1046	100.0

(df=7) $\chi^2 = 42.789^{***}$ ***p<.001

6.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가. 공범의 수와 가해자의 역할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공범이 있는 경우 미성년은 97.9%, 성년 52.7%로 미성년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범죄가 집단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서 이러한 결과가 비롯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115〉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

공범의 유무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음	8	2.1	316	47.3	324	31.0
있음	369	97.9	352	52.7	721	69.0
합계	377	100.0	668	100.0	1045	100.0

(df=1) $\chi^2 = 229.991^{***}$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1명(미성년 9.8%, 성년 43.2%), 2명(미성년 17.8%, 성년 25.9%), 3명(미성년 18.3%, 성년 21.3%)의 경우는 성인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명(미성년 34.4%, 성년 2.3%), 5명 - 6명(미성년 13.7%, 성년 7.1%), 7명이상(미성년 6.0%, 성년 0.3%)의 경우 소년범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소년범들이 성인범들보다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앞서 공범유무 분석에서 소년범의 경우 공범이 있는 경우가 성인범보다 많다는 결과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표 2-116〉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

공범수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명	36	9.8	152	43.2	188	26.2
2명	65	17.8	91	25.9	156	21.7
3명	67	18.3	75	21.3	142	19.8
4명	126	34.4	8	2.3	134	18.7
5명 - 6명	50	13.7	25	7.1	75	10.4
7명 이상	22	6.0	1	0.3	23	3.2
합계	366	100.0	352	100.0	718	100.0

(df=9) $\chi^2 = 220.937^{***}$ ***p<.00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주범(미성년 20.6%, 성년 16.2%), 중범(미성년 19.8%, 성년 7.7%)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공동정범(미성년 58.3%, 성년 76.1%)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7〉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가해자 역할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범	76	20.6	57	16.2	133	18.4
종범	73	19.8	27	7.7	100	13.9
공동정범	215	58.3	268	76.1	483	67.0
알 수 없음	5	1.4	0.0	0.0	5	0.7
합계	369	100.0	352	100.0	721	100.0

(df=3) $\chi^2 = 34.308^{***}$ ***p<.001

나. 공범 간의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친구 및 선후배(미성년 83.7%, 성년 49.5%), 동네사람(미성년 0.2%, 성년 0%), 애인 및 부부(미성년 6.2%, 성년 5.3%), 모르는 사람(미성년 2.7%, 성년 1.9%)의 경우 소년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 및 친척(미성년 0%, 성년 3.6%), 교도소 친구(미성년

1.0%, 성년 22.0%), 직장동료 및 상사(미성년 0%, 성년 1.7%), 온라인으로 만남(미성년 2.0%, 성년 8.0%), 기타(미성년 1.7%, 성년 3.9%)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2-118〉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

공범 간 관계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구, 선후배	340	83.7	205	49.5	545	66.5
가족, 친척	0.0	0.0	15	3.6	15	1.8
교도소 친구	4	1.0	91	22.0	95	11.6
동네사람	1	0.2	0.0	0.0	1	0.1
직장동료, 상사	0.0	0.0	7	1.7	7	0.9
애인, 부부	25	6.2	22	5.3	47	5.7
모르는 사람(처음 본 사람)	11	2.7	8	1.9	19	2.3
온라인으로 만남	8	2.0	33	8.0	41	5.0
기타	7	1.7	16	3.9	23	2.8
알 수 없음	10	2.5	17	4.1	27	3.3
합계	406	100.0	414	100.0	820	100.0

7. 사법처리 결과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를 알아보았다. 불기소의 경우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기소(미성년 93.1%, 성년 97.5%)의 경우만 성인범의 비율이 더 높았다. 나머지 기소유예(미성년 2.3%, 성년 0.7%), 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미성년 4.6%, 성년 1.8%)는 소년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19〉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

피해내용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소	122	93.1	268	97.5	390	96.1
기소유예	3	2.3	2	0.7	5	1.2
보호관찰선도 조건부기소유예	6	4.6	5	1.8	11	2.7
합계	131	100.0	275	100.0	406	100.0

(df=2) $\chi^2 = 4.431$ n.s.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를 알아보았다.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가 56.0%로 가장 많았고, 성인범의 경우도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행유예(미성년 6.7%, 성년 6.5%), 보호관찰(미성년 4.5%, 성년 3.9%), 사회봉사(미성년 3.7%, 성년 2.3%)의 경우 소년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벌금(미성년 0%, 성년 0.3%), 징역(미성년 21.6%, 성년 73.5%), 치료감호(미성년 0%, 성년 1.3%), 기타(미성년 0.7%, 성년 5.8%)는 성인범의 비율이 높았고, 성인범의 경우 특히 징역형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년범의 경우 연쇄강도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을 받은 경우는 21.6%에 불과하지만, 성인범의 경우 대부분 징역형에 처해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이 성인범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2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

판결종류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벌금	0.0	0.0	1	0.3	1	0.2
집행유예	9	6.7	20	6.5	29	6.5
징역	29	21.6	228	73.5	257	57.9
소년보호사건송치	75	56.0	1	0.3	76	17.1
보호관찰	6	4.5	12	3.9	18	4.1
치료감호	0.0	0.0	4	1.3	4	0.9
사회봉사	5	3.7	7	2.3	12	2.7
기타	1	0.7	18	5.8	19	4.3
알 수 없음	9	6.7	19	6.1	28	6.3
합계	134	100.0	310	100.0	444	100.0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을 알아보았다.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만 미성년 51.7%, 성년 13.2%로 소년범의 비율이 더 높았고, 나머지 경우 모두 성인범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미만(미성년 0%, 성년 1.3%), 3년 이상(미성년 34.5%, 성년 61.4%), 10년 이상(미성년 10.3%, 성년 23.2%), 무기징역(미성년 0%, 성년 0.9%)의 비율로 나타났다. 즉, 소년범의 경우 1년 이상-3년 미만의 형량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성인범은 3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도 23.2%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성인범이 소년범보다 비교적 중한 처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21〉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

징역형량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0.0	0.0	3	1.3	3	1.2
1년 이상-3년 미만	15	51.7	30	13.2	45	17.5
3년 이상	10	34.5	140	61.4	150	58.4
10년 이상	3	10.3	53	23.2	56	21.8
무기징역	0.0	0.0	2	0.9	2	0.8
알 수 없음	1	3.4	0.0	0.0	1	0.4
합계	29	100.0	228	100.0	257	100.0

(df=5) $\chi^2 = 35.512^{***}$ *** $p < .001$

제6절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연쇄강도범죄 사건의 특성

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과 사건의 특성

연쇄강도범죄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에 따른 강도범죄의 사건특성을 분석하였다. 특수강도관련(미성년 40.6%, 성년 33.3%), 강도상해관련(미성년 28.3%, 성년 22.5%), 강도살인관련(미성년 3.5%, 성년 3.1%), 방조(미성년 0.7%, 성년 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았다. 반면,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미성년 17.0%, 성년 19.4%), 준강도관련(미성년 0.9%, 성년 3.9%), 강도강간관련(미성년 1.2%, 성년 2.3%), 성폭력범죄특별법관련(미성년 6.1%, 성년 10.1%), 특가법관련(미성년 1.7%, 성년 5.4%)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죄명)

죄명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강도관련 및 예비음모	72	17.0	25	19.4	97	17.5
특수강도관련	172	40.6	43	33.3	215	38.9
준강도관련	4	0.9	5	3.9	9	1.6
강도상해관련	120	28.3	29	22.5	149	26.9
강도살인관련	15	3.5	4	3.1	19	3.4
강도강간관련	5	1.2	3	2.3	8	1.4
성폭력범죄특례법관련	26	6.1	13	10.1	39	7.1
특가법관련	7	1.7	7	5.4	14	2.5
방조	3	0.7	0.0	0.0	3	0.5
합계	424	100.0	129	100.0	553	100.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중경합(미성년 30.8%, 성년 21.6%), 동종+이중경합(미성년 38.0%, 성년 33.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합아님(미성년 15.8%, 성년 22.7%), 동종경합(미성년 15.4%, 성년 22.7%)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의 경합여부

경합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경합아님	44	15.8	20	22.7	64	17.4
동종경합	43	15.4	20	22.7	63	17.2
이중경합	86	30.8	19	21.6	105	28.6
동종+이중경합	106	38.0	29	33.0	135	36.8
합계	279	100.0	88	100.0	367	100.0

(df=3) $\chi^2 = 6.397$ n.s.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중경합 죄명을 살펴보았다. 폭행범죄 관련인 경우 미성년 22.5%, 성년 14.3%로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타범죄(미성년 22.2%, 성년 15.6%) 또한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재산범죄(미성년 12.9%, 성년 15.6%),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미성년 36.3%, 성년 36.4%), 성범죄 관련(미성년 6.2%, 성년 18.2%)의 경우 모두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첫 체포 당시 미성년인 경우 폭행관련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이러한 결과는 폭행범죄가 범행당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소년범으로 처음 사법절차에 관련되는 경우 범행의 충동성이나 우발성이 성인이 되어 처음 체포되는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12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이종경합

이종경합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재산범죄(사기, 횡령, 점유이탈등)	42	12.9	12	15.6	54	13.4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118	36.3	28	36.4	146	36.3
폭행범죄 관련	73	22.5	11	14.3	84	20.9
성범죄 관련	20	6.2	14	18.2	34	8.5
기타 범죄	72	22.2	12	15.6	84	20.9
합계	325	100.0	77	100.0	402	100.0

2. 체포단서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를 조사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미성년 29.6%, 성년 26.8%), 제3의 인물이 신고(미성년 8.0%, 성년 4.6%), 탐문·신문·검문(미성년 27.5%, 성년 25.5%), 기타(미성년 2.9%, 성년 1.7%)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CCTV(미성년 14.1%, 성년 19.7%), 지문 및 족문(미성년 4.0%, 성년 4.8%), 현행범체포(미성년 4.1%, 성년 4.8%), 자수(미성년 0.6%, 성년 0.8%),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미성년 0.6%, 성년 2.5%)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DNA증거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 모두 7.3%의 동일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체포단서

체포단서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자가 신고	435	29.6	139	26.8	574	28.9
제3의 인물이 신고	117	8.0	24	4.6	141	7.1
CCTV	207	14.1	102	19.7	309	15.5
DNA증거(정액, 혈흔 등)	107	7.3	38	7.3	145	7.3
지문, 족문	59	4.0	25	4.8	84	4.2
탐문, 신문(여죄추궁), 검문(전과자 조사 등)	404	27.5	132	25.5	536	26.9
현행범체포	60	4.1	25	4.8	85	4.3
자수	9	0.6	4	0.8	13	0.7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	9	0.6	13	2.5	22	1.1
기타	43	2.9	9	1.7	52	2.6
알 수 없음	21	1.4	7	1.4	28	1.4
합계	1471	100.0	518	100.0	1989	100.0

3. 범행내용의 특성

가. 연쇄강도범죄사건의 발생시간과 계절

첫 체포 당시 연쇄강도범죄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의 차이를 알아 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밤이 31.4%로 같은 시간대 성년 21.3% 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우 모두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벽(미성년 41.3%, 성년 49.3%), 오전(미성년 12.8%, 성년 14.7%), 오후(미성년 14.5%, 성년 14.7%)로 결과 되었다.

〈표 2-12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시간대

사건발생 시간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새벽(00시 이상 6시 미만)	290	41.3	104	49.3	394	43.1
오전(6시 이상 12시 미만)	90	12.8	31	14.7	121	13.2
오후(12시 이상 18시 미만)	102	14.5	31	14.7	133	14.6
밤(18시 이상 24시 미만)	221	31.4	45	21.3	266	29.1
합계	703	100.0	211	100.0	914	100.0

(df=3) $\chi^2 = 8.573^*$ *p<.0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을과 겨울의 경우 미성년 20.3%, 32.0%로 같은 계절에 성년이 각 각 14.1%, 23.9%인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봄(미성년 27.2%, 성년 29.1%), 여름(미성년 20.5%, 성년 32.9%)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계절

사건발생 계절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봄	195	27.2	62	29.1	257	27.6
여름	147	20.5	70	32.9	217	23.3
가을	146	20.3	30	14.1	176	18.9
겨울	230	32.0	51	23.9	281	30.2
합계	718	100.0	213	100.0	931	100.0

(df=3) $\chi^2 = 18.001^{***}$ ***p<.001

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실태

첫 체포 당시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를 알아보았다. 음주안함(미성년 81.7%, 성년 71.5%)의 경우만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높았고,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미성년 6.1%, 성년 12.1%), 약간 취함(미성년 4.6%, 성년 7.9%), 만취(미성년 1.9%, 성년 2.3%)의 경우 모두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2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음주상태

가해자 음주상태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 수 없음	41	5.7	13	6.1	54	5.8
음주안함	588	81.7	153	71.5	741	79.3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44	6.1	26	12.1	70	7.5
약간 취함	33	4.6	17	7.9	50	5.4
만취	14	1.9	5	2.3	19	2.0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4) $\chi^2 = 13.823^{**}$ **<.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복용을 한 경우가 0.9%로 성년 2.0%보다 적은 비율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12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약물복용 여부

가해자 약물복용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용안함	688	99.1	201	98.0	889	98.9
복용함	6	0.9	4	2.0	10	1.1
합계	694	100.0	205	100.0	899	100.0

(df=1) $\chi^2 = 1.699$ n.s.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음주상태를 조사하였다. 음주안함(미성년 84.4%, 성년 82.7%),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미성년 4.7%, 성년 4.2%), 만취(미성년 3.3%, 성년 2.8%)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단지 약간 취함(미성년 1.7%, 성년 4.2%)의 경우만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음주상태

피해자 음주상태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알 수 없음	42	5.8	13	6.1	55	5.9
음주안함	608	84.4	177	82.7	785	84.0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34	4.7	9	4.2	43	4.6
약간 취함	12	1.7	9	4.2	21	2.2
만취	24	3.3	6	2.8	30	3.2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4) $\chi^2 = 5.045$ n.s.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를 알아보았다.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0.1%이지만, 성년은 0.5%로 나타나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3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약물복용 여부

피해자 약물복용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복용안함	688	99.9	201	99.5	889	99.8
복용함	1	0.1	1	0.5	2	0.2
합계	689	100.0	202	100.0	891	100.0

(df=1) $\chi^2 = 0.854$ n.s.

다. 강도범죄를 위한 접근방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을 알아보았다. 끌고 가서 범행(미성년 9.0%, 성년 2.8%), 음주 등 놀이로 유인(미성년 6.7%, 성년 2.5%), 기만(미성년 25.4%, 성년 21.3%), 망보기(미성년 1.8%, 성년 0.3%), 기타(미성년 2.4%, 성년 1.3%)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미성년 11.2%, 성년 15.0%), 가택침입(미성년 12.3%, 성년 19.7%), 위협(미성년 20.3%, 성년 24.1%), 기다렸다가 덮치기(미성년 8.1%, 성년 11.0%)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가택침입과 같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범행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년범 출신의 경우 끌고 가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노상에서 강도범행을 주로 저지르거나 혹은 기만과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3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 접근방법

강도범죄 접근방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131	11.2	48	15.0	179	12.0
가택침입	144	12.3	63	19.7	207	13.9
끌고 가서 범행	106	9.0	9	2.8	115	7.7
위협	238	20.3	77	24.1	315	21.1
기다렸다가 덮치기	95	8.1	35	11.0	130	8.7
음주 등 놀이로 유인	78	6.7	8	2.5	86	5.8
기만	298	25.4	68	21.3	366	24.5
망보기	21	1.8	1	0.3	22	1.5
기타	28	2.4	4	1.3	32	2.1
알 수 없음(해당없음)	33	2.8	6	1.9	39	2.6
합계	1172	100.0	319	100.0	1491	100.0

라.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함께 대화(미성년 25.9%, 성년 21.4%), 함께 놀이(미성년 1.1%, 성년 0.9%), 언어적으로 싸움(미성년 3.6%, 성년 1.8%)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별다른 상호작용 없이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을 하는 경우(미성년 56.6%, 성년 67.0%), 함께 음주(미성년 0.8%, 성년 1.8%), 함께 식사(미성년 0.3%, 성년 0.9%), 물리적으로 싸움(미성년 0.8%, 성년 1.8%)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3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직전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가해자-피해자 상호작용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별다른 상호작용 없음(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422	56.6	150	67.0	572	59.0
함께 음주	6	0.8	4	1.8	10	1.0
함께 식사	2	0.3	2	0.9	4	0.4
함께 대화	193	25.9	48	21.4	241	24.8
함께 놀이(영화관람, 놀이공원 등)	8	1.1	2	0.9	10	1.0
언어적으로 싸움	27	3.6	4	1.8	31	3.2
물리적으로 싸움	6	0.8	4	1.8	10	1.0
알 수 없음	82	11.0	10	4.5	92	9.5
합계	746	100.0	224	100.0	970	100.0

마. 강도범죄의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상강도(미성년 34.0%, 성년 22.0%), 인질강도(미성년 1.1%, 성년 0.9%), 성매매유인(미성년 12.6%, 성년 0.5%),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미성년 4.0%, 성년 2.3%)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침입강도(미성년 43.8%, 성년 65.0%), 기타강도(미성년 4.0%, 성년 7.5%)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침입강도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소년범 출신의 경우 노상강도나 성매매유인과 같은 수법을 많이 선호한다는 것은 앞서 강도범죄의 접근방법에서 미성년이 끌고 가서 폭행이나 기만 등의 형태로 접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2-13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범죄의 수법

강도범죄의 수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침입강도	315	43.8	139	65.0	454	48.6
노상강도	245	34.0	47	22.0	292	31.3
인질강도	8	1.1	2	0.9	10	1.1
기타강도	29	4.0	16	7.5	45	4.8
알 수 없음	3	0.4	4	1.9	7	0.7
성매매 유인	91	12.6	1	0.5	92	9.9
유인 및 끌고 가서 범행	29	4.0	5	2.3	34	3.6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6) $\chi^2 = 57.812^{***}$ ***p<.001

바. 강도행위의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을 알아보았다.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미성년 19.5%, 성년 11.4%), 흥기로 찌르기 및 때리기(미성년 4.7%, 성년 3.1%)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폭행 없음(미성년 9.9%, 성년 10.1%), 흥기로 위협하기(미성년 14.9%, 성년 22.9%), 언어적 폭력(미성년 24.6%, 성년 24.7%), 결박(미성년 6.7%, 성년 7.0%), 감금(미성년 3.6%, 성년 4.5%), 기타(미성년 0.8%, 성년 1.8%)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력사용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 모두 14.6%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소년범 출신의 경우 물리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흥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많이 수반하는 것에 비해, 성인범 출신의 경우 사전에 준비를 통해 범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적 다툼은 줄이고, 흥기로 위협하거나 결박 등을 통해 상대를 제압함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13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강도행위의 폭행 특성

폭행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폭행 없음	148	9.9	45	10.1	193	10.0
흉기로 위협하기	222	14.9	102	22.9	324	16.7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	291	19.5	51	11.4	342	17.6
흉기로 찌르기, 때리기	70	4.7	14	3.1	84	4.3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367	24.6	110	24.7	477	24.6
결박(테이프, 끈 등)	100	6.7	31	7.0	131	6.8
감금	54	3.6	20	4.5	74	3.8
완력사용	218	14.6	65	14.6	283	14.6
기타	12	0.8	8	1.8	20	1.0
알 수 없음(해당없음)	11	0.7	0.0	0.0	11	0.6
합계	1493	100.0	446	100.0	1939	100.0

사. 피해내용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알아보았다. 신체적 피해(미성년 31.2%, 성년 23.7%), 금전적 피해(미성년 54.9%, 성년 51.7%)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피해없음(미성년 7.1%, 성년 8.9%), 정신적 피해(미성년 0.8%, 성년 1.8%), 성적 피해(미성년 5.3%, 성년 12.3%), 기타(미성년 0%, 성년 1.5%)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결과에서 특히 신체적 피해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앞서 폭행특성에서 물리적 폭행이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2-13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내용

피해내용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피해 없음	76	7.1	29	8.9	105	7.5
신체적 피해	335	31.2	77	23.7	412	29.5
금전적 피해	589	54.9	168	51.7	757	54.1
정신적 피해	9	0.8	6	1.8	15	1.1
성적 피해	57	5.3	40	12.3	97	6.9
기타	0.0	0.0	5	1.5	5	0.4
알 수 없음	7	0.7	0.0	0.0	7	0.5
합계	1073	100.0	325	100.0	1398	100.0

아. 강도범죄를 위한 도구 사용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미성년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5.7%로 성년 13.8%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고, 차량이용의 경우 미성년 12.5%, 성년 7.3%로 미성년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콘돔(미성년 0.1%, 성년 0.5%), 장갑 착용(미성년 5.2%, 성년 10.2%), 흉기(미성년 24.5%, 성년 31.5%),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미성년 8.2%, 성년 19.5%), 결박도구(미성년 10.9%, 성년 13.0%), 기타(미성년 2.5%, 성년 4.2%)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높았다.

〈표 2-13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범행도구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도구를 사용 안함	361	35.7	53	13.8	414	29.7
콘돔	1	0.1	2	0.5	3	0.2
장갑 착용	53	5.2	39	10.2	92	6.6
흉기	248	24.5	121	31.5	369	26.5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사용	83	8.2	75	19.5	158	11.3
결박도구(끈, 테이프 등)	110	10.9	50	13.0	160	11.5
차량(오토바이 포함)	126	12.5	28	7.3	154	11.0
기타	25	2.5	16	4.2	41	2.9
알 수 없음	4	0.4	0.0	0.0	4	0.3
합계	1011	100.0	384	100.0	1395	100.0

자.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를 알아보았다. 범행 절차 사전계획(미성년 38.0%, 성년 21.1%), 범행대상 사전 선정(미성년 15.9%, 성년 14.1%), 범행 전 도주계획(미성년 6.8%, 성년 4.4%)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행장소 사전 답사(미성년 9.3%, 성년 10.7%), 범행 전 도구준비(미성년 19.4%, 성년 29.2%)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성인범 출신들이 범행 전 도구준비를 많이 한다는 결과는 이들이 신체적 폭행을 덜 선호한다는 이전 분석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범행 사전 계획 여부

범행 사전 계획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범행절차 사전 계획	500	38.0	81	21.1	581	34.2
범행대상 사전 선정	210	15.9	54	14.1	264	15.5
범행장소 사전 답사	123	9.3	41	10.7	164	9.6
범행 전 도주 계획	89	6.8	17	4.4	106	6.2
범행 전 도구 준비	255	19.4	112	29.2	367	21.6
알 수 없음(해당없음)	140	10.6	79	20.6	219	12.9
합계	1317	100.0	384	100.0	1701	100.0

4. 지리적 특성

가. 사건발생당시 연쇄강도범죄자의 거주지역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을 알아보았다. 서울(미성년 34.0%, 성년 22.9%), 광주(미성년 5.8%, 성년 2.8%), 대전(미성년 7.6%, 성년 3.3%), 충남(미성년 4.2%, 성년 0%), 경북(미성년 2.1%, 성년 0%), 전남(미성년 1.9%, 성년 0.9%), 제주(미성년 0.1%, 성년 0%), 해외(미성년 1.1%, 성년 0%)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부산(미성년 5.8%, 성년 6.5%), 대구(미성년 4.0%, 성년 4.2%), 인천(미성년 6.3%, 성년 11.2%), 울산(미성년 0%, 성년 7.5%), 경기(미성년 13.9%, 성년 24.8%), 충북(미성년 0%, 성년 1.9%), 경남(미성년 1.7%, 성년 3.7%), 전북(미성년 0.8%, 성년 2.3%)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3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거주지역

가해자 거주지역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245	34.0	49	22.9	294	32.9
부산	42	5.8	14	6.5	56	6.3
대구	29	4.0	9	4.2	38	4.3
광주	42	5.8	6	2.8	48	5.4
대전	55	7.6	7	3.3	62	6.9
인천	45	6.3	24	11.2	29	3.2
울산	0.0	0.0	16	7.5	16	1.8
경기	100	13.9	53	24.8	153	17.1
충남	30	4.2	0.0	0.0	30	3.4
충북	0.0	0.0	4	1.9	4	0.4
경남	12	1.7	8	3.7	20	2.2
경북	15	2.1	0.0	0.0	15	1.7
전남	14	1.9	2	0.9	16	1.8
전북	6	0.8	5	2.3	11	1.2
강원	0.0	0.0	0.0	0.0	0.0	0.0
제주	1	0.1	0.0	0.0	1	0.1
해외	8	1.1	0.0	0.0	8	0.9
알 수 없음	76	10.6	17	7.9	93	10.4
합계	720	100.0	214	100.0	894	100.0

(df=16) $\chi^2 = 123.674^{***}$ ***p<.0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부정 여부를 조사하였다. 미성년의 경우 주거가 부정인 경우가 17.1%인 것에 비해, 성년의 경우 17.3%로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4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주거 부정 여부

주거부정 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123	17.1	37	17.3	160	17.9
아니다	597	82.9	177	82.7	734	82.1
합계	720	100.0	214	100.0	894	100.0

나.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의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를 알아보았다. 서울(미성년 42.5%, 성년 23.8%), 부산(미성년 7.9%, 성년 6.5%), 광주(미성년 5.1%, 성년 3.3%), 대전(미성년 9.6%, 성년 2.8%), 충남(미성년 0.1%, 성년 0%), 경북(미성년 2.6%, 성년 1.9%), 전남(미성년 1.1%, 성년 0.9%), 해외(미성년 1.5%, 성년 0%)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대구(미성년 3.9%, 성년 6.5%), 인천(미성년 7.8%, 성년 10.7%), 울산(미성년 0.3%, 성년 5.6%), 경기(미성년 14.0%, 성년 27.6%), 충북(미성년 0.8%, 성년 1.9%), 경남(미성년 1.8%, 성년 5.1%), 전북(미성년 0.6%, 성년 1.4%), 강원(미성년 0%, 성년 0.9%)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4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

가해자 거주지역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서울	306	42.5	51	23.8	357	38.2
부산	57	7.9	14	6.5	71	7.6
대구	28	3.9	14	6.5	42	4.5
광주	37	5.1	7	3.3	44	4.7
대전	69	9.6	6	2.8	75	8.0
인천	56	7.8	23	10.7	79	8.5
울산	2	0.3	12	5.6	14	1.5
경기	101	14.0	59	27.6	160	17.1
충남	1	0.1	0.0	0.0	1	0.1
충북	6	0.8	4	1.9	10	1.1
경남	13	1.8	11	5.1	24	2.6
경북	19	2.6	4	1.9	23	2.5
전남	8	1.1	2	0.9	10	1.1
전북	4	0.6	3	1.4	7	0.7
강원	0.0	0.0	2	0.9	2	0.2
해외	11	1.5	0.0	0.0	11	1.2
알 수 없음	2	0.3	2	0.9	4	0.4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16) $\chi^2 = 102.113^{***}$ ***p<.001

다.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친숙한 장소(미성년 33.1%, 성년 19.6%),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미성년 11.0%, 성년 5.6%)의 경우 소년범 출신이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미성년 15.6%, 성년 31.3%), 직장 혹은 직장인근(미성년 0.1%, 성년 1.4%),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미성년 32.4%, 성년 35.5%)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112	15.6	67	31.3	179	19.2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인근	1	0.1	3	1.4	4	0.4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238	33.1	42	19.6	280	30.0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79	11.0	12	5.6	91	9.7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233	32.4	76	35.5	309	33.1
알 수 없음	57	7.9	14	6.5	71	7.6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5) $\chi^2 = 43.208^{***}$ ***p<.001

라.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친숙한 장소(미성년 11.8%, 성년 5.1%),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미성년 1.2%, 성년 0.5%),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미성년 18.7%, 성년 5.6%)의 경우 소년범 출신이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미성년 35.0%, 성년 40.5%), 직장 혹은 직장 인근(미성년 22.7%, 성년 40.0%)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4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발생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사건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253	35.0	87	40.5	340	36.2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인근	164	22.7	86	40.0	250	26.7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85	11.8	11	5.1	96	10.2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9	1.2	1	0.5	10	1.1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135	18.7	12	5.6	147	15.7
알 수 없음	77	10.7	18	8.4	95	10.1
합계	723	100.0	215	100.0	938	100.0

마. 가해자-피해자가 만난 장소와 사건발생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의 지리적 프로파일링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를 살펴보았다. 3km 이상 - 10km 미만(미성년 23.5%, 성년 18.7%), 10km 이상 - 50km 미만(미성년 30.8%, 성년 18.2%), 100km 이상의 경우 소년범 출신이 6.8%로 4.2%인 성인범 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일지역(미성년 12.4%, 성년 22.4%), 3km 미만(미성년 7.1%, 성년 16.4%), 50km 이상 - 100km 미만(미성년 3.2%, 성년 6.1%)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4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일지역(동일한 동 or 리)	89	12.4	48	22.4	137	14.7
3km 미만	51	7.1	35	16.4	86	9.2
3km 이상 - 10km 미만	169	23.5	40	18.7	209	22.4
10km 이상 - 50km 미만	222	30.8	39	18.2	261	27.9
50km 이상 - 100km 미만	23	3.2	13	6.1	36	3.9
100km 이상	49	6.8	9	4.2	58	6.2
알 수 없음	117	16.3	30	14.0	147	15.7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6) $\chi^2 = 43.743^{***}$ ***p<.0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 장소까지 이동방법을 알아보았다. 차량이용(미성년 10.2%, 성년 9.3%), 도보(미성년 26.5%, 성년 8.9%)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이동안함(미성년 59.0%, 성년 71.0%), 대중교통(미성년 0.4%, 성년 0.5%), 기타(미성년 0.1%, 성년 0.5%)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4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이동안함(동일장소)	427	59.0	152	71.0	579	61.7
차량이용	74	10.2	20	9.3	94	10.0
대중교통(버스,지하철)	3	0.4	1	0.5	4	0.4
도보	192	26.5	19	8.9	211	22.5
기타	1	0.1	1	0.5	2	0.2
알 수 없음	27	3.7	21	9.8	48	5.1
합계	724	100.0	214	100.0	938	100.0

바. 사건발생장소 유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상업지역(미성년 52.1%, 성년 41.1%), 공원(미성년 0.1%, 성년 0%)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주거지역(미성년 45.1%, 성년 52.8%), 야산 및 임야(미성년 0.8%, 성년 1.4%), 공장지역(미성년 0.3%, 성년 1.9%), 기타(미성년 1.3%, 성년 2.3%)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유형

사건발생장소 유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상업지역	375	52.1	88	41.1	463	49.6
주거지역	325	45.1	113	52.8	438	46.9
야산 및 임야	6	0.8	3	1.4	9	1.0
공장지역	2	0.3	4	1.9	6	0.6
공원	1	0.1	0.0	0.0	1	0.1
기타	9	1.3	5	2.3	14	1.5
알 수 없음	2	0.3	1	0.5	3	0.3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6) $\chi^2 = 14.903^*$ *p<.0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 장소의 구체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집근처(미성년 3.6%, 성년 3.3%),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미성년 1.0%, 성년 0%), 숙박업소(미성년 19.3%, 성년 10.3%), 길거리(미성년 23.6%, 성년 13.6%), 야산 등 한적한 곳(미성년 2.9%, 성년 0%), 공원 및 놀이터(미성년 1.5%, 성년 1.4%), 음식점(미성년 1.0%, 성년 0.5%), 다방(미성년 1.2%, 성년 0.9%), 기타상점(미성년 0.6%, 성년 0.5%), 기타(미성년 4.6%, 성년 2.3%)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집안(미성년 22.7%, 성년 25.7%), 사무실 및 직장(미성년 1.2%, 성년 1.9%), 차량 내(미성년 5.8%, 성년 9.8%), 유흥업소(미성년 2.2%, 성년 5.1%), 비디오방(미성년 0.3%, 성년 0.5%), 편의점 및 슈퍼마켓(미성년 7.0%, 성년 21.5%), 금은방(미성년 1.2%, 성년 2.3%)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소년범 출신의 경우 숙박업소나 길거리에서의 강도 비율이 높은 것은 앞서 범행 접근방법과 수법에서 보았듯이 이들이 상대를 기만해서 접근하거나 노상강도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또한, 성인범의 경우 집이나 편의점, 금은방, 차량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행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행된다는 이전 조사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장소적 특성상 집안이나 편의점, 금은방, 차량 등은 범행 성공시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이 높다는 측면에서 성인범은 사전에 대상을 충분히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2-14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집안	164	22.7	55	25.7	219	23.3
집근처(계단, 엘리베이터 등)	26	3.6	7	3.3	33	3.5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	7	1.0	0.0	0.0	7	0.7
사무실, 직장	9	1.2	4	1.9	13	1.4
차량 내	42	5.8	21	9.8	63	6.7
유흥업소	16	2.2	11	5.1	27	2.9
숙박업소	140	19.3	22	10.3	162	17.3
비디오방(DVD방, PC방)	2	0.3	1	0.5	3	0.3
길거리	171	23.6	29	13.6	200	21.3
야산 등 한적한 곳	21	2.9	0.0	0.0	21	2.2

사건발생장소의 구체적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공원 및 놀이터	11	1.5	3	1.4	14	1.5
편의점 및 슈퍼마켓	51	7.0	46	21.5	97	10.3
금은방	9	1.2	5	2.3	14	1.5
음식점	7	1.0	1	0.5	8	0.9
다방	9	1.2	2	0.9	11	1.2
기타상점	4	0.6	1	0.5	5	0.5
기타	33	4.6	5	2.3	38	4.1
알 수 없음	2	0.3	1	0.5	3	0.3
합계	724	100.0	214	100.0	938	100.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을 조사하였다. 다세대주택(미성년 72.0%, 성년 65.5%)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성인범 출신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아파트(미성년 12.8%, 성년 16.4%), 단독주택(미성년 12.2%, 성년 16.4%), 기타(미성년 0.6%, 성년 1.8%)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보듯이 소년범 출신들이 성인범 출신들보다 옥내에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적었지만, 옥내에서 저지를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이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혼자 거주하거나 친구 등과 사는 젊은 층이 많다는 점에서 소년범 출신들이 이러한 대상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4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사건장소가 옥내인 경우 집안 유형

집안 유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아파트	21	12.8	9	16.4	30	13.7
다세대주택	118	72.0	36	65.5	154	70.3
단독주택	20	12.2	9	16.4	29	13.2
기타	1	0.6	1	1.8	2	0.9
알 수 없음	4	2.4	0.0	0.0	4	1.8
합계	164	100.0	55	100.0	219	100.0

(df=4) $\chi^2 = 3.169$ n.s.

5. 피해자의 특성

가.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를 알아보았다. 여성 1명(미성년 32.2%, 성년 66.8%)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성인범 출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명(미성년 43.2%, 성년 26.2%), 남성 1명 + 여성 1명(미성년 3.3%, 성년 2.3%), 남성 다수(미성년 12.4%, 성년 1.9%), 여성 다수(미성년 3.6%, 성년 1.9%), 남성다수 + 여성 1명(미성년 1.8%, 성년 0%), 남성 1명 + 여성 다수(미성년 0.7%, 성년 0%), 남녀 모두 다수(미성년 0.7%, 성년 0%)의 경우 모두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여성 1명인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높다는 분석은 앞서 사건의 특성에서 성인범이 강도강간이나 성폭력에관한특례법의 비율이 높다는 것과 도구 준비에서 콘돔 준비의 비율이 성인범이 높음, 성적피해가 성인범이 높음과 같은 결과와 관련하여 성인범의 경우 여성 1명을 대상으로 삼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도 수반될 수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2-14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성별과 수

피해자 성별과 수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1명	311	43.2	56	26.2	367	39.3
여성 1명	232	32.2	143	66.8	375	40.1
남성 1명 + 여성 1명	24	3.3	5	2.3	29	3.1
남성 다수	89	12.4	4	1.9	93	10.0
여성 다수	26	3.6	4	1.9	30	3.2
남성다수 + 여성 1명	13	1.8	0.0	0.0	13	1.4
남성 1명 + 여성 다수	5	0.7	0.0	0.0	5	0.5
남녀 모두 다수	5	0.7	0.0	0.0	5	0.5
알 수 없음	15	2.1	2	0.9	17	1.8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8) $\chi^2 = 89.717^{***}$ ***p<.0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을 조사하였다. 10세 미만(미성년 0.8%, 성년 0%), 10세 이상 20세 미만(미성년 19.5%, 성년 15.5%), 30세 이상 40세 미만(미성년 21.6%, 성년 16.9%), 60세 이상(미성년 7.8%, 성년 6.4%)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20세 이상 30세 미만(미성년 22.5%, 성년 30.1%), 40세 이상 50세 미만(미성년 10.2%, 성년 11.4%), 50세 이상 60세 미만(미성년 12.0%, 성년 14.6%)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5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연령

피해자 연령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세 미만	6	0.8	0.0	0.0	6	0.6
10세 이상 20세 미만	150	19.5	34	15.5	184	18.6
20세 이상 30세 미만	173	22.5	66	30.1	239	24.2
30세 이상 40세 미만	166	21.6	37	16.9	203	20.6
40세 이상 50세 미만	78	10.2	25	11.4	103	10.4
50세 이상 60세 미만	92	12.0	32	14.6	124	12.6
60세 이상	60	7.8	14	6.4	74	7.5
알 수 없음	43	5.6	11	5.0	54	5.5
합계	768	100.0	219	100.0	987	100.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을 분석하였다. 내국인(미성년 96.3%, 성년 93.5%)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높았지만, 귀화인 및 외국인(미성년 1.3%, 성년 2.3%)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 국적

피해자 국적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내국인	693	96.3	200	93.5	893	95.6
귀화인 및 외국인	9	1.3	5	2.3	14	1.5
알 수 없음	18	2.5	9	4.2	27	2.9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나. 피해자의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여부를 알아보았다. 신체장애(미성년 0.8%, 성년 0%), 정신장애(미성년 1.0%, 성년 0%), 기타(미성년 0.1%, 성년 0%)의 경우 모두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 출신의 경우 신체적으론 정신적으론 장애를 겪고 있는 비율이 성인범 출신들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5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신체장애

피해자 국적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장애 없음	671	92.7	207	96.7	878	93.6
신체장애	6	0.8	0.0	0.0	6	0.6
정신장애	7	1.0	0.0	0.0	7	0.7
기타	1	0.1	0.0	0.0	1	0.1
알 수 없음	39	5.4	7	3.3	46	4.9
합계	724	100.0	214	100.0	938	100.0

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친인척(미성년 0.1%, 성년 0%), 서로 잘 아는 사이(미성년 2.1%, 성년 1.4%),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미성년 3.5%, 성년 1.4%),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이(미성년 23.1%, 성년 13.6%)의 경우 미성년의 비율이 성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미성년 1.1%, 성년 5.6%), 모르는 사람(미성년 68.8%, 성년 76.6%)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표 2-15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인척	1	0.1	0.0	0.0	1	0.1
서로 잘 아는 사이	15	2.1	3	1.4	18	1.9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	8	1.1	12	5.6	20	2.1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	25	3.5	3	1.4	28	3.0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이	166	23.1	29	13.6	195	20.9
모르는 사람	495	68.8	164	76.6	659	70.6
기타	4	0.6	1	0.5	5	0.5
알 수 없음	6	0.8	2	0.9	8	0.9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7) $\chi^2 = 27.264^{***}$ ***p<.001

6. 사건발생 당시 가해자의 특성

가.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의 혼인 및 자녀 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를 알아보았다. 소년범 출신의 경우 동거자가 있는 경우가 63.5%로 성인범 출신 50.5%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5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여부

가해자 동거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동거자 있음	457	63.5	108	50.5	565	60.5
동거자 없음	192	26.7	90	42.1	282	30.2
알 수 없음	71	9.9	16	7.5	87	9.3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2) $\chi^2 = 18.559^{***}$ ***p<.0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동거인의 유형이 부모(미성년 39.5%, 성년 37.4%), 조부모(미성년 5.2%, 성년 0%), 형제자매(미성년 28.5%, 성년 17.4%), 동료 및 친구(미성년 12.2%, 성년 8.4%), 애인(미성년 6.4%, 성년 4.5%)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거인의 유형이 자녀(미성년 4.7%, 성년 16.1%), 배우자(미성년 2.1%, 성년 13.5%), 기타(미성년 1.4%, 성년 1.9%)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년범 출신들이 부모나 형제자매, 친구나 애인등과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성인범 출신들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범 출신들이 소년범 출신들에 비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소년범 출신의 경우 범죄경력 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면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결혼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표 2-15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동거인의 유형

동거인 유형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부모	302	39.5	58	37.4	360	39.1
조부모	40	5.2	0.0	0.0	40	4.3
형제자매	218	28.5	27	17.4	245	26.6
자녀	36	4.7	25	16.1	61	6.6
배우자	16	2.1	21	13.5	37	4.0
동료 및 친구	93	12.2	13	8.4	106	11.5
애인	49	6.4	7	4.5	56	6.1
기타	11	1.4	3	1.9	14	1.5
알 수 없음	0.0	0.0	1	0.6	1	0.1
합계	765	100.0	155	100.0	920	100.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를 분석하였다. 소년범 출신의 경우 미혼(미성년 80.0%, 성년 65.0%), 동거(미성년 5.1%, 성년 4.7%), 재혼이상(미성년 0.4%, 성년 0%)인 경우가 성인범 출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혼(미성년 3.1%, 성년 14.5%), 별거(미성년 1.1%, 성년

1.9%), 이혼(미성년 5.0%, 성년 10.7%)의 경우 모두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 출신의 경우 10대에 범죄경력이 시작되면서 혼인 경험이 없거나 동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론되며, 앞서 분석한 동거유형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2-156〉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혼인상태

혼인상태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혼	576	80.0	139	65.0	715	76.6
동거	37	5.1	10	4.7	47	5.0
기혼(초혼)	22	3.1	31	14.5	53	5.7
재혼이상	3	0.4	0.0	0.0	3	0.3
별거	8	1.1	4	1.9	12	1.3
이혼	36	5.0	23	10.7	59	6.3
알 수 없음	38	5.3	7	3.3	45	4.8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6) $\chi^2 = 54.569^{***}$ ***p<.001

나. 사건발생당시 가해자의 직업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직업 유형을 알아보았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미성년 0.4%, 성년 0%), 서비스 종사자(미성년 1.8%, 성년 1.4%), 판매 종사자(미성년 1.5%, 성년 0.9%), 농림 및 어업 종사자(미성년 0.3%, 성년 0%), 무직(미성년 71.9%, 성년 67.4%), 학생(미성년 14.9%, 성년 6.5%)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관리자(미성년 0%, 성년 0.5%), 사무종사자(미성년 0.1%, 성년 4.2%), 기능관련 종사자(미성년 0.4%, 성년 7.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미성년 0.4%, 성년 1.9%), 단순노무(미성년 7.2%, 성년 9.3%), 운송 및 운수업(미성년 0%, 성년 0.9)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57〉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직업

가해자 직업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관리자	0.0	0.0	1	0.5	1	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0.4	0.0	0.0	3	0.3
사무종사자	1	0.1	9	4.2	10	1.1
서비스 종사자	13	1.8	3	1.4	16	1.7
판매 종사자	11	1.5	2	0.9	13	1.4
농림, 어업 종사자	2	0.3	0.0	0.0	2	0.2
기능관련종사자	3	0.4	15	7.0	18	1.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3	0.4	4	1.9	7	0.8
단순노무	51	7.2	20	9.3	71	7.7
무직	513	71.9	145	67.4	658	70.9
학생	106	14.9	14	6.5	120	12.9
운송 및 운수업	0.0	0.0	2	0.9	2	0.2
기타	5	0.7	0.0	0.0	5	0.5
알 수 없음	2	0.3	0.0	0.0	2	0.2
합계	713	100.0	215	100.0	928	100.0

다. 사건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알아보았다. 소년범 출신의 경우 3.3%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 성인범 출신 6.1%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58〉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 기초생활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 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그렇다	24	3.3	13	6.1	37	4.0
아니다	684	95.0	201	93.9	885	94.8
알 수 없음	12	1.7	0.0	0.0	12	1.3
합계	720	100.0	214	100.0	934	100.0

(df=2) $\chi^2 = 6.716^*$ *p<.05

7. 공범이 있는 범죄의 특성

가. 공범의 수와 가해자의 역할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를 알아보았다. 단독범행인 경우가 소년범 출신 22.5%, 성인범 66.8%로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59〉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의 유무

공범의 유무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음	162	22.5	143	66.8	305	32.7
있음	557	77.5	71	33.2	628	67.3
합계	719	100.0	214	100.0	933	100.0

(df=1) $\chi^2 = 147.027^{***}$ ***p<.0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를 알아보았다. 공범의 수가 1명(미성년 20.2%, 성년 64.8%)인 경우만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명(미성년 24.0%, 성년 18.3%), 3명(미성년 22.2%, 성년 15.5%), 4명(미성년 18.9%, 성년 0%), 5명-6명(미성년 11.7%, 성년 1.4%), 7명 이상(미성년 3.1%, 성년 0%)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공범의 수가 많아질수록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앞서 소년범 출신이 성인범보다 공범과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성인범 출신의 경우 단독범행을 많이 저지르거나 공범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16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수

공범수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명	112	20.2	46	64.8	158	25.2
2명	133	24.0	13	18.3	146	23.3
3명	123	22.2	11	15.5	134	21.4
4명	105	18.9	0.0	0.0	105	16.8
5명 - 6명	65	11.7	1	1.4	66	10.5
7명 이상	17	3.1	0.0	0.0	17	2.7
합계	555	100.0	71	100.0	626	100.0

(df=8) $\chi^2 = 73.810^{***}$ ***p<.00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을 알아보았다. 주범(미성년 20.6%, 성년 9.9%)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중범(미성년 12.0%, 성년 14.1%), 공동정범(미성년 67.2%, 성년 76.0%) 모두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결과 되었다. 소년범 출신은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면서 전과경력도 많아지고 따라서 범행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하는 주범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2-161〉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가해자의 역할

가해자 역할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주범	115	20.6	7	9.9	122	19.4
종범	67	12.0	10	14.1	77	12.3
공동정범	374	67.2	54	76.0	428	68.2
알 수 없음	1	0.2	0.0	0.0	1	0.1
합계	557	100.0	71	100.0	628	100.0

(df=3) $\chi^2 = 4.850$ n.s.

나. 공범 간의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친구, 선후배(미성년 67.8%, 성년 53.9%), 교도소 친구(미성년 14.1%, 성년 6.6%), 동네사람(미

성년 0.2%, 성년 0%), 모르는 사람(미성년 2.7%, 성년 0%), 기타(미성년 3.0%, 성년 1.3%)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가족 및 친척(미성년 1.1%, 성년 10.5%), 직장동료 및 상사(미성년 0.2%, 성년 5.3%), 온라인으로 만남(미성년 2.0%, 성년 13.2%)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애인 및 부부의 경우 각 각 5.3%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즉, 소년범 출신의 경우 친구나 범죄경력을 통한 교도소 친구와 공범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162〉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공범 간 관계

공범 간 관계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친구, 선후배	434	67.8	41	53.9	475	66.3
가족, 친척	7	1.1	8	10.5	15	2.1
교도소 친구	90	14.1	5	6.6	95	13.3
동네사람	1	0.2	0.0	0.0	1	0.1
직장동료, 상사	1	0.2	4	5.3	5	0.7
애인, 부부	34	5.3	4	5.3	38	5.3
모르는 사람(처음 본 사람)	17	2.7	0.0	0.0	17	2.4
온라인으로 만남	13	2.0	10	13.2	23	3.2
기타	19	3.0	1	1.3	20	2.8
알 수 없음	24	3.8	3	3.9	27	3.8
합계	640	100.0	76	100.0	716	100.0

8. 범죄피해와 사법처리의 결과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를 알아보았다. 조사시 불기소처분 건은 제외하였다. 기소(미성년 97.8%, 성년 94.4%)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기소유예(미성년 0.7%, 성년 1.1%)와 보호관찰선도조건부기소유예(미성년 1.4%, 성년 4.5%)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소년범 출신의 경우 앞서 조사한 죄명에서도 보았듯이 강력범죄의 비율이 더 높았고,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므로 전과횟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기소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표 2-163〉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기소여부

기소여부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소	273	97.8	84	94.4	357	97.0
기소유예	2	0.7	1	1.1	3	0.8
보호관찰소선도 조건부기소유예	4	1.4	4	4.5	8	2.2
합계	279	100.0	89	100.0	368	100.0

(df=2) $\chi^2 = 3.128$ n.s.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를 알아보았다. 소년범 출신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 22.3%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범 출신은 없는 것으로 결과 되었다. 보호관찰(미성년 4.2%, 성년 2.1%), 사회봉사(미성년 2.6%, 성년 2.1%)도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성인범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미성년 0%, 성년 1.0%), 집행유예(미성년 5.5%, 성년 7.2%), 징역(미성년 55.0%, 성년 73.2%), 치료감호(미성년 0.3%, 성년 3.1%), 기타(미성년 4.5%, 성년 5.2%)의 경우 모두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4〉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판결종류

판결종류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벌금	0.0	0.0	1	1.0	1	0.2
집행유예	17	5.5	7	7.2	24	5.9
징역	170	55.0	71	73.2	241	59.4
소년보호사건송치	69	22.3	0.0	0.0	69	17.0
보호관찰	13	4.2	2	2.1	15	3.7
치료감호	1	0.3	3	3.1	4	1.0
사회봉사	8	2.6	2	2.1	10	2.5
기타	14	4.5	5	5.2	19	4.7
알 수 없음	17	5.5	6	6.2	23	5.7
합계	309	100.0	97	100.0	406	100.0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을 살펴보았다. 1년 이상-3년 미만(미성년 19.4%, 성년 15.5%), 무기징역(미성년 1.2%, 성년 0%)의 경우 소년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1년 미만(미성년 1.2%, 성년 1.4%), 3년 이상(미성년 56.5%, 성년 57.7%), 10년 이상(미성년 21.2%, 성년 25.4%)의 경우 성인범 출신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2-165〉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징역형량

징역형량	첫 체포 당시 가해자 연령유형				전체	
	미성년		성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2	1.2	1	1.4	3	1.2
1년 이상-3년 미만	33	19.4	11	15.5	44	18.3
3년 이상	96	56.5	41	57.7	137	56.8
10년 이상	36	21.2	18	25.4	54	22.4
무기징역	2	1.2	0.0	0.0	2	0.8
알 수 없음	1	0.6	0.0	0.0	1	0.4
합계	170	100.0	71	100.0	241	100.0

(df=5) $\chi^2 = 2.100$ n.s.

제7절 국내 연쇄강도범죄의 범죄행위에 따른 유형 분류

1.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 분류

여기에서는 국내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통해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 특성 및 행동 특성, 피해자 관련 특성, 사회인구학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최소 공간 분석(SSA; Smallest Space Analysis; Lingoes, 1973) 기법을 사용하여 연쇄 강도 범행 수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연쇄 범행에 걸친 이들의 범행 수법에 있어서의 일관성의 정도를 분석하고,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분류된 연쇄 강도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배경 특성상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궁극적으로 연쇄 강도 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실무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최소 공간 분석(이하 SSA)은 가상의 지리적 공간에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거리로 표시하는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sional Scaling Procedures) 중

하나이다. SSA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가상의 지리적 공간에서 시각적 표상을 통해 드러내는데, 만약 특정한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통계적 공간에서 이 두 변인을 지칭하는 두 개의 점이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Canter & Heritage, 1990).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의 지리적 공간상에서 가까이 나타나는 점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들, 즉,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변인들을 가리키게 된다. 결국, 범죄 행동 분석에 있어서도 지리적으로 근접한 점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행동 변인들, 다시 말해서 범행에서 함께 자주 등장하는 행동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을 지칭하는 변인들이 가상의 지리적 공간에서 함께 모여 하나의 구획을 형성하면, 이는 여타의 변인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구획들과는 별개인 특정한 범행 유형을 표상하게 된다(김지영·박지선·박현호, 2009; 박지선·최낙범, 2010; 윤정숙, 박지선, 안성훈, 김민정, 2014).

SSA는 이와 같이 여러 변인들의 빈도 및 상관 분석에 기초한 유형 분류 결과를 지리적 공간에서 명확히 시각적으로 제공해주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범행 수법 및 특성에 바탕을 둔 범죄 유형 분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연구에 이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살인이나 방화,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절도, 문지마 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서, 범행 수법에 기반을 둔 범죄자 유형 분류에 최소 공간 분석이 사용되어 왔다(고선영·이수정, 2011; 김경옥·이수정, 2009; 김지선·박지선·최수형, 2009; 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0; 윤정숙 외, 2014). 외국에서는 영국 리버풀대(University of Liverpool)의 수사 심리 센터(Centre for Investigative Psychology)를 필두로 하여, 살인(Bateman & Salfati, 2007; Santtila, Junkkila, & Sandnabba, 2005), 성범죄(Alison & Stein, 2001; Canter, Bennell, Alison & Reddy, 2003), 아동 대상 성범죄(Canter, Hughes, & Kirby, 1998), 방화(Canter & Fritzon, 1998) 등 다양한 범죄에 있어 미국, 호주,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범죄자 유형 분류에 SSA가 사용되어 왔다.

SSA 결과로 드러난 시각적 표상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보여주는지를 지칭하는 지표는 적합도 계수(Amar, 2005; Coefficient of Alienation)인데, 소위 계수라고도 불리는 이 지표는 최소값인 0과 최대값인 1사이에 위치한다. 이 계수가 작을수록 지리적 표상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 값이 0일 때 최상의 적합도를 지칭한다(Canter & Heritage, 1990).

SSA 기법을 이용하여 범행 수법을 탐구한 그간의 선행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계수의 값은 0-0.2 사이이다(박지선·서운정, 2010; Alison & Stein, 2001; Salfati & Taylor, 2006).

더불어, 범죄 현장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 서로 모여서 배치되는, 즉 다시 말해서 상관이 높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변인들이 모여 통계적 공간에서 하나의 지역을 이루고, 이 지역이 여타의 변인들이 구성하는 지역과 구분되어 각기 서로 다른 범행 유형으로 분류되어 위치할 때, 이와 같이 분류되는 정도는 지역성 계수(Amar, 2005)로 나타난다. 지역성 계수(Regionality coefficient) 또한 최소값인 0과 최대값인 1사이에 위치하지만, 적합도 계수와는 반대로 값이 1일 때 범행 수법 변인들이 여러 유형으로 가장 명확히 분류되었음을 가리킨다(Amar, 2005).

이처럼 여기에서는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한 뒤, 연쇄 강도의 범행 수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정도를 분석하고, 연쇄 강도 유형에 따른 범죄자들 간의 배경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SSA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에 위치한 히브루 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고선영·이수정, 2011; 김지영 외, 2009; 윤정숙 외, 2014).

최소 공간 분석(SSA)에 사용되는 범죄 행동 변인들은 범행의 준비 단계부터 범행 개시, 범행 종료 및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범죄자가 보인 광범위한 행동들을 모두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자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방식, 범죄자가 피해를 유인하는 방식, 범행에 걸쳐 피해자를 통제하고 강압하는 방식, 범행 당시 흉기나 도구 등의 사용 여부 및 방법,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위협 혹은 공격 행위, 증거 인멸 외에도 검거 방지를 위한 시도, 또한 범행 후 범죄자의 도주 방식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자의 이처럼 다양한 범행 수법 분석을 통해, 연쇄 강도 범죄 행동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최소 공간 분석에 포함될 변인들을 선별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SSA는 변인들 간의 상관에 바탕을 둔 분석이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너무 높아 변별력이 없거나(60% 이상), 너무 낮아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이 잘 드러나지 않는(10% 이하) 변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하나의 항목(예: 강도범죄의 수법) 아래 여러 범주들(예: 침입강도, 노상강도, 인질강도, 기타

강도 등)이 존재하는 변인들에 있어서, 범주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배타적이어서 상관관계에 바탕을 둔 SSA에는 적절치 않다. 단, 하나의 항목(예: 피해자로의 접근 방법) 아래 여러 범주들(예: 만나자 마자 바로 폭행, 가택 침입, 기만 등)로 묶인 경우일지라도, 수사재판기록 조사 시 복수 응답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모두 분석에 포함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총 26개의 범행 수법 변인이 선별되어 최소 공간 분석(SSA)에 사용되었다(<표 2-166> 참조).

〈표 2-166〉 연쇄 강도 유형 분류를 위한 SSA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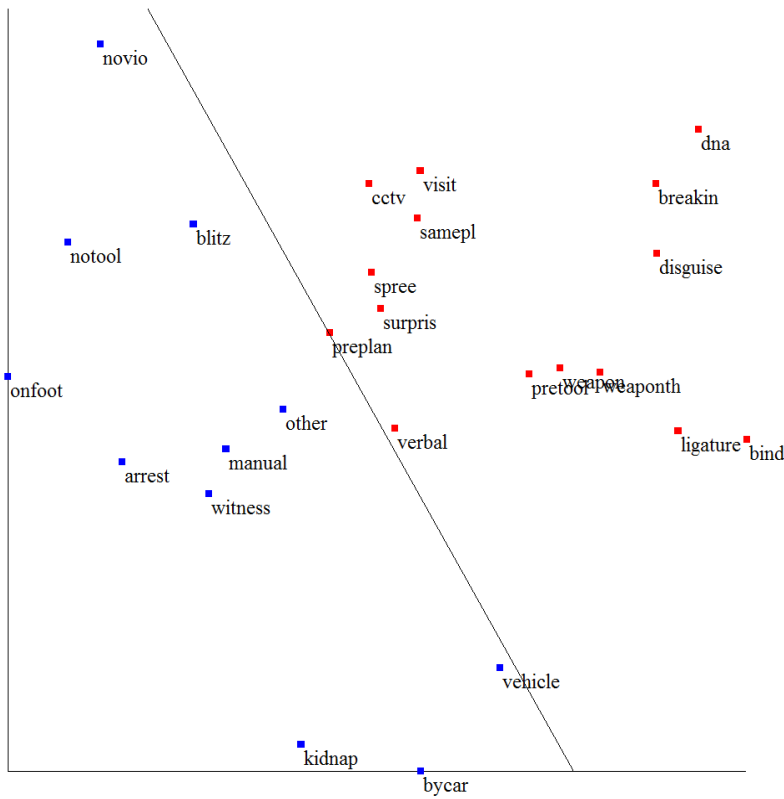
범행 수법	공간 도표상 변인	빈도	%
사건의 경합 여부	other	636	37.1
본 건에서 여러 사건을 연속으로 저지름	spreed	940	54.9
체포 단서 - 제 3의 인물이 신고	witness	336	19.6
체포 단서 - CCTV	cctv	569	33.2
체포 단서 - DNA 증거	dna	190	11.1
현행범 체포	arrest	211	12.3
접근 방법 - 만나자 마자 바로 폭행	blitz	366	21.4
접근 방법 - 가택 침입	breakin	328	19.2
접근 방법 - 납치	kidnap	239	14.0
접근 방법 - 기다렸다가 덮치기	surpris	198	11.6
폭행 특성 - 폭행 없음	novio	364	21.3
폭행 특성 - 흉기로 위협하기	weaponth	481	28.1
폭행 특성 - 손이나 발 등 신체 이용 구타	manual	700	40.9
폭행 특성 - 언어적 폭력	verbal	783	45.7
폭행 특성 - 결박	bind	189	11.0
범행 도구 - 도구 사용 안 함	notool	851	49.7
범행 도구 - 흉기 소지	weapon	566	33.1
범행 도구 - 모자 등 얼굴 가리기 도구	disguise	243	14.2
범행 도구 - 결박 도구	ligature	239	14.0
범행 도구 - 차량 사용	vehicle	271	15.8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 범행 절차 사전 계획	preplan	975	57.0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 범행 장소 사전 답사	visit	260	15.2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 범행 전 도구 준비	pretool	600	35.0
이동 방법 - 차량 이용	bycar	199	11.6
이동 방법 - 도보	onfoot	418	24.4
이동 방법 - 이동 안 함(동일 장소)	samepl	1028	60.0

이상의 변인들을 바탕으로, SSA를 사용하여 범행 수법 간의 상관관계를 가상의 3차원 공간 도표(space diagram)상에 거리로 나타내었다([그림 2-1] 참조). 적합도 계수(Coefficient of Alienation)는 0.18580으로, 분석 결과 드러난 이 지리적 표상이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Canter et al., 1998; Salfati & Taylor, 2006).



[그림 2-1] 범행 특성 SSA 분석 결과

[그림 2-1]에서 각각의 점들은 범행 수법 변인들을 나타낸다. 이전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리적 공간 안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는 두 행동 변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동일한 범죄 사건에서 실제로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변인들이 함께 모여 구성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하나의 범행 유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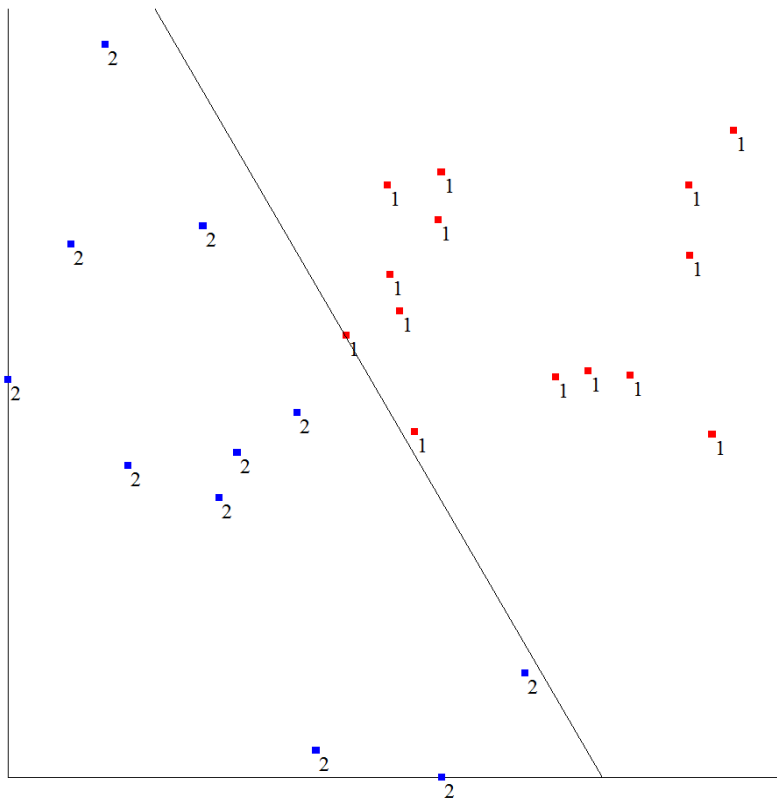


[그림 2-2] 범행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 결과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행 수법은 지리적 도표에서 크게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두 가지의 범죄 유형(계획형과 기회형)으로 분류되었다. 변인들의 분류 정도를 가리키는 지역성 계수는 1.0으로서, 이 범행 수법과 관련된 변인들이 각각의 유형으로 완벽하게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Amar, 2005). <표 2-167>는 두 개의 범죄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범행 수법 변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167〉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 분류

유형	범죄자 범행 수법	공간 도표 변인	Facet number
계획형	본 건에서 여러 사건을 연속으로 저지름	spree	1
	체포 단서 - CCTV	cctv	1
	체포 단서 - DNA 증거	dna	1
	접근 방법 - 가택 침입	breakin	1
	접근 방법 - 기다렸다가 덮치기	surpris	1
	폭행 특성 - 흉기로 위협하기	weaponth	1
	폭행 특성 - 언어적 폭력	verbal	1
	폭행 특성 - 결박	bind	1
	범행 도구 - 흉기 소지	weapon	1
	범행 도구 - 모자 등 얼굴 가리기 도구	disguise	1
	범행 도구 - 결박 도구	ligature	1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 범행 절차 사전 계획	preplan	1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 범행 장소 사전 답사	visit	1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 - 범행 전 도구 준비	pretool	1
	이동 방법 - 이동 안 함(동일 장소)	samepl	1
기회형	사건의 경합 여부	other	2
	체포 단서 - 제 3의 인물이 신고	witness	2
	현행범 체포	arrest	2
	접근 방법 -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	blitz	2
	접근 방법 - 납치	kidnap	2
	폭행 특성 - 폭행 없음	novio	2
	폭행 특성 - 손이나 발 등 신체 이용 구타	manual	2
	범행 도구 - 도구 사용 안 함	notool	2
	범행 도구 - 차량 사용	vehicle	2
	이동 방법 - 차량 이용	bycar	2
	이동 방법 - 도보	onfoot	2



[그림 2-3] 범행 수법 유형 분류 - 계획형(1)과 기회형(2)

가. 계획형

‘계획형’으로 분류된 범행 수법은 [그림 2-3]의 공간 도표 상의 우측에 위치해 있다. 이 유형은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강도 범죄자들을 나타낸다.

이 유형과 관련된 범행 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을 저지르기 전 미리 범행 절차를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며,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한다. 범행 개시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맞닥뜨린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 덮치기도 한다. 범행 도중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적인 폭력을 보이며 피해자 통제

를 위해 흉기로 위협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테이프나 끈 등을 이용해 결박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범행을 저지를 때 모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결박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의 강도 범죄자들은 한 번에 연속으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후에 체포될 때는 CCTV나 DNA 증거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심층면접의 사례들은 대부분이 계획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례 9의 경우는 전형적인 계획형이다.

20대 후반으로 몸집이 뚱뚱하고 둥글고 앳된 얼굴을 하고 있으며 범죄상황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스스럼없이 선선히 응답하였음. 성장과정에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고 하나 부모가 어려서 이혼하고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살고 자신은 할머니와 살았다고 함. 할머니가 실질적으로 보호자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것으로 보임. 아버지와는 일년에 한번 정도 만나고 할머니가 주로 대상자를 양육하였으며 큰아버지가 가끔 경제적 원조를 한 것으로 보임. 학력은 고졸로 학창시절에도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사범당국에 검거된 적이 여러 번 있었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노림. 성매매 여성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 강도 행각을 일삼았음. 성매매업소의 특성상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소를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해 가서 마술을 보여준다고 속여 여성을 결박하고 돈을 훔침. 다른 여성들은 강간하지 않았으나 한 여성은 이쁘고 업소 분위기상 욕구가 생겨 강간했다고 함. 범행의 동기는 직접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적발당해 벌금을 물기 위한 것이었음. 8건 정도의 강도를 5개월 동안에 벌였는데, 일관되게 동일한 수법으로 했으며 공범이 있으나 공범은 망을 봐준 정도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음.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함. 순전히 자신의 실수로 검거되었는데 유심칩을 헛갈려 잘못 끼워 동일한 번호로 다시 다른 업소에 전화를 걸었고, 여러건의 사건발생이후 서로 정보를 나누며 버리고 있던 포주들에 의해 경찰에 넘겨짐. (사례 9)

나. 기회형

‘기회형’으로 분류된 범행 수법은 [그림 2-3]의 공간 도표 상에서 좌측에 나타났다. 이 유형은 범행에 대해 치밀한 사전 준비와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두드러지는 ‘계획형’과는 달리, 강도가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발생하거나 사건 현장에서 범죄

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사건 발생에 있어서의 우발성이나 범죄자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과 관련된 범행 수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행 개시 단계에서는 속칭 썩치기와 같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도 한다. 피해자를 손이나 주먹, 발 등 신체를 이용하여 마구 때리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한다. 범행에 차량이 사용되기도 하나 이외 별다른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폭행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른 종류의 범죄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도중에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의 인물이 신고하여 체포되기도 한다. 심층면접결과 기회형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사례 10과 사례 6 두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말이 어눌하면서 고집이 세고 범행상황에 대해 질문하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회피함. 평범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함. 청소년기에도 비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빠지거나 술담배를 하게 되어 나쁜 길에 들어선 것 같다고 이야기함. 초범인 관계로 소망교도소에 입소하였으나 3건의 범행 이후에 체포되었음. 주로 집근처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후 시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유흥에 빠지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함.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함. CCTV에 찍힌 자신의 사진을 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검거된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함. 범행 동기는 생활비 때문이었는데 갈취한 금액이 거의 없으며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말함. 출소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어떻게 생활할지, 가족들에게 돌아갈 피해 등에 대한 걱정과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주로 토로함. (사례 6)

40대 후반으로 대화중 얼굴을 자주만지고 말꼬리를 흐림. 말이 어눌하고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듯 보이나 범행내용이나 스스로 말하는 성격에 폭력적인 성향이 다분했음. 다년간의 범죄경력과 복역기간 때문에 범행시기와 범행당시 상황을 헛갈려 함. 대상자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 집안이 매우 가난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재혼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음. 13살부터 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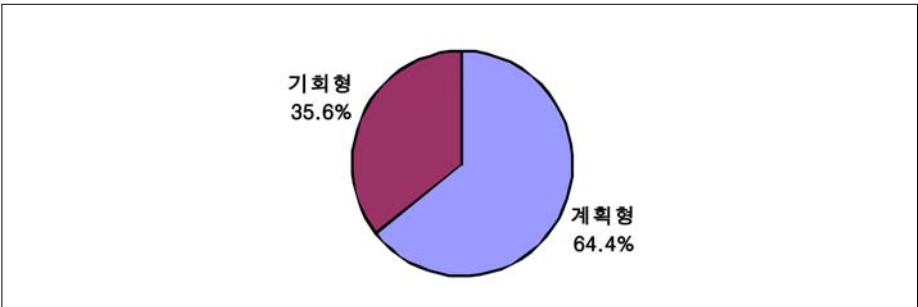
하여 떠돌아다니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임. 자신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면접에 응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판결과 틀린 것인지 말하지는 못함. 청소년기 비행부터 강도와 강도강간 등 본인이 밝힌 범죄만 일곱 차례 이상. 누범으로 인해 중형을 받아 성인 이후에는 교도소에서 지낸 날이 더 많음. 출소 이후에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채수감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음. 강도나 강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등, 치밀하지 못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임. 피해자가 반항하면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끔은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함.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다고 주위에서도 이야기 할 정도로 음주문제가 심각했음. 늘 혼자 생활했는데, 마지막 범행 당시에는 동거녀가 있었음. (사례 10)

이러한 두 개의 유형을 바탕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168> 참조). 즉, 전체 1046건 가운데 계획형이 674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기회형은 전체의 35.6%(37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4] 참조). 즉, 연쇄 강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강도 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68> 연쇄 강도 범죄 사건 유형별 분포

구분		빈도	백분율
범죄행위 유형별	계획형	674	64.4
	기회형	372	35.6
전체		1046	100.0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당수의 연쇄 강도 범죄에서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피해자를 언어적인 폭력이나 흉기 위협, 결박 도구 사용 등의 수단을 통해 제압하려고 한다. 범죄자들이 검거를 피하며 연쇄적으로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범행 이전과 범행 당시, 범행 후에도 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4] 연쇄 강도 범죄 사건 유형 분류

2. 범죄행위 유형별 배경 특성 차이점

앞에서 연쇄 강도 범죄자의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행이 2가지 중 하나의 범죄 유형(계획형 혹은 기회형)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에서는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죄자 특성 및 피해자 특성, 사건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가. 범죄자 특성

1) 범행 당시 연령

우선, <표 2-16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연쇄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행 당시 범죄자의 연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획형 범죄자의 범행 당시 연령이 기회형 범죄자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각각 27.97세, 22.15세).

<표 2-169> 범행 당시 연령

구 분		범행 당시 연령			t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행 수법 유형별	계획형	674	27.97	11.29	8.538***
	기회형	372	22.15	9.08	

*** p <.001

2) 동종 전과 여부

이번에는 연쇄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죄자의 동종 전과 소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17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회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는 반면, 계획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표 2-170> 동종전과 소지여부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동종 전과		전체	(df) χ^2
	그렇다	아니다		
계획형	271(40.7%)	395(59.3%)	666(100.0)	(df=1) 18.369***
기회형	99(27.3%)	264(72.7%)	363(100.0)	

*** p < .001

3) 범행 당시 혼인 상태

이번에는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행 당시 범죄자의 혼인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171> 참조). 그 결과, 기회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거의 절대 다수(91.7%)가 미혼이었던 반면, 계획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 범행 당시 동거나 기혼 상태였던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71> 범행당시 혼인상태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혼인상태						전체	(df) χ^2
	미혼	동거	기혼(초혼)	재혼이상	별거	이혼		
계획형	478 (74.9%)	44 (6.9%)	52 (8.2%)	3 (0.5%)	14 (2.2%)	47 (7.4%)	638 (100.0)	(df=5) 47.351***
기회형	333 (91.7%)	9 (2.5%)	3 (0.8%)	0.0 (0.0%)	3 (0.8%)	15 (4.1%)	363 (100.0)	

*** p < .001

4) 범행 당시 동거인 여부

이번에는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행 당시 범죄자에게 가족이나 배우자 등의 동거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72> 참조). 그 결과, 계획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보다는 기회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동거자가 있었던 경우가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2-172> 범행 당시 동거인 여부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동거인 여부		전체	(df) χ^2
	그렇다	아니다		
계획형	380(62.3%)	230(37.7%)	610(100.0)	(df=1) 19.698***
기회형	264(76.3%)	82(23.7%)	346(100.0)	

*** p < .001

5)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표 2-173>은 범행 수법 유형별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계획형의 경우에는 사건 전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던,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73.2%에 달하였고, 기회형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약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회형의 경우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23.2%),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사이(2.2%)거나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2.5%)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모두 계획형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2-173> 가해자-피해자 관계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전체	(df) χ^2
	친인척	서로 잘 아는 사이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사건 전 상호 작용 없음)	기타		
계획형	1 (0.1%)	10 (1.5%)	11 (1.6%)	20 (3.0%)	138 (20.6%)	491 (73.2%)	0.0 (0.0%)	671 (100.0)	(df=6) 13.134*
기회형	0.0 (0.0%)	8 (2.2%)	9 (2.5%)	8 (2.2%)	85 (23.2%)	252 (68.7%)	5 (1.4%)	367 (100.0)	

* p < .05

이외에, 연쇄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 범죄자들의 직업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나.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성별 및 피해 인원

이번에는 연쇄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로 피해자 특징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피해자의 성별 및 인원에 있어서의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2-174> 참조). 그 결과, 계획형의 경우 피해자가 여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7.4%), 기회형은 반대로 남성 1명인 경우(48.7%)가 가장 많았다. 또한 기회형의 경우 남성 다수를 피해 대상으로 한 경우(19.5%)가 계획형보다 많았던 반면(3.9%), 계획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성 다수였던 경우(4.0%)가 기회형(1.1%)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표 2-174> 피해자 성별 및 인원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피해자 성별								전체	(df) χ^2
	남성 1명	여성 1명	남성1명 +여성 1명	남성 다수	여성 다수	남성다 수+여성 1명	남성1명 +여성 다수	남녀 모두 다수		
계획형	257 (38.4%)	317 (47.4%)	28 (4.2%)	26 (3.9%)	27 (4.0%)	5 (0.7%)	5 (0.7%)	4 (0.6%)	669 (100.0)	(df=7) 1.148***
기회형	175 (48.7%)	97 (27.0%)	3 (0.8%)	70 (19.5%)	4 (1.1%)	9 (2.5%)	0.0 (0.0%)	1 (0.3%)	359 (100.0)	

*** p < .001

2) 피해자 수

다음으로,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75> 참조). 그 결과, 계획형 범죄보다는 기회형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표 2-175〉 피해자수

구 분		피해자 수			t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행 수법 유형별	계획형	668	1.20	.555	4.109***
	기회형	366	1.37	.772	

*** p < .001

3) 피해자 음주 여부

이번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 음주 여부에 있어서의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2-176> 참조). 그 결과, 두 가지 유형 모두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기회형의 경우 피해자가 약간 취하거나 만취 상태였던 비율(총 11.7%)이 계획형(총 2.3%)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76〉 피해자 음주여부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피해자의 음주				전체	(df) χ^2
	음주 안 함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약간 취함	만취		
계획형	587(92.2%)	35(5.5%)	9(1.4%)	6(0.9%)	637(100.0)	(df=3)
기회형	292(83.7%)	16(4.6%)	14(4.0%)	27(7.7%)	349(100.0)	39.808***

*** p < .001

4) 신체적 피해 여부

다음으로, 연쇄 강도 범죄행위 유형별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77> 참조). 그 결과, 기회형의 범행에서 피해자들은 반 이상(58.9%)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반면, 계획형의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7〉 신체적 피해 여부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신체적 피해		전체	(df) χ^2
	아니다	그렇다		
계획형	443(65.7%)	231(34.3%)	674(100.0)	(df=1)
기회형	153(41.1%)	219(58.9%)	372(100.0)	59.166***

*** p < .001

5) 성적 피해

더불어, 유형별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적 피해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회형 범행에서 보다는 계획형 범행에서 피해자들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표 2-178> 참조).

〈표 2-178〉 성적 피해 여부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신체적 피해		전체	(df) χ^2
	아니다	그렇다		
계획형	595(88.3%)	79(11.7%)	674(100.0)	(df=1)
기회형	352(94.6%)	20(5.4%)	372(100.0)	11.261**

** p < .01

이외에, 연쇄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 피해자들의 국적이나 신체 장애, 정신 장애, 금전적 피해나 약물 복용 여부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다. 사건 발생 특성

1) 강도 범죄 수법

이번에는 연쇄 강도 범행 수법 유형별로 사건 발생 특성과 관련된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우선, 강도 범죄 수법에 있어서, 계획형과 기회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179>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형의 경우 침입 강도(61.7%)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노상 강도(18.3%), 성매매 유인(10.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노상 강도(55.2%)가 가장 많았고, 침입 강도가 두 번째(23.9%), 그리고 성매매 유인(10.1%)이 세 번째로 많았다.

〈표 2-179〉 강도범죄의 수법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강도범죄의 수법						전체	(df) χ^2
	침입강도	노상강도	인질강도	기타강도	성매매유인	유인 및 납치		
계획형	414 (61.7%)	123 (18.3%)	8 (1.2%)	35 (5.2%)	73 (10.9%)	18 (2.7%)	671 (100.0)	(df=5) 1.906**
기회형	88 (23.9%)	203 (55.2%)	2 (0.5%)	10 (2.7%)	37 (10.1%)	28 (7.6%)	368 (100.0)	

*** p < .001

2) 공범 유무

다음으로 범행 당시 공범 유무를 보면(<표 2-180> 참조), 계획형(60.8%)보다는 기회형의 범행(83.9%)에서 공범이 있었던 경우가 더 많았다.

〈표 2-180〉 공범유무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공범유무		전체	(df) χ^2
	없음	있음		
계획형	264(39.2%)	409(60.8%)	673(100.0)	(df=1) 59.752***
기회형	60(16.1%)	312(83.9%)	372(100.0)	

*** p < .001

보다 자세히, 이번에는 범행 당시 공범의 수에 있어서의 평균을 범행 수법 유형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계획형 범행에 있어서의 공범 수는 평균 2.57명(표준편차 = 1.605)이었던 반면, 기회형 범행은 평균 3.35명(표준편차 = 1.940)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두 유형별 공범의 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5.871$, $df = 716$, $p = .000$).

3) 강도 범죄 유형

강도 범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표 2-180> 참조), 계획형과 기회형 모두 범행 당시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다(각각 48.7%, 61.0%). 그런데, 계획형에 있어 두 번째로 많았던 경우는 가해자와 피

해자 모두 1명이었던 반면(36.8%), 기희형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러 명이었던 경우가 두 번째로 많게 나타났다(20.4%).

〈표 2-181〉 강도범죄 유형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강도범죄 유형					전체	(df) χ^2
	가해자 피해자 일인	가해자 다수, 피해자 일인	가해자 일인, 피해자 다수	가해자 다수, 피해자 다수	기타		
계획형	246 (36.8%)	326 (48.7%)	19 (2.8%)	78 (11.7%)	0.0 (0.0%)	669 (100.0)	(df=4) 58.589***
기희형	56 (15.3%)	224 (61.0%)	11 (3.0%)	75 (20.4%)	1 (0.3%)	367 (100.0)	

*** p < .001

4) 사건 발생 월과 계절

이번에는 사건이 발생하는 달이나 계절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2-182> 참조), 우선 계획형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이 일 년 내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그 가운데 특히 3-5월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총 32%). 반면, 기희형의 경우에는 2월(17.8%), 5월(13.7%), 12월(11.3%)의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12월-2월 사이에 총 39.6%가 발생하는 등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2〉 사건 발생 월

단위: 명(%)

사건 발생 월	범죄행위 유형		(df) χ^2
	계획형	기희형	
1	52(7.7%)	39(10.5%)	(df=11) 67.959***
2	55(8.2%)	66(17.8%)	
3	74(11.0%)	12(3.2%)	
4	73(10.9%)	20(5.4%)	
5	68(10.1%)	51(13.7%)	
6	47(7.0%)	36(9.7%)	
7	57(8.5%)	27(7.3%)	
8	48(7.1%)	30(8.1%)	
9	44(6.5%)	18(4.9%)	
10	43(6.4%)	18(4.9%)	
11	58(8.6%)	12(3.2%)	
12	53(7.9%)	42(11.3%)	
전체	672(100.0)	371(100.0)	

*** p < .001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사계절로 나누어 범행 수법 유형별 사건 발생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2-183> 참조). 그 결과, 계획형의 경우 계절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봄(3-5월)에 약 세 건 중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특히 겨울(12-2월)에 약 40%에 달할 정도로 범행이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가을(9-11월)에는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눈에 띄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표 2-183〉 발생계절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강도범죄 유형				전체	(df) χ^2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계획형	215 (32.0%)	152 (22.6%)	145 (21.6%)	160 (23.8%)	672 (100.0)	(df=3) 38.304***
기회형	83 (22.4%)	93 (25.1%)	48 (12.9%)	147 (39.6%)	371 (100.0)	

*** p < .001

5) 사건 발생 시간

이번에는 유형별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표 2-184> 참조), 우선 계획형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03시(10.4%), 01시와 04시(각각 8.5%), 그리고 02시(7.3%)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주로 01시에서 04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01시(14.1%), 23시(10.3%), 03시(9.2%), 그리고 자정(8.7%)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계획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간대, 즉 23시에서 01시 사이에 역시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4〉 사건 발생 시간

단위: 명(%)

사건발생시	범죄행위 유형		(df) χ^2
	계획형	기회형	
0	21(3.1%)	32(8.7%)	(df=24) 92.829***
1	56(8.5%)	52(14.1%)	
2	48(7.3%)	22(6.0%)	
3	68(10.4%)	34(9.2%)	
4	56(8.5%)	13(3.5%)	
5	43(6.5%)	5(1.4%)	
6	12(1.8%)	19(5.2%)	
7	15(2.3%)	8(2.2%)	
8	13(2.0%)	6(1.6%)	
9	14(2.1%)	7(1.9%)	
10	19(2.9%)	6(1.6%)	
11	15(2.3%)	3(0.8%)	
12	15(2.3%)	4(1.1%)	
13	24(3.7%)	9(2.4%)	
14	17(2.6%)	13(3.5%)	
15	21(3.2%)	6(1.6%)	
16	10(1.5%)	5(1.4%)	
17	12(1.8%)	11(3.0%)	
18	15(2.3%)	4(1.1%)	
19	19(2.9%)	15(4.1%)	
20	36(5.5%)	13(3.5%)	
21	46(7.0%)	17(4.6%)	
22	36(5.5%)	26(7.1%)	
23	26(4.0%)	38(10.3%)	
전체	657(100.0)	368(100.0)	

*** p < .001

6) 사건 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이번에는 유형별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2-185> 참조), 계획형과 기회형 두 개의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즉, 기회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 부근은 아니지만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38.5%)가 가장 많았던 반면, 계획형의 경

우에는 사건 당시 처음 와 보거나 사전 답사를 했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40.9%)가 가장 많았다.

〈표 2-185〉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전체	(df) χ^2
	(사건 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사건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 인근(학교포함)	(직장, 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전에 한 두 번 와본 적 있음 (사전 답사한 경우 제외)	사건 당시 처 음 와 본 장소 (사전 답사한 경우 포함)		
계획형	133 (21.8%)	4 (0.7%)	178 (29.1%)	46 (7.5%)	250 (40.9%)	611 (100.0)	(df=4) 40.966***
기회형	69 (19.4%)	0.0 (0.0%)	137 (38.5%)	59 (16.6%)	91 (25.6%)	356 (100.0)	

*** p < .001

7) 장소 유형

한편, 범행 장소와 관련해서도 범행 수법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186> 참조). 즉, 계획형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약 반 정도(49.7%)의 사건의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에서 과반 수의 사건(62.8%)이 발생하고, 주거지역에서의 발생 빈도는 계획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35%).

〈표 2-186〉 장소 유형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장소 유형						전체	(df) χ^2
	상업지역	주거지역	야산 및 임야	기타	공장지역	공원		
계획형	312 (46.4%)	334 (49.7%)	8 (1.2%)	10 (1.5%)	6 (0.9%)	2 (0.3%)	672 (100.0)	(df=5) 27.395***
기회형	233 (62.8%)	130 (35.0%)	2 (0.5%)	5 (1.3%)	1 (0.3%)	0.0 (0.0%)	371 (100.0)	

*** p < .001

8) 집안(옥내) 유형

더불어, 범행이 집안에서 발생할 경우 그 옥내 특성에 있어 범행 수법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2-187> 참조), 우선 계획형의 경우 다세대주택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약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 약 반 정도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고(46.2%), 아파트와 단독주택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비율이 그 다음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각각 26.9%).

<표 2-187> 집안(옥내) 유형

단위: 명(%)

범죄행위 유형	집안(옥내) 유형				전체	(df) χ^2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기타		
계획형	25 (12.8%)	145 (74.4%)	23 (11.8%)	2 (1.0%)	195 (100.0)	(df=3) 9.854
기회형	7 (26.9%)	12 (46.2%)	7 (26.9%)	0.0 (0.0%)	26 (100.0)	

* p < .05

이외에, 유형별 범죄자들의 범행 당시 음주 여부, 약물 복용 여부, 징역 형량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연쇄강도 범죄행위 유형의 연속성

이제까지 두 가지 범행 수법 유형을 바탕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 사건 각각의 주제 유형을 분류하고, 범행 수법 유형별로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사건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연쇄 강도 범죄자의 범행 수법이 여러 사건에 걸쳐 얼마나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쇄 강도범 각각이 저지른 범행의 유형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조사하였다.

우선, 총 357명의 연쇄 강도범 각각이 저지른 범행의 수를 살펴보았다(<표 2-188> 참조). 그 결과, 이들이 저지른 연쇄 범행의 수는 1부터 1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범행 수가 1인 경우는 범죄자가 두 건 이상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연쇄 강도 범죄자에는 해당하나, 기록조사 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데이터에는 오직

한 개의 사건만 포함된 경우를 일컫는다).

〈표 2-188〉 각 연쇄 강도 범죄자가 저지른 범행 횟수 분포

범행 수	빈도	%
1	72	6.9%
2	260	24.9%
3	183	17.5%
4	176	16.8%
5	95	9.1%
6	30	2.9%
7	63	6.0%
8	40	3.8%
9	36	3.4%
10	20	1.9%
11	22	2.1%
12	36	3.4%
13	13	1.2%
전체	1046	100.0

이 가운데 연쇄 범행 수가 1인 범죄자들($N = 72$)을 제외하고, 총 285명의 연쇄 강도범 각각이 저지른 범행의 유형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조사하였다. 즉, 총 5건의 연쇄 강도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4건의 범행 유형이 ‘계획형’으로 분류되고 1건이 ‘기회형’으로 분류되었다면, 이 연쇄 강도의 범행 일관성은 80%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각 연쇄 강도 범죄자의 범행 연속성을 분석한 결과, 총 285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연쇄 강도 범행의 유형 연속성은 최저 수준이 50.0%, 최고 수준이 100.0%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87.1%(표준편차 = 19.3%)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평균은 통계적으로 우연 수준인 50%보다 훨씬 유의미하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 = 75.738$, $df = 284$, $p = .00$). 그러나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 사건 각각의 주제 유형을 애초에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범행 유형 연속성은 최저 수준이라도 50.0% 이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범행 연속성에 있어 50%를 훨씬 넘어선 75%를 기준으로 하여,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의 유형 연속성이 이보다 유의미하게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도 역시 연쇄 강도 범죄자의 범행 연속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75.519$, $df = 284$, $p = .00$).

<표 2-189>는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보인 범행 유형 연속성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우선 연쇄적인 범행에 걸쳐 완벽한 주제 유형 연속성(100%)을 나타낸 범죄자들이 총 285명 중 186명인 6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비율을 보면, 전체 연쇄 강도 범죄자 가운데 74.4%에 달하는 범죄자들이 75% 이상의 범행 연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연쇄 강도범들 중 약 4분의 3 정도는 여러 건의 범행에 걸쳐서도 계속적으로 일관적인 범행 유형을 고수하는 결과가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89> 연쇄 강도 범죄자 범행 연속성 분포

연속성(%)	빈도	비율(%)	누적 비율(%)
100	186	65.3	65.3
92.3	1	0.4	65.6
90	1	0.4	66.0
88.9	2	0.7	66.7
87.5	3	1.1	67.7
85.7	1	0.4	68.1
83.3	3	1.1	69.1
81.8	1	0.4	69.5
80	3	1.1	70.5
75	11	3.9	74.4
71.4	1	0.4	74.7
66.7	20	7.0	81.8
62.5	1	0.4	82.1
60	7	2.5	84.6
57.1	4	1.4	86.0
50	40	14.0	100.0
Total	285	100.0	100.0

본 연구에서는 앞서 <표 2-188>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소 2건에서 최대 13건을 저지른 연쇄 강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연속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만약

적은 수의 연쇄 범행만을 저지른 범죄자들만이 높은 범행 연속성을 드러낸다면, 이러한 높은 연속성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연쇄적으로 저지른 여러 범행에 걸쳐 완벽한(100%) 연속성을 나타낸 186명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 각각이 저지른 총 범행 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쇄적인 범행에 있어 완벽한(100%) 유형 연속성을 나타낸 186명의 범죄자들이 각각 저지른 연쇄 범행 수는 최소 2건에서 최대 12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2-190> 참조). 그 중 두 건의 연쇄적인 범행만을 저지른 연쇄 강도 범죄자가 총 97명으로 그 비율이 52.2%를 차지하였고, 그 보다 더 수가 많은 연쇄 범행(3건-12건)을 저지른 연쇄 강도 범죄자의 비율도 그에 못지않은 것(47.8%)으로 나타나, 높은 행동 연속성을 드러낸 강도 범죄자들이 단지 적은 수의 연쇄적인 범행만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2-190> 완벽한 범행 연속성(100%)을 보인 연쇄 강도 범죄자의 총 범행 수

범행 수	빈도	비율(%)	누적 비율(%)
2	97	52.2	52.2
3	42	22.6	74.7
4	27	14.5	89.2
5	9	4.8	94.1
6	1	0.5	94.6
7	3	1.6	96.2
8	1	0.5	96.8
9	2	1.1	97.8
10	1	0.5	98.4
11	1	0.5	98.9
12	2	1.1	100.0
Total	186	100.0	

기록조사표에 나타난 완벽한(100%) 유형 연속성을 보인 범죄자 A형

A는 총 12건의 연쇄 강도 범행을 저지른 17세의 범죄자로, 모든 범행이 기회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동종 전과는 없으며, 중학교를 중퇴하고 범행 당시 무직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던 중이었다. 사건 전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었던, 낯선 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거의 모든 범행에서 친구 관계인 3-4명의 공범이 있었으며, 대부분 제3의 인물이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범행 장소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 근처는 아니지만 거주지에서 3-10km 이내에 위치한 친숙한 곳이었으며, 상업 지역 내 숙박업소에서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모든 범행에서 피해자는 남성 1명으로,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음주 등 놀이로 유인하거나 기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거의 모든 범행에서 도구는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아예 피해가 없었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4세에 처음으로 체포된 이후 총 체포 횟수는 4회이고, 절도 등 전과 3회이며,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더불어, 연쇄 범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범행 연속성(75% 이상)이 드러난 212명의 범죄자들(총 285명 중 74.4%) 각자가 저지른 총 범행의 수를 조사하였다(<표 26> 참조). 그 결과, 2건의 연쇄 범행만을 저지른 강도 범죄자의 비율은 45.8%로 나타났고, 그 보다 더 많은 연쇄 범행(3건-13건)을 저지른 연쇄 강도 범죄자의 비율은 54.2%에 달하였다. 즉, 높은 연속성을 보이는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단순히 적은 수의 범행만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표 2-191> 비교적 높은 범행 연속성(75% 이상)을 보인 범죄자들의 범행 수

범행 수	빈도	비율(%)	누적 비율(%)
2	97	45.8	45.8
3	42	19.8	65.6
4	38	17.9	83.5
5	12	5.7	89.2
6	3	1.4	90.6
7	4	1.9	92.5
8	4	1.9	94.3
9	4	1.9	96.2
10	2	0.9	97.2
11	2	0.9	98.1
12	3	1.4	99.5
13	1	0.5	100.0
Total	212	100.0	

기록조사표에 나타난 비교적 높은(92.3%) 유형 연속성을 보인 범죄자 B형

B는 총 13건의 연쇄 강도 범행을 저지른 46세의 범죄자로, 이 가운데 12개의 범행이 계획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며, 범행 당시 무직으로 애인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던 중이었다. 모두 피해자가 신고하고, DNA 증거 등을 통해 체포되었다. 모든 범행에서 공범 없이 단독으로 사건 전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었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거의 모든 범행에서 모자 등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를 써서 가택을 침입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보이고, 때로는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거의 모든 범행에서 피해자는 여성 1명으로, 대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연령대는 10대, 20대, 30대 등으로 다양하였다. 범행 장소는 모두 자신의 거주지에서 10km 이상 - 50km 미만 사이에 위치한 곳이었고, 주거 지역 내 다세대주택에서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 B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성으로, 16세에 처음으로 체포된 이후 총 체포 횟수는 6회이고, 이 가운데 강도범죄로 인해서는 2번 체포된 적이 있다. 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전과 5범(실형 전과는 4회)이며,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 절도로 징역 처분 2회, 강도로 징역 처분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는, 연쇄 범행에 있어 비교적 높은 범행 연속성(75% 이상)을 나타낸 212명의 범죄자들(총 285명 중 74.4%)과 상대적으로 낮은 범행 연속성(75% 미만)을 나타낸 73명의 범죄자들(총 285명 중 25.6%) 각각이 저질렀던 총 범행의 수에 있어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비교적 높은 범행 연속성의 범죄자들이 평균 3.48건(표준편차 = 2.22)의 범행을 저질렀던 반면, 비교적 낮은 범행 연속성의 범죄자들이 평균 3.25건(표준편차 = 1.60)의 연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범행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두 개의 집단 간에 저지른 총 연쇄 범행 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 = .814$, $df = 283$, ns).

이번에는 고 일관성 집단(범행 일관성 75% 이상)에 속하는 212명의 범죄자들과 저 일관성 집단(범행 일관성 75% 미만)에 속하는 73명의 범죄자들 사이에 가해자 배경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2-192> 참조). 그 결과, 고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과 저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전과나 체포 횟수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저 일관성 집단의 범죄자들보다 총 전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이중 전과 및 실형 전과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총 체포 횟수 또한 고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저 일관성 집단의 범죄자들보다 약 1.5배 가량 더 많게 나타났다.

〈표 2-192〉 고 일관성 집단과 저 일관성 집단 간 차이

구 분		총 전과			t
		명 수	평균	표준편차	
총 전과	고 일관성 집단	212	4.67	5.31	2.665**
	저 일관성 집단	73	2.89	3.62	
동종 전과	고 일관성 집단	212	.49	.890	1.600
	저 일관성 집단	73	.30	.720	
이종 전과	고 일관성 집단	212	4.20	5.062	2.623**
	저 일관성 집단	73	2.53	3.283	
실행 전과	고 일관성 집단	212	1.36	2.637	3.041**
	저 일관성 집단	73	.37	1.550	
총 체포 횟수	고 일관성 집단	212	6.20	7.235	2.381*
	저 일관성 집단	73	4.08	3.992	
강도 범죄 체포 횟수	고 일관성 집단	212	.60	1.086	1.084
	저 일관성 집단	73	.36	.752	
첫 체포 연령	고 일관성 집단	188	17.77	5.287	.448
	저 일관성 집단	61	17.43	4.68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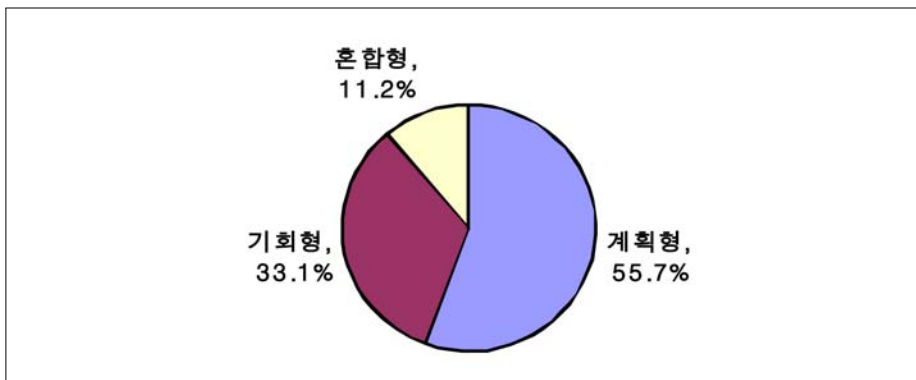
이외에, 고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과 저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 사이에 국적이나 교육 정도, 신체 장애 및 정신 장애 여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4. 유형별 범죄자 배경 특성 차이점

앞에서 연쇄 강도 범죄자의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행이 2가지 중 하나의 범죄 유형(계획형과 기회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분류된 범행 유형에 따라, 이번에는 총 357명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을, 각자가 여러 개의 범행에서 보인 범행 수법 유형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 앞서 <표 2-188>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저지른 연쇄 범행의 수가 1인 경우, 즉 두 건 이상의 강도 범행을 저지른 연쇄 강도 범죄자에는 해당하나 기록조사 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데이터에는 오직 한 개의 사건만 포함된 경우에는,

기록된 사건의 유형을 주된 범죄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총 357명의 연쇄 강도 범죄자를 분류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유형은 계획형으로 과반수인 55.7%에 달하는 199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회형은 총 118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은 혼합형이 40명(11.2%)이었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연쇄 강도 범죄자 주된 유형별 비율 - 계획형, 기회형, 혼합형

이후, 계획형과 기회형, 그리고 혼합형 유형 간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상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 총 전과 수

우선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범죄자의 총 전과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93> 참조). 그 결과, 혼합형에 비해 계획형과 기회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총 전과 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후비교분석 결과 계획형과 기회형 범죄자들 간의 총 전과 수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93〉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범죄자 총 전과 수

구 분		총 전과 수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99	5.48	6.15	5.587**	1>3, 2>3
	2. 기회형	118	5.25	4.99		
	3. 혼합형	40	2.32	2.89		
전체		357	5.05	5.58		

** p < .01

나. 동종 전과

다음으로,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로 연쇄 강도 범죄자의 동종 전과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94> 참조). 그 결과,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동종 전과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기회형, 혼합형의 순이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계획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 < .05), 계획형과 기회형, 그리고 기회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총 동종 전과 수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94〉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동종 전과 수

구 분		동종 전과 수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99	.72	1.03	4.412*	1>3
	2. 기회형	118	.53	.81		
	3. 혼합형	40	.28	.64		
전체		357	.61	.93		

* p < .05

다. 이종 전과

덧붙여,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로 연쇄 강도 범죄자의 이종 전과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95> 참조). 그 결과, 혼합형에 비해 계획형과 기회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총 이종 전과 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후비

교분석 결과 계획형과 기회형 범죄자들 간의 총 이종 전과 수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표 2-195〉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이종 전과 수

구 분		이종 전과 수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99	4.73	5.87	4.883**	1>3, 2>3
	2. 기회형	118	4.76	4.70		
	3. 혼합형	40	2.00	2.68		
전체		357	4.43	5.29		

** p < .01

라. 실행 전과

다음으로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로 연쇄 강도 범죄자의 실행 전과 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96〉 참조). 그 결과,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실행 전과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기회형, 혼합형의 순이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계획형과 기회형 범죄자들 간의 차이가 드러났으며($p < .05$), 계획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차이 또한 유의미했다($p < .01$). 그러나 기회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총 실행 전과 수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96〉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실행 전과 수

구 분		실행 전과 수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99	1.87	2.99	8.643***	1>2, 1>3
	2. 기회형	118	.99	2.42		
	3. 혼합형	40	.20	.72		
전체		357	1.39	2.70		

*** p < .001

마. 총 체포 횟수

이번에는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로 연쇄 강도 범죄자의 총 체포 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97> 참조). 그 결과, 혼합형에 비해 계획형과 기회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총 체포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후비교 분석 결과 계획형과 기회형 범죄자들 간의 총 체포 횟수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97〉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총 체포 횟수

구 분		체포 횟수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99	7.10	8.11	4.828**	1>3, 2>3
	2. 기회형	118	6.83	6.09		
	3. 혼합형	40	3.32	3.05		
전체		357	6.59	7.16		

** p < .01

바. 강도 범죄 체포 횟수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로 이번에는 연쇄 강도 범죄자의 강도 범죄 체포 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2-198> 참조). 그 결과,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기회형, 혼합형의 순이었다. 사후비교 분석 결과 계획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 < .05), 계획형과 기회형, 그리고 기회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강도 범죄 체포 횟수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98〉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강도 범죄 체포횟수

구 분		강도 범죄 체포횟수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99	.84	1.21	4.718*	1>3
	2. 기회형	118	.61	.89		
	3. 혼합형	40	.33	.69		
전체		357	.71	1.08		

* p < .05

사. 첫 체포 연령

마지막으로,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로 연쇄 강도 범죄자의 첫 체포 연령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4> 참조). 그 결과,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첫 체포 연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기회형, 혼합형의 순이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계획형과 기회형 범죄자들 간 차이가 유의미했으며($p < .01$), 계획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차이 또한 유의미했다($p < .05$). 그러나 기회형과 혼합형 범죄자들 간의 첫 체포 연령에 있어서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2-199〉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 첫 체포 연령

구 분		첫 체포 연령			F	Scheffe
		명 수	평균	표준편차		
범죄행동유형	1. 계획형	178	18.59	5.51	6.883**	1>2, 1>3
	2. 기회형	108	16.68	4.04		
	3. 혼합형	34	16.35	2.21		
전체		320	17.71	4.88		

** $p < .01$

이외에, 주된 범행 수법 유형별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국적이나 교육 정도, 신체 장애 및 정신 장애 여부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결과요약 및 제언

김지영 · 김지연 · 박지선

제3장

결과요약 및 제언

제1절 결과요약

1. 연쇄강도범죄의 전반적 특성

연쇄강도범죄자들의 연령을 보면 사건 당시 1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가 많은 빈도를 보였고, 학력은 고등학교중퇴나 졸업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첫 체포 당시 연령대를 보면 10대가 가장 많아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쇄강도범죄자의 총 전과 횟수를 살펴보면, 6-10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과처분결과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징역처분을 받은 경우가 비연쇄강도범죄자와 비교해 연쇄강도범죄자에게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6범 이상의 중누범자가 많은 것에 비해,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초범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연쇄강도범죄자들이 비연쇄강도범죄자들에 비해 징역처분을 받을 정도의 중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연쇄강도범죄자의 전과분포를 보면 강도와 절도범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절도범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종전과를 가진 연쇄강도범죄자의 비율은 75.4%에 이르고 비연쇄강도범죄자에서는 5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횟수도 비연쇄강도범죄자는 2.7%만이 체포경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쇄강도범죄

자는 41.7%가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경력이 있었다. 즉, 연쇄강도범죄자들은 강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강도범죄로는 초범이지만, 전과경력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연쇄강도범죄사건의 특성을 보면, 가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연쇄강도범죄자의 분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건 죄명을 보면,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특수강도관련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지만,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강도상해관련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연쇄강도범죄자들은 범행에 도구를 준비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연쇄강도범죄자들은 범행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행위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도행위의 폭행특성에서 흉기로 위협하기는 연쇄강도범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신체를 이용한 구타의 경우 비연쇄강도범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로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연쇄와 비연쇄 모두에서 금전적 피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연쇄의 경우 신체적 피해의 비율도 42.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의 분석결과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범행도구의 차이에서도 비연쇄강도범죄보다 연쇄강도범죄에서 도구사용과 흉기소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사전 계획 여부에서도 연쇄강도범죄자가 비연쇄강도범죄자에 비해 도구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분석결과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건의 경합여부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사건이 경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종경합과 이종경합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종경합인 경우 절도나 주거침입절도와 주로 경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경합이 아닌 경우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합인 경우 이종경합의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연쇄강도범죄에 비해 폭행범죄 관련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건발생 시간대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와 비연쇄강도범죄 모두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연쇄강도범죄자의 범행당시 음주상태를 보면, 비연쇄강도범죄자들이 연쇄강도범죄자들에 비해 음주를 한 상태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수법에서는 연쇄강도범죄는 침입강도가 가장 많았지만, 비연쇄강도범죄는 노상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연쇄강도범죄자들이 비연쇄강도범죄자에 비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즉,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침입강도의 경우 연쇄강도범죄의 비율이 높은 반면, 비연쇄강도범죄자들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노상강도에 더 많이 연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건발생 장소의 특성에서 연쇄강도범죄가 집안이나 상점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연비연쇄강도범죄는 길거리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결과로도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주거부정 여부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자는 비연쇄강도범죄자에 비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주거부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발생장소와의 관계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자는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에서 범행을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비연쇄강도범죄자는 거주지 인근이나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발생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 분석 결과와도 관련이 된다. 즉,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 주거지역과 10km 이상-50km 미만의 중거리 범위 이내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지만, 비연쇄강도범죄는 동일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3km 이상-10km 미만의 단거리 지역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즉,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주거지역 주변 혹은 인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장소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와 비연쇄강도범죄 모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이나 직장 주변 등 친숙한 장소에서 주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강도범죄의 피해자 특성을 보면, 연쇄강도범죄의 주된 범행 대상은 20세 이상-30세 미만이었지만, 비연쇄강도범죄는 10세 이상-2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연쇄강도범죄는 초면인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의 발생빈도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범행당시 범죄자 특성을 보면, 비연쇄강도범죄자에 비해 연쇄강도범죄자는 동거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고, 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도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이었던 비율도 24.4%로 나타났다. 공범 관계를 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가 연쇄와 비연쇄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비연쇄가 연쇄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징역처분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특히 가해자의 연령대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가해자의 특성에서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대가 10대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연쇄강도범죄자의 연령유형에 따른 특성

연쇄강도범죄자를 연령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령유형에 따른 분석은 성년가해자와의 비교를 통해 미성년 연쇄강도범죄자들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 나타난 미성년연쇄강도범죄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가해자 중 신체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한명도 없었으나, 정신장애를 가진 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과를 보면 절도범죄의 비율이 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처분결과를 보면 대부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징역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명을 보면, 특수강도, 강도상해의 비율이 약 82%인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들의 범행이 내용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중경합 내용을 보면, 폭행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당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소년범의 특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미성년가해자들은 범행당시 대부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피해자를 기만하거나 협박, 유인 등의 방법으로 주로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 연령유형에 따른 피해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성인범들은 여성 1명을 주로 대상으로 삼은 반면, 소년범들은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쇄강도범죄자를 첫 체포 당시 연령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성인범 출신 가해자와의 비교를 통해 소년범 출신 연쇄강도범죄자들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죄명을 보면, 특수강도관련과 강도상해의 비율이 약 70%인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 출신들의 강도범죄가 폭력적이고 흥기를 수반하는 위험한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인범 출신들의 죄명 가운데 강도강간과 성폭력범죄특례법 관련 비율이 12.4%이며 소년범 출신들이 이러한 범죄와 관련되는 비율이 7.3%에 불과하다. 이는 성인범 출신들의 강도범행 과정에서 성범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성인범 출신들의 경우 분석결과를 보면, 피해내용 중 성적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12.3%로 소년범 5.3%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해자 유형도 여성 1명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범 출신이 성범죄 관련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경합여부를 보면 소년범 출신의 경우 경합범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소년범 출신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소년범 출신의 경우 범행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역시 음주를 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들의 경우 강도범죄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상대를 기만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건직전 피해자와의 상호작용을 보면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을 하거나, 손님 등으로 위장하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죄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들이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범행 경험이 많고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어 범행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을 보여준다. 또한 10대부터 범죄 지향적 가치관에 노출되면서 상대를 속이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소년범 출신의 범행수법을 보면 침입강도와 노상강도가 주를 이루지만, 성인범 출신의 경우 다수가 침입강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장소를 보면 소년범 출신들이 길거리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르는 반면, 성인범 출신들은 집안이나 점포 등에서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적 이득을 생각해보았을 때 길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노상강도의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기대되는 금전적 이득이 높지 않다. 그러나 침입강도의 경우 대상을 이미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범행에 성공하게 되면 많은 금전적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년범 출신들보다 성인범 출신들이 강도범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도행위의 폭행특성을 보면 소년범 출신 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 협박 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신체적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년범 출신들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35.7%로 성인범 출신들이 13.8%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범 출신들의 경우 범행에 착수하기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론되고, 따라서 사전에 흉기, 장갑, 모자, 결박도구 등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을 보면, 성인범 출신들은 이동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71%이지만, 소년범 출신들의 경우 도로나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약 40%정도로 조사되었다.

소년범 출신과 성인범 출신의 가장 큰 차이는 공범관계에서 나타난다. 소년범 출신은 공범이 있는 비율이 77.5%에 이르지만, 성인범 출신은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수를 보더라도 소년범 출신의 경우 공범 수가 1명부터 5명 이상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성인범 출신의 경우 공범 수가 1명인 경우에 약 65%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년범 출신의 경우 10대부터 범죄경력을 갖게 되면서 성인범에 비해 범죄 지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더 많고, 청소년범죄가 집단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러한 범행 특성을 시간이 지나도 유지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가해자의 역할을 보면 소년범 출신의 경우 주범이거나 공동정범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년범 출신들의 경우 일찍부터 범죄경력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범죄경험을 통해 범행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들의 공범 간 관계도 조사하였는데, 친구나 선후배, 교도소 친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 출신들이 성인범 출신보다 친구나 선후배 혹은 교도소 친구들과 공범관계를 많이 맺는 것은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면서 범죄지향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또래나 교도소 친구들과 공모하여 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범 출신의 경우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과 공범관계를 맺는 경우가 친구 및 선후배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인범 출신들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까지 사회인으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맺고

있던 인간관계에서는 공범을 찾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온라인 등을 통해서 공범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러한 점에서 성인범 출신들이 단독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 결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쇄강도범죄자의 범죄행위 유형에 따른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의 준비 단계부터 범행 개시, 범행 종료 및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보인 광범위한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유형을 분류한 뒤, 연쇄 강도의 범죄행위 유형에 있어서의 일관성 정도를 분석하고, 연쇄 강도 유형에 따른 범죄자들 간의 배경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총 26개의 범죄행위 유형 변인을 바탕으로 SSA를 사용하여 범죄행위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지리적 공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쇄 강도 범죄자 범죄행위 유형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계획형과 기회형의 두 가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계획형’은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에 범행 절차를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며,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 범행 개시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사이 덮치기도 한다. 범행을 저지를 때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향이 있고, 흉기를 소지하거나 결박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한 번에 연속으로 여러 건의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으며, 후에 체포될 때는 CCTV나 DNA 증거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회형’의 경우에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두드러지는 ‘계획형’과는 달리, 사건 발생에 있어서의 우발성이나 범죄자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관련된 범죄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도보로 이동하기도 한다. 별다른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폭행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른 종류의 범죄가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행 도중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제3의 인물이 신고하여 체포되기도 한다.

이상의 두 개의 유형을 기준으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를 분류한 결과, 전체 1046건 가운데 계획형이 674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고, 기회형은 전체의 35.6%(372건)로 나타났다. 즉,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강도 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데,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 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연쇄적인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 얼굴을 가리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잡히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행이 2가지 중 하나의 범죄 유형(계획형 혹은 기회형)으로 분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범죄행위 유형 유형별로 범죄자 특성 및 피해자 특성, 사건 발생 특성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계획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기회형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사건 전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던 낯선 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자가 여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기회형의 범죄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강도 범죄 수법 가운데 침입 강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상 강도, 성매매 유인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명인 경우가 많았다. 사건 발생이 일 년 내내 고르게 분포하며, 그 중에서는 3-5월에 약 세 건 중 한 건이 발생할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간은 주로 01시에서 04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건 당시 처음 와 보거나 사전 답사를 했던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의 발생하며,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약 4분의 3에 달하는 가장 많은 범행이 발생한다.

반대로 기회형의 경우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미혼이고, 범행 당시 가족 등 동거자가 있었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혹은 서로 잘 아는 사이거나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계획형보다 더 많았다. 피해자가 남성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계획형 범죄보다는 피해

자의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았으며, 피해자가 약간 취하거나 만취 상태였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피해자들의 과반수가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 가운데 노상 강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침입 강도, 성매매 유인 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었던 경우가 계획형 범행보다 더 많았으며, 공범의 수 또한 평균적으로 더 많았다. 가해자는 여러 명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1명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러 명이었던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범행이 2월, 5월, 12월의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겨울(12-2월)에 약 40%가 발생하였으며, 가을(9-11월)에는 상대적으로 발생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 시간은 계획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간대, 즉 23시에서 01시 사이에 약 3분의 1정도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직장 부근은 아니지만 친숙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상업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의 발생하며, 약 반 정도가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연쇄 강도 범죄자의 범죄행위 유형의 일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총 285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연쇄 강도 범행 유형 연속성의 평균은 87.1%로, 우연수준인 50%보다, 그리고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인 75% 보다는 훨씬 유의미하게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쇄적인 범행에서 완벽한(100%) 주제 유형 연속성을 나타낸 범죄자들이 65.3%에 달하고, 전체 연쇄 강도 범죄자 가운데 74.4%에 달하는 범죄자들이 75%이상의 범행 연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쇄적인 범행에서 완벽한 유형 연속성을 보인 범죄자들이 저지른 연쇄 범행 수는 최소 2건에서 최대 12건으로 다양하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높은 범행 연속성(75% 이상)을 보인 범죄자들 가운데 3건에서 13건 사이의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54.2%로 나타나, 높은 연속성을 드러낸 강도 범죄자들이 단지 적은 수의 범행만을 저지른 것은 아님이 드러났다. 한편, 범행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두 개의 집단 사이에 저지른 총 연쇄 범행 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고 일관성 집단(범행 일관성 75% 이상)과 저 일관성 집단(범행 일관성 75% 미만) 사이에 가해자 배경 특성에 있어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고 일관성 집단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저 일관성 집단의 범죄자들보다 총 전과 수, 이종 전과 수, 실행 전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체포 횟수 또한 약 1.5배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총 357명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을 주된 범죄행위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계획형이 전체의 55.7%, 기회형은 33.1%, 그리고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혼합형이 11.2%였다. 즉, 연쇄 강도 범죄자를 주된 범죄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범행 절차 사전 계획 및 범행 장소답사,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등 치밀함을 보이고, 피해자를 여러 수단을 통해 제압하는 계획형의 범죄자들이 가장 많았다. 더불어, 이 세 가지 유형 간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상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혼합형에 비해 계획형과 기회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총 전과 수 및 총 이종 전과 수, 총 체포 횟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특히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수,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고, 첫 체포 연령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연쇄강도범죄자의 중요한 특성은 사건의 계획성과 고의성이다. 연쇄강도범죄의 경우 죄명을 보면, 특수강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폭행특성에서도 흉기로 위협하기가 많았으며, 범행수법에 있어 침입강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 계획 여부에서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한 비율이 비연쇄범죄와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특성을 보면, 범행 당시 연령을 보면, 연쇄강도범죄자는 20대 이상-30대 미만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연쇄강도범죄의 경우 10대 이상-20대 미만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경력을 보면, 비연쇄강도범죄자는 초범인 경우가 많았지만, 연쇄강도범죄자는 6범 이상의 중누범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연쇄강도범죄자는 다양한 전과경험을 근거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범행을 저지름을 알 수 있고, 범행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여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불필요한 신체적 폭행의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비연쇄강도범죄자의 경우 초범의 비율이 높고 노상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발적이고 충동

적으로 범행을 많이 저지르며 사전에 계획을 하지 않고 저지르기 때문에 범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잦음을 알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의 비율이 높아, 또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행 장소 또한 친숙한 장소의 비율이 높아, 사전 준비 없이 익숙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연쇄강도범죄자는 기회범이 많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범죄자들은 범행의 기회가 제거되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자들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연쇄강도범죄자는 범행 기회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계획하여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인성이 고착된 자들이기 때문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연쇄강도소년범의 중요한 특성은 미성년가해자들의 범행수법이었다. 성인범들이 침입강도를 주로 저지른다는 결과와 달리, 소년범들의 경우 노상강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행위의 폭행특성을 살펴보면, 소년범들은 신체를 이용한 구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년범들이 범행 경험이 부족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범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폭행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성인범들은 도구를 주로 사용하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위협하는 수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년범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약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또한 소년범들이 성인범들과 구분되는 범행수법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사건발생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낮선 장소를 선호하는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은 친숙한 장소를 선호함을 알 수 있고, 사건장소까지 이동방법을 보면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은 도보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발생 장소의 유형도 소년범이 성인범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성인범은 주로 집안이나 상점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만, 소년범의 경우 길거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범행수법에서 성인범이 침입강도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소년범의 경우 노상강도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공범관계도 소년범이 성인범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인범의 경우 공범이 있는 경우가 약 50% 정도였지만, 소년범의 경우 약 98%가 공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수 역시 성인범은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소년범의

경우 2명 이상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들과 공범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소년범의 범행 특성 중 집단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년범들이 또래들과 집단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보면, 성인범들의 경우 징역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소년범들의 경우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고,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소년범의 경우 범죄경력이 성인범에 비해 비교적 적고, 소년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절차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총 1046건의 연쇄 강도 범죄를 분류한 결과, 범행 전 치밀한 사전 준비로 도구나 흉기를 써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 계획형의 연쇄 강도범죄가 기회형의 범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쇄 강도 범죄 가운데 범행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 등 그 수법에 있어 치밀함이 두드러지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검거를 막기 위한 법적 인식력(forensic awareness)을 보이는 계획형 사건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건 발생 시 수사 및 범인 검거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계획형 범죄자의 경우 범행 당시 연령이 비교적 높고,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특히 강도 범죄 체포 횟수가 더 많다는 점은 이 유형의 연쇄 강도 범죄자들이 높은 범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전 범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점차적으로 학습하고 발달시키며, 범행 당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전 계획 및 준비를 통해 검거를 피하는 능력이 그간의 범죄 전력을 통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경우 필연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로 향후 범죄를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단, 연쇄 강도 범죄자들의 범행 연속성이 많은 수의 연쇄 사건에 걸쳐서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행위 유형을 보이는 사건들을 연계 분석을 통해서 추려낸다면 효율적 수사 및 빠른 검거에 기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계획형의 범행 가운데 침입 강도가 가장 많고, 주거 지역,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한 번에 여러 사건을 연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처럼 범죄행위 유형에서의 일관성을 가려내는 연계분석을 통해 일련의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인지를 판별하여 추가적인 범죄들의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기회형 범죄의 경우에는 주로 상업지역의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술에 약간 취하거나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볼 때 강도 범죄 빈발 지역에서 순찰 등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CCTV의 설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기회를 줄이는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가해자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나 공동정범이었던 범죄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들을 통해 범행 수법을 학습하고, 범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며,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중국에는 강도 범죄의 주범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범죄자라도, 향후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도 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향후 동종의 전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정한 사법 처리와 지속적인 교화의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연쇄강도범죄의 가장 특징적인 점 가운데 하나는 조사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범행수법에 있어서의 차이였다. 범행수법 가운데에도 노상강도와 침입강도가 가해자와 사건특성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범행수법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상강도는 주로 도심에서 발생하는 도시범죄의 가장 주된 수법 중 하나이다. 피해자 뒤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하여 위협함으로써 상대의 물건을 강취하는 수법으로 주로 발생한다(Sigel, 2010, 321). 따라서 이러한 노상강도의 근절을 위해서는 거리에서 감시의 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순찰빈도를 증가시켜야 하고, 특히 노상강도의 경우 차량순찰보다는 도보순찰이 범죄자의 범행의지 억제와 현행범 체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노상강도는 범죄경력이 짧고 직업범죄자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년범들이 주로 저지르기 때문에 공격적인 순찰전략과 집중적인 감시활동만으로도 범죄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1990년대

중후반 경이적인 범죄의 감소율을 보였던 미국 NYPD의 사례를 보면, 노상에서의 강도범죄의 경우 거리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무관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범죄 통제를 이루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피해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나 밤늦은 시간 혹은 새벽시간에 혼자서 통행하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침입강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가정과 같은 사적인 장소를 침입하는 형태와 은행이나 점포와 같이 많은 이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침입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개인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침입강도의 경우 1차적으로 문단속과 같은 사소한 생활습관을 통해서도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물쇠나 창살과 같은 물리적인 방호설비를 확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전략 일 수 있다. 은행이나 점포와 같은 곳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는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노상강도와 달리 침입강도의 경우 범행경력이 많고 전문적인 범행기술을 가진 직업범죄자들이 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가의 물품이나 다액의 현금 등은 보안시스템을 갖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경비시스템을 구축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비요원이나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조사의 주된 관심대상은 연쇄강도범죄자들 중에서도 성인범들보다는 소년범이다. 강도범죄의 특성상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전체 가해자 1,012명 가운데 10대가 46.1%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쇄강도범죄자 357명 가운데서도 10대의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쇄강도범죄라는 강력범죄에서 10대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10대 범죄자들이 연쇄강도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관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도범행에서 소년범들의 주된 범행수법을 보면 노상강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회이론은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고, 범죄를 유발하는 이러한 기회에 노출되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행을 유발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범들의 경우 또래활동을 많이 하고 무리지어 다니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대를 쉽게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되고, 집단행동을 하고 충동성도 높기 때문에 범행과정에서 폭력성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거리에 순찰빈도를 높여서 자연적 감시망을 확충하거나 CCTV, 가로등 등의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들의 범행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일 수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10대 소년들이 범죄자로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첫 체포 당시 연령을 보면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쇄강도범죄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해 이들의 인생행로를 추적해보면, 10대에 최초의 비행경력이 시작된다. 이들은 대부분 사소한 비행행위로 인해서 학업중단을 겪게 되고, 공식적인 사법절차에 개입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문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일단 사법절차에 개입된 범죄자들 가운데 교정단계 절차까지 거치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법절차의 개입여부는 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고, 전환제도를 통해 조기에 사법절차에서 걸러내도록 함으로써 범죄자라는 공식적인 낙인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이들의 범인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는 소년범들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취업 알선과 같은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적극 도와주고, 범죄자가 아닌 새로운 사회인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당국과 지역사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는 소년범들이 범죄경력을 중단하고 건실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연쇄강도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근절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가. 국내문헌

- 고선영·이수정, (2011),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5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 김경옥·이수정, (2009), “범죄현장 행동에 근거한 방화범죄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3권 제4호, 한국심리학회.
- 김지영·박지선·박현호, (2009), 『연쇄 성폭력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 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13), 『2013범죄분석』.
- 박종렬·노상욱, (2012), “정보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강도죄의 분석”, 『한국컴퓨터정보 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박지선·서윤정, (2010), “윤간에서의 범죄 현장 행동 분석: 단독 범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박지선·최낙범, (2010),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지선·최낙범, (2010), “침입절도 범행 대상 선정시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 『한국경찰연구』, 제9권 제4호,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형 분류와 프로파일링』.
-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2014),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나. 국외문헌

- Alison, L. J. & Stein, K. L. (2001). Vicious circles: Accounts of stranger sexual assault reflect abusive variants of conventional interaction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2, 515-538.

- Amar, R. (2005). HUDAP manual.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Bateman, A. L. & Salfati, C. G. (2007). An examination of behavioral consistency: Using individual behaviors or groups of behaviors in serial homicid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5, 527-544.
- Brookman, F., Mullins, C., Bennett, T., & Wright, R. (2007). Gender, motivation and the accomplishment of street robbery in the United Kingdom.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7(6), 861-884.
- Canter, D. & Fritzon, K. (1998). Differentiating Arsonists: A model of firesetting actions and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73-96.
- Canter, D. V. & Heritage, R. (1990). A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 Canter, D. V., Bennell, C., Alison, L. J., & Reddy, S. (2003). Differentiating sex offences: A behaviorally based thematic classification of stranger rap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157-174.
- Canter, D. V., Hughes, D., & Kirby, S. (1998). Paedophilia: pathology, criminality, or both? The development of a multivariate model of offence behavior in child sexual abus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9, 532-555.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8-608.
- Felson, M. (1986). Linking criminal choices, routine activities, informal control, and criminal outcomes. In *The reasoning criminal*. Springer New York, 119-128.
- Groff, E. R. (2007). Simulation for theory testing and experimentation: An example us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street robber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3(2), 75-103.
- Hirschi, T. (1986). On the compatibility of rational choice and social control theories of crime.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105-118.
- Kennedy, L. W., & Forde, D. R. (1990). Routine activities and crime: an analysis of victimization in canada. *Criminology*, 28(1), 137-152.

- Lingoes, J. C. (1973). The Guttman-Lingoes Non-Metric Program Series. Ann Arbor, MI: Mathesis Press.
- Lynch, J. P. (1987). Routine activity and victimization at wor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283-300.
- Miethe, T. D., & McDowall, D.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3), 741-759.
- Miethe, T. D., Mark C. S., and Long, J. S., (1987). Routine activities/lifestyle and victim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Miethe, Terance D. & Meier, Robert F. (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SUNY series in Deviance and Social Contro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Neumayer, E. (2005).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Evidence from data on robbery and violent theft. *Journal of Peace Research*, 42(1), 101-112.
- Sampson, R. J., & Wooldredge, J. D. (1987). Linking the micro-and mac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371-393.
- Santtila, P., Junkkila, J. & Sandnabba, N. K. (2005). Behavioural Linking of Stranger Rap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 87-103.
- Siegl, Larry J.(2010).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321. Wadsworth Cengage Learning. CA: Belmont.
- Smith, D. A., & Jarjoura, G. R.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2), 621-640.
- Smith, W. R., Frazee, S. G., & Davison, E. L. (2000). Furthering the integration of routine activit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ies: Small units of analysis and the study of street robbery as a diffusion process. *Criminology*, 38(2), 489-524.

다. 신문기사

법률저널 2014.6.18.자 기사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

Abstract



Research on Serial Felony (III) - Serial Robbery -

Kim, Ji-Young · Park, Hea-Seok · Park, Ji-Sun · Kim, Ji-Youn · Seo, Hwa-Won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serial robberies - crime methods, characteristics of serial robbers and victims, situational characteristics of offences - through a survey on serial robberies that have been underestimated compared with its severity in the empirical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robberies from all aspects of criminal justice from corrections, probation to investigation as well a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oot out serial robberies.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in two methods - analyzing investigation and trial records, and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The records were based on 1,050 cases of robberies that had been accused from 2011 to 2013. The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13 serial robbers who have been incarcer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ith assistance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Majority of serial robbers were in their teens followed by those in their 20s. Most of them were high-school graduates or drop-outs, and had six to ten previous convictions. Serial robbers had various types of past criminal records including robbery; for non-serial robbers, robbery was their first conviction but had high rates of theft in the past. Serial robbery was more likely to be committed by strangers, but victims of non-serial

robbers were likely to be victimized by acquaintances. Juvenile offenders accounted for the high percentage of the total serial robbers; 50.7% of their previous crimes were theft, and 82% of past crimes were special robbery and robbery and injury, which indicate the seriousness of the juvenile offence. Most juvenile offenders did not drink, and approached victims through deceit, threat, or inducement at the time of the offence. 64.2% of adult offenders often targeted a female while more than half of juvenile offenders targeted a male to commit a crime.

The research team analyzed the correlation among the types of crime behaviors by using SSA based on 26 types of crime variables. Its results had two types of criminal behaviors - planned and occasional. The 'planned' type of offender would carefully plan and deliberate his/her crime in advance and approach victims with close attention by using tools or weapons and threaten the victims. The 'occasional' type of offender committed a crime occasionally and their crime was often unskilled and crude. As a result of classifying 1,046 cases of serial robbery into the 'planned' and 'occasional' crimes, 674 offences were planned accounting for 64.4% of the total crimes and 372 offences (35.6%) were occasional.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planned offenders - who would premeditate his/her crime and threaten victims by using tools or weapons -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occasional offenders. It well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erial robbery: offender would carefully premeditate the crime such as visiting the place of the offence beforehand and preparing criminal tools for the offence. The offenders would cover their face for serial robbery or use tools to avoid being caught, which implies that there are more 'planned' serial robberies than 'occasional' ones.

There was a high rate of recidivism for planned offenders, thus it requires preventive measures through a constant monitoring and supervision even after the offender is released. Most of planned offences were residential break-ins particularly multi-family houses. It implies the necessity of formulating measures to prevent

further crimes by identifying whether a series of offence is committed by the same offender through a linkage analysis which sorts out the consistency of criminal behaviors. Occasional offence often occurred in the commercial areas (e.g. street) and most of victims were drunk at the time of the offence. It requires preventive measures to reinforce police activities in the community including patrolling and increase the number of surveillance cameras. Also, it requires strict judicial measures and constant rehabilitation for the offenders as most of them are in their teens.

부 록

조사용 기록지

연쇄강도범죄 기록조사표(가해자)

조사일시 _____ 월 _____ 일

검찰청		조사원		사례(가해자)	

1. 조사기관 _____ 검찰청

2. 가해자 (성명: _____)

						-								
--	--	--	--	--	--	---	--	--	--	--	--	--	--	--

3. 가해자는 연쇄강도범이다 1)____ 그렇다 2)____ 아니다

4. 가해자 국적

1)____ 내국인

2)____ 귀화인 및 외국인

5. 가해자 교육정도(복수기입 가능)

1)____ 무학

2)____ 초등학교 재학

3)____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4)____ 중학교 재학

5)____ 중학교 중퇴 및 졸업

6)____ 고등학교 재학

7)____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8)____ 대학교 재학 이상

9)____ 알 수 없음

6. 가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

1)____ 장애 없음

- 2)___ 신체장애
 3)___ 정신장애(알콜중독 등)
 4)___ 알 수 없음

7. 범죄경력

- 1) 1-1. 총체포횟수 _____ 회[수사 + 범죄경력조회]
 2) 1-2. 총 전과 _____ 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제외]
 3) 1-3. 동종전과 _____ 건 [강도범죄]
 4) 1-4. 실행전과 _____ 건 5) 1-5. 이종전과 _____ 건[강도범죄 제외]
 6) 1-6. 출생년도 _____ 년 7) 1-7. 첫 체포년도 _____ 년
 8) 1-8. 강도범죄로 인한 체포 횟수[수사 + 범죄경력조회] _____ 회

8. 전과경력(향균법, 도로교통법 제외)(전과가 있는 사람에 한해 기입하시오)

*** 부족할 경우 뒷면에 기재하고, “뒷면기재”로 표기할 것**

8-1. 죄명 : ①강도범죄관련 ②성범죄관련 ③폭력범죄관련 ④절도범죄관련(점유이탈물횡령 포함) ⑤기타범죄 8-2. 처분결과 : ①벌금형 ②징역 ③집행유예 ④보호관찰 ⑤소년보호처분 ⑥기타
--

8-1. 죄명	8-2. 처분결과	8-3. 확정일자(년도만기재)

9. 전과가 아닌 강도범죄 체포경력(강도범죄로 인해 체포되었으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기재된 경력만 적으시오)

9-1. 죄명 : 별지에 기재된 죄명코드를 기입할 것 9-2. 처분결과 : 직접 기입할 것

9-1. 죄명	9-2. 처분결과	9-3. 체포년도

연쇄강도범죄 기록조사표(사건)

검찰청	조사원	사례(가해자)	번호(피해자)

1. 가해자성명: _____

2. 가해자 생년월일: _____

3. 범행당시 연령: _____

4. 가해자는 연쇄강도범이다 1)___ 그렇다 2)___ 아니다
(가해자표 3번 문항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5. 가해자는 동종전과가 있다 1)___ 그렇다 2)___ 아니다

6. 죄명(죄명코드 참조) _____

7. 사건의 경합여부 1)___ 그렇다 2)___ 아니다

8. 경합여부

- 1) 경합아님(☞ 11번으로 가시오) 2) 동종경합(☞ 9번으로 가시오)
3) 이종경합(☞ 10번으로 가시오) 4) 동종+이종(☞ 9번, 10번 모두 기입하시오)

9. 동종경합(죄명코드 참조)

- | | | | |
|---------|---------|---------|---------|
| 1)_____ | 2)_____ | 3)_____ | 4)_____ |
| 5)_____ | 6)_____ | 7)_____ | 8)_____ |

10. 이종경합(복수응답 가능)

- | | |
|------------------------|----------------|
| 1) 살인 | 2) 방화 |
| 3) 재산범죄(사기, 횡령, 점유이탈등) | 4) 절도 및 주거침입절도 |
| 5) 폭행범죄 관련 | 6) 성범죄 관련 |
| 7) 풍속 및 도박 범죄 | 8) 마약류 관련 범죄 |
| 9) 위조범죄 | 10) 기타범죄 |

11. 기소여부

- | | | |
|-----------------------|--------------------------|--|
| 9) 기소
(☞12번으로 가시오) | 10) 기소유예
(☞13번으로 가시오) | 11) 보호관찰소선도조건부기소유
예
(☞13번으로 가시오) |
|-----------------------|--------------------------|--|

12. 판결 종류 (복수응답 가능)

- | | |
|-------------|----------------------|
| 1) 무죄 | 2) 벌금 |
| 3) 징역과 집행유예 | 4) 징역(☞ 12-1번으로 가시오) |
| 5) 소년보호사건송치 | 6) 보호관찰 |
| 7) 치료감호 | 8) 사회봉사 |
| 9) 기타 | 10) 알 수 없음(해당없음) |

12-1. 징역 형량(최종심-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기준으로)

- | | |
|-------------|-------------------|
| 1)___ 1년 미만 | 2)___ 1년이상- 3년 미만 |
| 3)___ 3년 이상 | 4)___ 10년이상 |
| 5)___ 무기징역 | 6)___ 사형 |

13. 범행당시(발생예정당시)직업 (※ 복수응답 가능)

- | | |
|---------------|--|
| 1)___ 관리자 | 2)___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3)___ 사무 종사자 | 4)___ 서비스 종사자 |
| 5)___ 판매 종사자 | 6)___ 농림·어업 종사자 |
| 7)___ 기능관련종사자 | 8)___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 9)___ 단순노무 | 10)___ 무직 |
| 11)___ 학생 | 12)___ 기타() |
| 13)___ 미상 | 14)___ 운송 및 운수업
(ex-택시, 트럭, 대리운전 등) |

14. 범행당시(발생예정당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1)___ 그렇다
2)___ 아니다

15. 범행당시(발생예정당시) 동거 여부

- | | | |
|--------------|--------------|--------------|
| 1)___ 동거자 있음 | 2)___ 동거자 없음 | 3)___ 미상 |
| (☞15-1로 가시오) | (☞16번으로 가시오) | (☞16번으로 가시오) |

15-1. 동거자의 수 총_____명

15-2. 동거인의 유형(중복허용)

- | | | | |
|---------------|----------------|----------|-----------|
| 1)___ 부모 | 2)___ 형제자매 | 3)___ 자녀 | 4)___ 배우자 |
| 5)___ 동료 및 친구 | 6)기타() | 7)___ 애인 | |

16. 혼인상태

- | | | | |
|----------|----------|--------------|----------------------------|
| 1)___ 미혼 | 2)___ 동거 | 3)___ 기혼(초혼) | 4)___ 재혼이상 |
| 5)___ 별거 | 6)___ 이혼 | 7)___ 사별 | 8)___ - - - 기 타 () |
| 9)___ 미상 | | | |

17. 본 건에서 여러 건의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다.

(다른 시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를 저지른 경우)

1)___ 그렇다

2)___ 아니다

18. 체포단서를 모두 적으시오

1)___ 피해자가 신고

2)___ 제3의 인물이 신고

3)___ CCTV

4)___ DNA 증거(정액, 혈흔 등)

5)___ 지문, 족문

6)___ 탐문, 신문(여죄추궁), 검문 (전과자 조사 등)

7)___ 현행범 체포

8)___ 자수

9)___ 전자발찌 위치추적

10)___ 기타

11)___ 피해자가 가해자 고소

19.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죄피해는 상호작용이 아님)

1) 친인척

2) 서로 잘 아는 사이

3) 평소 안면만 있는 사이

4) 가해자만 알고 있는 사이

5) 사건 직전에 처음 만난 사람 (사건 전 상호작용 있음 ex-대화)

6) 모르는 사람 (사건 전 상호작용 없음 ex-퓹치기)

7) 기타

20. 공범유무 및 공범관계

1) 공범없음 (☞ 23번으로 가시오)

2) 공범있음(명)

(☞ 21번으로가시오)

21. 가해자의 역할

1) 주범

2) 종범

3) 공동정범

27. 범행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가해자, 피해자 진술을 참고하여 조사자가 판단할 것)

- | | |
|--------------------|-------------|
| 1)___ 알 수 없음 | 2)___ 음주안함 |
| 3)___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 4)___ 약간 취함 |
| 5)___ 만취 | |

28. 범행당시 피해자의 약물 복용여부

- | | |
|--------------------|------------------|
| 1)___ 알 수 없음 | 2)___ 약물복용안함 |
| 3)___ 복용했으나 정신은 있음 | 4)___ 복용하여 약간 혼미 |
| 5)___ 복용하여 극도로 혼미 | |

29. 범행당시 피해자의 음주여부

- | | |
|--------------------|-------------|
| 1)___ 알 수 없음 | 2)___ 음주안함 |
| 3)___ 음주했으나 취하지 않음 | 4)___ 약간 취함 |
| 5)___ 만취 | |

30. 강도범죄의 수법

1)___ 침입강도	주거, 점포, 은행,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는 방법
2)___ 노상강도	어두운 골목길에서 행인을 흉기로 폭행, 협박하여 소지품을 강취하는 방법
3)___ 인질강도	사람을 인질로 인치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
4)___ 기타강도	(직접 기입해주세요)

31. 폭행 특성 (흉기-칼, 각목, 야구방망이, 맥주병, 벽돌, 삽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의미)

	예	아니오
1) 폭행 없음		
2) 흉기로 위협하기		
3) 손이나 주먹 발등 신체를 이용한 구타		
4) 흉기로 찌르기, 때리기		
5) 언어적 폭력(욕설, 협박 등)		
6) 결박(테이프, 끈 등)		
7) 감금		

	예	아니오
8) 기타 ()		
9) 알 수 없음		
10) 완력사용		

32. 사용 된(사용예정) 범행도구

	예	아니오
1) 도구를 사용 안함		
2) 콘돔		
3) 장갑 착용		
4) 흉기		
5) 모자 등 얼굴을 가리기 위한 도구사용		
6) 결박도구(끈, 테이프 등)		
7) 차량(오토바이포함)		
8) 기타 ()		
9) 알 수 없음		

33. 피해자 피해 내용(복수응답가능)

	예	아니오
1) 피해 없음		
2) 신체적피해		
3) 금전적피해		
4) 정신적피해		
5) 성적피해		
6) 기타 ()		

230 •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34. 범행 사전계획 및 도주계획(사건기록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 경우만 계획했다고 보세요 / 계획이 없는 경우 “알수없음(해당없음)”에 체크)

	예	아니오
1) 범행절차 사전 계획		
2) 범행대상 사전 선정		
3) 범행장소 사전 답사		
4) 범행 전 도주 계획		
5) 범행 전 도구 준비		
6) 알 수 없음(해당없음)		

35. 강도범죄 유형

- 1)___ 가해자 피해자 일인
- 2)___ 가해자 다수, 피해자 일인
- 3)___ 가해자 일인, 피해자 다수
- 4)___ 가해자 다수, 피해자 다수
- 5)___ 기타 ()
- 6)___ 알 수 없음

36. 사건발생일 | 년 | 월 |

37. 사건발생시간 | : |

37-1. 정확한 시간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 | | |
|-------------------------|-------------------------|
| 12) 1-12. 새벽(구체적 시간 미상) | 13) 1-13. 오전(구체적 시간 미상) |
| 14) 1-14. 오후(구체적 시간 미상) | 15) 1-15. 밤(구체적 시간 미상) |

38. 사건당시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주소)

/ 38-2. 주거 부정()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광주 | 5) 대전 |
| 6) 인천 | 7) 울산 | 8) 경기 | 9) 충남 | 10)_충북 |
| 11)_경남 | 12)_경북 | 13)_전남 | 14)_전북 | 15)_강원 |
| 16)_제주 | | | | |

39. 사건 발생(예정) 장소(주소)

/ 39-2. 알 수 없음()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광주 | 5) 대전 |
| 6) 인천 | 7) 울산 | 8) 경기 | 9) 충남 | 10)_충북 |
| 11)_경남 | 12)_경북 | 13)_전남 | 14)_전북 | 15)_강원 |
| 16)_제주 | | | | |

40. 사건 발생(예정) 장소와 가해자의 관계 (※ 가해자 진술 참조)

- 1) (사건 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 2)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 인근(학교포함)
- 3)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 4)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사전 답사한 경우 제외)
- 5)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사전 답사한 경우 포함)
- 6) 알 수 없음

41. 사건 발생(예정) 장소와 피해자의 관계 (※ 피해자 진술 참조)

- 1) (사건 당시의)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
- 2) (사건 당시의) 직장 혹은 직장 인근(학교포함)
- 3) (직장·거주지 부근은 아니나) 친숙한 장소
- 4) 전에 한 두번 와본 적 있음 (사전 답사한 경우 제외)
- 5) 사건 당시 처음 와 본 장소 (사전 답사한 경우 포함)
- 6) 알 수 없음

42. 사건 발생(예정) 장소와 가해자가 거주한 지역의 거리(스마트폰으로 계산)

- 1)___ 동일지역(동일한 동 or 리)
- 2)___ 3km 미만
- 3)___ 3km 이상 - 10km 미만
- 4)___ 10km 미만 - 50km 미만
- 5)___ 50km 이상 - 100km 미만
- 6)___ 100km 이상
- 7)___ 알 수 없음

43.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사건 장소까지 이동방법

- | | |
|------------------|------------------|
| 1) 차량이용 | 2)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 3) 도보 | 4) 기타() |
| 5)___ 이동안함(동일장소) | 6)___ 알 수 없음 |

44. 사건 발생(예정) 장소의 유형

- | | | |
|------------|-----------------|---------------|
| 1)___ 상업지역 | 2)___ 주거지역 | 3)___ 야산 및 임야 |
| 4)___ 알수없음 | 5)기타(직접기입)_____ | |
| 6)___ 공장지역 | | |

45. 사건 발생(예정) 장소의 구체적 특성

- | | |
|----------------------|-----------------------------------|
| 1) 집안(☞45-1번으로 가시오) | 2) 집근처(계단, 엘리베이터 등)(☞45-1번으로 가시오) |
| 3) 학교 및 아동보육기관 | 4) 사무실, 직장 |
| 5) 차량 내 | 6) 유흥업소 |
| 7) 숙박업소 | 8) 비디오방(DVD방, PC방) |
| 9_ 길거리 | 10) 야산 등 한적한 곳 |
| 11)___ 찜질방, 사우나 | 12)___ 기타() |
| 13)___ 공원 및 놀이터 | 14)___ 편의점 및 슈퍼마켓 |
| 15)___ 금은방 | 16)___ 음식점 |
| 17)___ 기타상점(휴대폰가게 등) | |

45-1. 집안(옥내) 유형 구분

- 1)___ 아파트 2)___ 다세대주택 3)___ 단독주택
4)___ 기타

46. 피해자 성별

- | | |
|------------------|---------------|
| 1) 남성 1명 | 2) 여성 1명 |
| 3) 남성 1명 + 여성 1명 | 4) 남성 다수 |
| 5) 여성 다수 | 6) 남성다수+여성 1명 |
| 7) 남성 1명+여성다수 | 8) 남녀 모두 다수 |

47. 범행당시 피해자 연령(복수응답)

- | | |
|------------------|------------------|
| 1) 10세 미만 | 2) 10세 이상 20세 미만 |
| 3) 20세 이상 30세 미만 | 4) 30세 이상 40세 미만 |
| 5) 40세 이상 50세 미만 | 6) 50세 이상 60세 미만 |
| 7) 60세 이상 | |

48. 피해자 국적(복수응답)

- | | |
|--------|--------------|
| 1) 내국인 | 2) 귀화인 및 외국인 |
|--------|--------------|

49. 피해자 신체장애 및 정신질환(복수응답가능)

- | | | |
|------------|--------------|------------|
| 1)___ 장애없음 | 2)___ 신체장애 | 3)___ 정신장애 |
| 4)___ 기타 | 5)___ 알 수 없음 | |

연구총서 14-B-06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Ⅲ)

- 연쇄 강도 -

발행 | 2014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인 | 박상옥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화신문화(주) (02)2277-0624
I S B N | 978-89-7366-396-5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